관광산업 세제 지원방안 연구

안희자

Kored Culture & Tourism Institute



관광산업 세제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ax Relief Plans for the Tourism Industry

안희자



연구책임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개요

1. 서론

1.1. 연구배경

가. 국내외 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 가시화로 관광기업의 경영실적 악화

- 국가경제에서 관광산업이 갖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관광기업의 경영 환경은 정책 환경 변화로 더욱 어려운 상황임
 - 관광숙박업의 경우,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경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관광산업은 미래 서비스업 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과 관광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나. 혁신 성장을 이끄는 대표 산업군으로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 필요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관광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도 관광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산업, 혁신 성장을 이끄는 산업군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임
- 관광산업을 혁신 성장의 대표 산업군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지 원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다. 관광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 마련

- 조세 지원 정책이 일반적인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된 관광산 업에서 조세 지원은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관광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한 과거의 조세체계가 남아있어 타 산업 에 대비 감면대상이 적고 불리한 세제 적용을 받고 있음(김희수, 2014)
- 조세 지원 정책을 통하여 민간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됨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관광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 설 정과 관광산업에 적용가능한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① 세제지원 현황 및 특성 분석 등 종합적 시각에서 관광산업 조세체계를 규명
- ②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의 효과 분석 및 업계의 세제 지원 수요 분석 을 통하여 세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
- ③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세제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 개별 과제별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

2.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정책 동향

2.1. 조세지원 제도와 정책 동향

-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구성되며, 국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
- 조세지원은 정부가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감소시켜는 주는 간 접적인 지원 수단으로, 국가가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지원을 의미함(전규선, 2001; 박영선, 2013)
- 조세특례는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 외부불경제 등 시장 실패의 교정, 교육·문화 등 가치재의 공급, 경기대응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 화, 중장기적 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국회예산정책처, 2017)
- 주요 조세지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정책 동향) 정부는 서비스업의 혁신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으로, 재정·세제·금융 부문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 추진을 발표함

2.2.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특징

- 주요 관광업종의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산업이나 서비 스업 대비 비중이 높은 편임
 - 숙박업, 여행업은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성)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관광산업은 유망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심, 외화획득 산업
- (실효성) 관광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부족, 관광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세제 지원 과제 발굴 필요→ 단기적·일시적 정책지원보다는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
- (차별성) 타 산업 대비 차별적 세제 지원 적용 → 관광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과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으나,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세제 등 정책지원이 불리한 실정
 - 여전히 사치성 소비산업, 환경훼손형 산업으로 인식하여 규제, 관광산업이 외화획득 수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 적용

3.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 분석 및 정책수요 분석

3.1.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 분석

- 과거 관광산업의 세제 지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전체 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음
 - 기존의 세제 지원이 효과가 없었다면, 그러한 이유와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 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
 - 기존의 세제 지원이 효과가 있었다면, 효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과거에 시행되었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분석하여 이러한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음

- 영세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체조사 미시자료를 가공하여 별도의 사업체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
- 기존의 연구에서는 숙박업 매출에 미치는 영세율 정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없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숙박업에서 영세율 정책으로 상당한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얻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외국인이 숙박업체에 숙박하여야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숙박하지 않는 지역, 외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지역은 서울이며, 서울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 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남
-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제도의 실제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숙박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만큼, 외화 획득에 있어 제조업 수출과 차별할 이유가 없음

3.2.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수요 분석

-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현재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숙박업과 미적용 숙박업 간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남
 -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보다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이 조세 지원 제도의 전반적 인식에 더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관광숙박업 세제 지원에 대한 업종별 차이는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이 관광호 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보다 조세지원 제도의 전반적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체감도 더 부정적이며, 만족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남
 - 반면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기타호텔과 호스텔업이 전반적으로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조세지원 혜택 제공 필요

■ 조세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업종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 규모의 관광숙박업에 적용 가능한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제도 홍보, 중소기업 맞춤형 관광숙박업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1〉 관광숙박업 세제 이용 현황 및 실태조사 주요 결과

(단위: %)

구분		상세구분	관광 호텔업	기타 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비고
조세지원	조세부담		68.2	84.6	84.7	61.5	크다
	조세지원 활용정도		44.1	69.2	60.7	51.9	부정
제도 인식		조세지원 충분정도	54.2	73.1	70.1	55.8	부정
	타 산업대비 적절정도		48.6	73.1	63.2	55.8	부정
		조세부담 감소	54.2	67.3	65.0	59.6	부정
	체감	조세혜택	52.0	61.5	68.4	50.0	부정
		이익 증가	61.5	71.2	71.8	65.4	부정
조세지원 제도		유형자산 투자	43.6	53.8	55.6	36.5	긍정
제도 체감효과	효과	홍보/마케팅 투자	50.3	48.1	49.6	44.2	긍정
	표대	신규 고용직원	38.5	48.1	45.3	38.5	긍정
		지속 고용	51.4	59.6	53.8	42.3	긍정
	만족	만족 여부	40.8	46.2	41.9	32.7	부정
	부가 가치세 특례 제도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경험	35.8	9.6	3.4	13.5	있다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의 도움 여부	53.1	40.0	75.0	57.1	긍정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1.3	6.4	15.0	8.9	잘모름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성	27.4	36.5	40.2	21.2	있다
조세지원	TUALIJ	재산세 감면 적용 경험	92.2	100	98.3	94.2	없다
제도 이용현황	재산세 · 감면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경영여건의 도움	71.4	_	50.0	100	긍정
	T 1 7101	중소기업 대상 조세감면 제도 적용 받은 경험	87.7	86.5	89.7	88.5	없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도움 인식	54.5	57.1	58.3	66.7	긍정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만족 여부	54.2	67.3	65.0	59.6	부정

4. 국내외 세제 지원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1. 타 산업 분야 세제 지원 사례 분석

- 관광산업과 타 산업 분야, 해외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관광산업 세제 지원체계의 차별적 요소를 규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조선업에 대한 세제지원, 뿌리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기업 대상에 대한 세제지원 등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함
 - (뿌리산업)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뿌리산업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을 의미
 - (중소기업) 창업,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창업중 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대상 조세 지워 확대

4.2. 주요국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영국) 숙박업 부가가치세 인하 운동 'Cut Tourism VAT' Campaign'
 - 유럽연합(EU)의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율은 현재 3%(룩셈부르 크)~25%(덴마크)로 다양, 회원국들은 최소 15%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호텔업에 대한 감면 적용의 선택권이 있음
 - 영국은 숙박업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관광 VAT 삭감' 캠페인은 영국 내 관광 VAT 비율이 EU 내 경쟁국과 동일한 요율 적용을 요구하며, 20%에서 5%로 인하를 추진 중

- (일본) 국제관광호텔 정비법 상 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 사례 조사
 - 일본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등록 호텔, 여관 대상 세제 상 우대조치 사례 조사, 지방세 불균일과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 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세제상의 특례 사례조사
- 해외 주요국은 R&D 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 혁신활동과 연계한 세액공제제도 운영
 - (일본) 4차산업혁명형 서비스산업을 R&D 세액공제로 지원대상 추가(2017년)

4.3. 코로나19 관련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 아시아,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2020년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피해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제 혜택 제공을 발표함
 - (싱가포르)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7%~9%로 인상 계획 보류,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10%~30%까지 감면(호텔, 레지던
 스, MICE 컨벤션 등 포함)
 - (태국)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재산세를 90%까지 감면
- 유럽에서도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피해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과 관련한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해 주는 사례도 있음
 - (그리스) 관광산업 조기 회복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식음료 및 운 송, 관광 관련 부가가치세를 24%에서 13%로 인하
 - (영국) 재산세 전면 면제(202.4.1.~2021.3.1.),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 세제 혜택 제공 발표
 - (이탈리아) 관광 종사자 및 관련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이 3월부터 4월까지 면제, 관광, 교통, 식당, 문화, 스포츠, 교육 등에 관련한 사업은 3월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

5. 관광산업 세제 지원 방향 및 과제

-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 방향과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정책방향)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정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관광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함
- 기존 논의된 주요 관광산업 세제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 관광사업체 대상 설문 조사 및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새로이 도출된 과제를 종합하여 핵심 과제를 도출함
 -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제안과제 중 미이행 과제와 관련 협회 및 업계에서 수렴한 신규 제안 과제를 종합하여 검토과제를 목록화
-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도출을 위해 앞서 정책 방향, 즉 관광산업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성 해소, 코로나19 조기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의 관점에서 향후 지원이 요구되는 과제를 제안함

[그림 1]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목차

제1장	서론 ······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7 10
제2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동향	11
	제1절 조세지원 제도와 정책 동향 1. 조세체계와 조세지원 제도의 특성 2. 조세 지원 제도 변화와 최근 정책 동향 제2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특징 1.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추진 현황 2.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 분석 3.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의 특징	13 13 21 30 33 41
제3장	3. 편형신입 세세 시원 세도의 특성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 및 정책수요 분석 ···································	41 43
	제1절 세제 지원 효과 분석: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례 1. 분석 개요 2.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45 45 50 59
	제2절 관광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61 61 63 81

제4장 국내	외 세제 지원 사례분석 및 시사점	85
제12	설 타 산업 분야 세제 지원 사례분석 1.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세제 혜택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제 혜택 4.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5. 중소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제도	87 87 89 91 93 94
제2길	설 주요국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분석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98 98 101 106
제3겉	설 코로나19 관련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1. 아시아 주요국의 관광산업 관련 세제 혜택 2. 유럽 관광산업 관련 세제 혜택	109 109 110
제5장 관광	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113
제12	설 관광산업의 특성과 세제 지원의 필요성 1.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2. 관광산업의 가격탄력성 3. 관광산업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4. 관광산업의 높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	115 115 117 119 122
제22	설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 1. 정부 세제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강화 2.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차별성과 불균형 개선 3.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시의성과 효과성 강화	124 124 126 128
제3점	설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검토 1. 선행 제안 과제 이행 현황 분석 2. 신규 제안 과제 발굴 및 검토과제 선정	131 131 134
제42	3. 세제 지원 과제 검토 결과 설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1. 세제 지원 과제 선정 2. 관광산업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136 139 139 140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과제 	142 145
제5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심층 분석 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호텔업 재산세 감면	148 148 156
제6장 결론 및 제언	165
제1절 결론	167
제2절 정책 제언	169
참고문헌 / 171	
ABSTRACT / 175	
부록 / 179	

표 목차

〈표 1-1〉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	4
〈표 1-2〉 연구 방법	10
〈표 2-1〉 국세수입 실적(2017~2019)	14
〈표 2-2〉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15
〈표 2-3〉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15
〈표 2-4〉조세특례제한법의 구성	16
〈표 2-5〉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16
〈표 2-6〉 지방세목별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9
〈표 2-7〉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구성	20
〈표 2-8〉 조세 특례의 유형	21
〈표 2-9〉 경제 및 재정여건과 정책방향 추이	23
〈표 2-10〉 조세 지원 정책 동향	25
〈표 2-1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주요 내용	26
〈표 2-12〉 관광 부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심층평가 추진 현황	26
〈표 2-13〉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 방향	27
〈표 2-14〉 2019년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28
〈표 2-15〉 2020년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29
〈표 2-16〉 관광산업 조세 감면 연혁 및 주요 동향	32
〈표 2-17〉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 제도 개요	33
〈표 2-18〉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 개요	34
〈표 2-19〉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	35
〈표 2-20〉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연혁	35
〈표 2-21〉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요 내용	37
〈표 2-22〉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주요 개정 현황	38
〈표 2-23〉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등 감면 현황	39
〈표 2-24〉 지자체별 취득세 추가 경감률 적용사례	40
〈표 2-25〉 관광산업 업종볔 조세 지원 제도 현황	41

〈표 3-1〉 분석 데이터 기술 통계량	46
〈표 3-2〉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실질 매출액	52
〈표 3-3〉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고용인원	53
〈표 3-4〉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	55
〈표 3-5〉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실질 매출액, 서울 숙박업	57
〈표 3-6〉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고용인원, 서울 숙박업	58
〈표 3-7〉조사 개요	62
〈표 3-8〉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	62
〈표 3-9〉조사 항목	63
〈표 3-10〉 응답기업 일반현황	64
〈표 3-11〉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64
〈표 3-12〉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부담 정도	66
〈표 3-13〉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 부담이 큰 항목(복수응답)	67
〈표 3-14〉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지원 제도 활용	68
〈표 3-15〉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지원 제도 미활용 이유	69
〈표 3-16〉 업종 및 소재지별 충분한 조세지원 정도	70
〈표 3-17〉 업종 및 소재지별 타 산업 대비 조세지원의 적절성	71
〈표 3-18〉 세제지원에 대한 체감도 및 효과	72
〈표 3-19〉 세제지원에 대한 업종별 체감도 및 효과	73
〈표 3-20〉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경험	74
〈표 3-21〉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에 대한 도움 여부	74
〈표 3-22〉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75
〈표 3-23〉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한 개편사항	76
〈표 3-2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	76
〈표 3-2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필요한 이유	77
〈표 3-26〉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도움이 되었던 분야	78
〈표 3-27〉이용 경험이 있는 조세지원 제도	78
〈표 3-28〉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귀사의 경영상 피해 현황	79
〈표 3-29〉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숙박업 경영에 필요한 지원책	79
〈표 3-30〉 관광산업 조세지원 확대에 가장 필요한 분야	80
〈표 3-31〉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따른 인식 차이	81
〈표 3-32〉 업종별 인식 차이	82
〈표 4-1〉 조선업 세제 지원 추진경위	88

〈표 4-2〉 조선업 세제 지원 주요 내용	89
〈표 4-3〉 기업활력법 적용 범위	90
〈표 4-4〉 기업활력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른 효과	90
〈표 4-5〉 뿌리산업 대상 세제 혜택	92
〈표 4-6〉 벤처기업 대상 조세지원 제도	93
〈표 4-7〉 벤처기업 대상 조세지원 제도	94
〈표 4-8〉 기업 규모별 적용가능한 조세지원 제도	95
〈표 4-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출 현황	95
〈표 4-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96
〈표 4-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97
〈표 4-12〉영국 Cut Tourism VAT Campaign 추진 경위	98
〈표 4-13〉 영국 내 숙박업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입장 차이	99
〈표 4-14〉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수익 발생 효과	100
〈표 4-15〉 프랑스 숙박업 부가가치세 변화	102
〈표 4-16〉 프랑스 관광산업 부가가치세 인하 조건	103
〈표 4-17〉 프랑스 외식업 부가가치세 인하 고용 효과	103
〈표 4-18〉 프랑스 마이크로 기업 제도 기준	104
〈표 4-19〉 간이마이크로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세 정액 납부 세율	105
〈표 4-20〉마이크로 기업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105
〈표 4-21〉 일본 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 관련 추진 내용	106
〈표 4-22〉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에 따른 지방세 불균일 과세 적용 도시	107
〈표 4-23〉호텔·여관업의 고정자산평가 기준 갱년 감점 보정률 및 감액 비율	107
〈표 4-24〉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업 관련 아시아 각국 세제 혜택	110
〈표 4-25〉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업 관련 유럽 각국 세제 혜택	112
〈표 5-1〉수출산업(제조업)과 관광산업 비교	117
〈표 5-2〉 관광 수요 탄력성 추정 결과(권혁진, 2015)	117
〈표 5-3〉아시아 주요 경쟁국 호텔 지표 비교	118
〈표 5-4〉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	119
〈표 5-5〉 주요 서비스 산업 최근 고용 동향	120
〈표 5-6〉 2020년 1분기 숙박업 소비지출 감소액 추정	121
〈표 5-7〉 서비스 산업 생산지수 - 숙박 및 음식점업 상세 현황	121
〈표 5-8〉 관광사업체 시설 투자비 추이	122
〈표 5-9〉 관광사업체 현황	123

⟨∄ 5-10⟩	매출액 대비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비중	125
⟨∄ 5-11⟩	관광사업체 필요 지원 정책 과제(1~3순위)	129
⟨∄ 5-12⟩	코로나19 진행 단계별 조세지원 대응전략	130
⟨∄ 5-13⟩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08년)	132
⟨∄ 5-14⟩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12년)	133
⟨∄ 5-15⟩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14년)	133
⟨∄ 5-16⟩	관광업계(협회) 세제 지원 과제 의견 수렴 결과	134
⟨표 5-17⟩	관광산업 세제지원 과제	134
⟨∄ 5-18⟩	세제 지원 제안과제 전문가 검토 결과	136
⟨∄ 5-1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과제	141
⟨∄ 5-2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141
⟨∄ 5-21⟩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요	141
⟨丑 5-22⟩	관광산업 세제 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142
⟨∄ 5-23⟩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시 세율 비교	144
⟨∄ 5-24⟩	취득세 과세대상별 세율	144
〈丑 5-25〉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비과세 감면 제도	145
⟨∄ 5-26⟩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관광산업 세제 지원과제	146
〈丑 5-27〉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관련 제도 비교	148
⟨∄ 5-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안	149
〈丑 5-29〉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제도 개선안	150
⟨∄ 5-30⟩	과거 호텔업 영세율 적용 현황	150
〈丑 5-31〉	OECD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및 호텔적용 세율	155
〈丑 5-32〉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세표준 산출 및 명목 세율	157
⟨∄ 5-33⟩	매출액 대비 재산세	158
⟨∄ 5-34⟩	관광단지·관광호텔 지방세 감면	159
〈丑 5-35〉	항공기 재산세 감면 사례	159
⟨∄ 5-36⟩	경북 경주시 재산세 감면 사례	160
⟨∄ 5-3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61
⟨∄ 5-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161
⟨± 5-39⟩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163

그림 목차

[그림	1-1]	관광소비시출동향(2019-2020년 비교)	3
[그림	1-2]	연구 흐름도	9
[그림	2-1]	세원별 조세의 분류	13
[그림	2-2]	우리나라의 국세 체계	14
[그림	2-3]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15
[그림	2-4]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17
[그림	2-5]	지방세 세입 규모	18
[그림	2-6]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흐름	22
[그림	2-7]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7
[그림	3-1]	이중차분법의 개념	49
[그림	3-2]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65
[그림	3-3]	조세 부담이 큰 항목	67
[그림	3-4]	기업의 조세지원 효과 인식	72
[그림	4-1]	숙박업 부가가치세로 인한 관광 수요 및 고용 창출 예측 자료	100
[그림	5-1]	방한 외래관광객수 및 증감률	115
[그림	5-2]	관광사업체 연구개발 전담인력 및 활동방식	125
[그림	5-3]	관광사업체 필요 지원 정책 과제(1~3순위)	129
[그림	5-4]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140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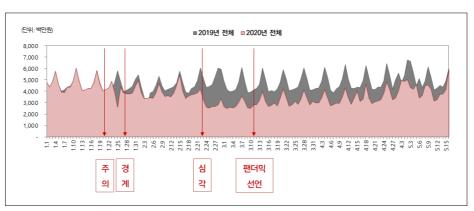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경쟁 가시화 등 관광기업 환경 악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관광산업이 갖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미래 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관광기업의 경영 환경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고정비용은 증가하나 경영실적은 감소하는 구조로, 업계 지원 정책을 통한 관광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202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생존을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고,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의 위기는 세제지원을 비롯한 재정지원 정책 수요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1-1] 관광소비지출동향(2019-2020년 비교)

주: 카드 사용액 + 현금(추정)을 통해 산출, 신한카드 빅데이터 자료 활용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관광레저소비지출경제동향

나. 숙박업 등 관광기업의 조세 부담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경영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세제 부담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산업의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은 전산업이나 서비스업 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숙박업, 여행업은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이 전산업과 서비스업의 평균과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산업(전체)	0.27%	0.30%	0.30%	0.30%	0.30%
서비스업	0.43%	0.46%	0.46%	0.44%	0.46%
숙박업	0.96%	1.47%	1.52%	1.54%	1.55%
여행사 및 기타 여행 <u>보조</u> 서비스업	0.84%	0.85%	0.87%	0.68%	0.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0%	1.77%	1.61%	1.50%	1.46%

〈표 1-1〉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각 년도). 기업경영분석.

다. 혁신 성장을 이끄는 대표 산업군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필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관광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관광산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산업, 혁신 성장을 이끄는 산업군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관광산업을 혁신 성장의 대표 산업군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의 방향이 혁신성장과 연결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유망 서비스업에 제공되는 세제 등 지원 제도의 현황은 무엇인가를 비교 했을 때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어떠한가를 비교 분석하고,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의 관점에서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 세금과공과(Taxes and dues)에서 세금은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서 제조 원가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세금이 제외된 것이며, 공과란 상공회의소 부과금, 연합회 부과금, 조합 각출금, 회비 등 영업과 관계있는 공적지출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함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2019.6.26.) 】

- ①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 확대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 대폭 확대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
- ② 민간R&D 세제지원 강화: 서비스업 분야의 자체수행, 외부위탁R&D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라.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 마련

조세는 국가의 재원조달 수단이라는 본원적 기능을 담당하며 재정지출과 함께 소 득 재분배, 자원 배분, 경제 안정화 등의 정책적 기능을 담당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조세지원 정책은 정부가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감소시켜는 주는 간접적인 지원 수단으로, 특정 산업의 육성, 설비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산업 구조 조정 등이 있다(전규선, 2001; 김상태·이강욱, 2002).

관광산업은 1990년대 중반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세법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정들이 남아 있다. 관광을 사치·향락·유흥 행위로 인식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과거의 조세체계가 여전히 남아있어 타 산업에 대비 감면 대상이 적고 불리한 세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희수, 2014). 특히, 그동안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지원 등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의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창업기업 조세감면(소득세, 법인세 등) 등 일부 세제지원 혜택은 여전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만 부여되고 있다.

조세 지원 정책이 일반적인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된 관광산업에서 조세 지원은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관광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관광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 설정과 관광산업에 적용가능한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과 주요 동향 분석, 관광산업의 세제 지원 현황 및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광산업 조세 체계를 규명한다.

둘째,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의 효과 분석 및 업계의 세제 지원 수요 분석을 통하여 세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조세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 개별 과제별 정책 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1.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며, 분석에 활용된 통계 등 2차 자료는 2019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이전 시기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3장 효과분석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국내를 중심으로 하되, 국외사례 분석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하였다.

1.2. 대상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과 특징, 개선과제 도출 등 분석 대상은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업종별)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분석 자료원에 따라 타 산업과의 비교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3장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효과와 정책 수요 분석은 자료 구득의 한계와 시간 적 제약으로 관광숙박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세제 지원 효과 분석은 관광산업 영역의 대표적인 세제 지원 과제로 꼽히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용역 부가가치 세 영세율 제도'를 사례로 제도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관광업계의 세제 지원 관련 수요 분석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5장의 기존 세제 지원 과제의 검토와 신규 과제 발굴은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

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을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의 특징을 도출하고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를 이중차분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관광 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넷째,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관광숙 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 파악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섯째, 국내외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관광산업 세제 지원 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심층과제를 선정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4.71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1장 서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목적 제시	• 연구범위 및 방법 제시				
1							
0.71	조세지원 제도 및 정책 동향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현황 분석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의 특성				
2장 세제 지원 현황 및 정책 동향	조세지원 제도의 특성 최근 조세 정책 동향 분석	•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추진 현황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 분석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의 특징 분석				
1							
3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 분석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수요 분석	종합분석 및 시사점				
세제 지원 효과 및 정책수요 분석	• 세제 지원 효과 분석 (이중차분법) • 분석 결과의 시사점	관광숙박업 대상 정책 수요 조사 조사 결과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4.71	국내 타 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주요국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사례 분석				
4장 국내외 세제 지원 사례 분석	조선업, 뿌리산업, 벤처산업 등 주요 산업의 세제 지원 사례 분석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관광 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 아시아,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관광 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1							
	관광산업의 특성과 세제 지원의 필요성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	관광산업 세제 지원을 위한 과제 분석				
5장 세제 지원 방향 및 과제	• 관광산업의 특수성 • 세제 지원의 필요성	•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의 방향 제시	 선행 세제 지원 과제 분석 및 신규 제안 과제 검토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심층분석 				
+							
6장	결론	정책 제언					
결론 및 제언	• 주요 연구결과 및 결론	• 정책 제언 제시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관광업계 정책 요구도 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는 관광산업 조세 지원 방안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국세통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였다. 관광산업 세제 지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동안 논의된 세제 과제를 도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둘째, 관광업계의 정책 수요 조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를 통한 세제 지원 과제를 수렴하였고,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연구는 중소기업, 뿌리기업 등 타 분야 조세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국외 주요국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제별 쟁점사항 분석은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세제 지원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표 1-2〉 연구 방법

구분	주요 내용		
문헌연구	 관광산업 조세 지원 방안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분석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국세통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관광업계 정책 수요 조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의견 조사 관광사업체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주요 기업 대상 관광숙박업 대상 설문조사(관광숙박업 중심으로 업계의 세제 이용 실태와 업계가 희망하는 조세 개선과제 현황 파악) 		
사례 연구	- 조선업, 뿌리산업, 중소기업 등 타 분야 조세 지원 정책 사례 분석 - 영국, 프랑스, 일본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 코로나19 관련 주요국가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 세법, 조세 정책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 추진 - 보유세 관련 사항(감정평가사, 세무사 자문) - 부가가치세 관련 검토(공인회계사, 세무사 자문)		

제2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동향

제1절 조세지원 제도와 정책 동향

1. 조세체계와 조세지원 제도의 특성

1.1. 우리나라 조세체계

조세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대상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와 지방세(11개), 총 25개로 국세가 14개 세목, 지방세가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는 세원에 따라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로 분류된다(OECD, 2011). 소득과세는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의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종업원분)가 해당된다. 재산과세는 국세의 상속세 등 5개, 지방세의 취득세 등 7개의 세목이 있고, 소비과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 등 7개, 지방세의 레저세 등 6개 세목이 있다.



[그림 2-1] 세원별 조세의 분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한국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p.20

가. 국세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내국세에 해당하는 13개 세목과 관세로 구성된다.

→ 「소득세법」 소득세 법인세 → 「법인세법」 직접세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내국세 —— 간접세 -개별소비세 주세 → 「주세법」 인지세 → 「인지세법」 - 유통세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국세 (14개) → 「교통・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경세법」 목적세 → 「교육세법」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관세 관세 → 「관세법」

[그림 2-2] 우리나라의 국세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stat.nabo.go.kr)

2019년 우리나라 국세수입 실적은 293.5조원으로 2018년 대비 다소(0.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중 비중이 높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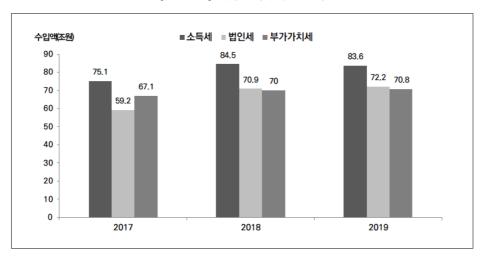
(표 2-1) 국세수입 실적(2017~2019)

(단위: 조원, %)

78	2	2017년(실적)		2018년(실적)			2019년(실적)		
구분	금액	증감액	증감률	금액	증감액	증감률	급액	증감액	증감률
총 국세	265.4	22.8	9.4	293.6	28.2	10.6	293.5	-0.1	0
일반회계	258.5	22.8	9.7	285.9	27.4	10.6	286	0.1	0.1
- 소득세	75.1	6.6	9.6	84.5	9.4	12.5	83.6	-0.9	-1.1
- 법인세	59.2	7.1	13.5	70.9	11.8	19.9	72.2	1.2	1.7
- 부가가치세	67.1	5.3	8.5	70	2.9	4.4	70.8	0.8	1.2
특별회계	6.9	0	0.4	7.7	0.8	11.7	7.4	-0.3	-3.3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국세수입실적)

[그림 2-3]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2018년 국세감면액은 약 44조원이며 국세 감면율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이다.

〈표 2-2〉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단위: 억원, %)

			(= : : : -; /
구분	2018년	2019년(전망)	2020년(전망)
국세감면액(A)	439,533	501,382	519,097
국세수입총액(B)	2,935,704	2,947,919	2,920,391
국세감면율[A/(A+B)]	13.0	14.5	15.1

자료: 기획재정부(2019), 조세지출예산서

국세의 조세특례는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조세지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단위: 억워 %)

			(
구분	2018년(실적)	2019년(전망)	2020년(전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793	22,795	24,79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2,214	20,357	21,311

자료: 기획재정부(2019). 조세지출예산서

〈표 2-4〉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성

직접 국세	간접국세 및 기타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국민생활의 한정을 위한 조세특례 • 지급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개별소비세의 면제, 감면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지출 현황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8년 0.1%, 2019년 0.08%, 2020년 0.04%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예산분류기준		2018	2018년 20 ²		년	2020년	
	에건군규기군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 공공 행정	27,430	6.24	28,751	5.73	29,884	5.76
2	공공 질서 및 안전	_	-	-	-	-	-
3	외교·통일	9	0.00	8	0.00	9	0.00
4	국방	395	0.09	334	0.07	345	0.07
5	교육	13,983	3.18	13,773	2.75	14,498	2.79
6	문화 및 관광	419	0.10	405	0.08	217	0.04
7	환경	11,226	2.55	11,781	2.35	12,683	2.44
8	사회복지	119,157	27.11	174,972	34.90	176,186	33.94
9	보건	61,085	13.90	67,057	13.37	70,778	13.63
10	농림수산	56,634	12.89	59,895	11.95	62,450	12.0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1,122	29.83	127,533	25.44	134,414	25.89
12	교통 및 물류	5,023	1.14	4,855	0.97	5,052	0.97
13	통신	_	_	_	-	_	_
14	국토 및 지역개발	12,996	2.96	11,986	2.39	12,549	2.42
15	과학기술	53	0.01	31	0.01	32	0.01
16	예비비	_	_	-	-	-	_
	합 계	439,533	100.0	501,382	100.0	519,097	100.0

자료: 기획재정부(2019). 조세지출예산서

나.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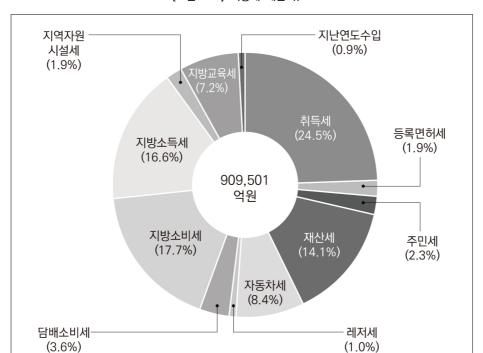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9개의 보 통세와 2개의 목적세(지역자워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4)되며, 지방세법의 소관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그림 2-4]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stat.nabo.go.kr)

2020년도 지방세 세입 규모는 총 90조 9,501억원으로, 세목 중 취득세가 22조 2,441억원(2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원별로 살펴보면 재산과 세에 속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약 40%를 차지한다. 지방세의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재산과세와 소득 과세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그림 2-5] 지방세 세입 규모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표 2-6〉 지방세목별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취득세	•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 목, 광업권, 어업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 원권, <u>요트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u> 권, <u>콘도미니엄 회원권</u>	•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선박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법인 등기 면허: 각종 인가·허가 등 면허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 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 매출액	• 경륜, 경정 및 경마 사업자 • 소싸움경기 시행자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주민세	균등분: 개인 또는 법인 재산분: 사업소의 연면적(330㎡ 초과)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50인 초과)	• 균등분: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및 종업원분: 사업주
지방소득세	• 개인: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소득 • 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소득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 5 종의 재산	•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소유자
자동차세	• 소유분: 자동차의 소유 • 주행분: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소유분: 자동차소유자 주행분: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자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 특정자원분: 지하수, 발전용수 등	• 발전소,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등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 등할주민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 납세의무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지방세 감면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 세특례제한법은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을 감면대상에 명시하고 있다.

〈표 2-7〉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구성

감면	지방소득세 특례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지방소득세 특례 지방소득세 특례

1.2. 정책수단으로 조세지원 제도의 특성

조세지원은 정부가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감소시켜는 주는 간접적인 지원 수단으로, 국가가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지원을 의미한다(전규선, 2001; 박영선, 2013). 국가재정의 관점에서조세 지출은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볼 수 있다(KDI, 2017). 따라서 조세 지출은 국가재정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경제적 효율성 제고 등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수단으로 조세지원 제도가 갖는 의의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도모한다. 즉, 국가는 조세지출을 이용하여 정책목표인 지역균형발전,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KDI, 2017). 조세특례는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 외부불경제 등 시장실패의 교정, 교육·문화 등 가치재의 공급, 경기대응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 중장기적 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또한 특정 산업의 육성, 설비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산업구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전규선, 2001).

조세특례의 유형은 조세 감면 효과가 영구적인 직접 지원과 일시적으로 조세를 이연하는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며,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 세, 준비금, 과세이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표 2-8〉 조세 특례의 유형

구분	지원 유형	내용		
	비과세	• 과세대상소득에서 특정 소득을 제외		
	소득공제	• 과세대상소득의 일부를 차감		
직접 감면	저율과세	• 일반세율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		
	세액공제	• 특정 경제활동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세액감면	•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준비금 • 특정		• 특정 적립금에 대해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		
가접 감면 과세이연		•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과세를 처분시점까지 연기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없이 법인 의 자산 처분시점까지 과세 연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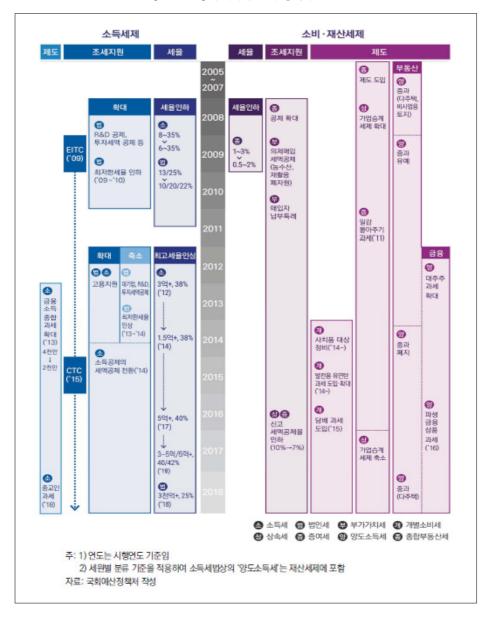
2. 조세 지원 제도 변화와 최근 정책 동향

2.1. 조세지원 제도의 변화 과정

우리나라 조세지원 제도는 1980년대 경제적 안정에 기반한 '넓은 세원-낮은 세 율'의 정책기조를 수립하였고, 1990년대 경제구조 조정 및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전면 개정으로 조세감면의 투명 성이 강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율 인하가 추진되었고, 투자 및 구조 조정 을 지원하는 조세감면의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였다. 2010년대 이후는 일자리 창출·소득양극화 해소를 지원하는 조세지원 도입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도입이 특징적이다(국회예산정책 처. 2018).

[그림 2-6]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흐름



조세정책은 연도별 경제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 조세정책의 흐름은 경제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과 성장동력의 확충, 경제활성화,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표 2-9) 경제 및 재정여건과 정책방향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성장/경기	경기둔화 장기화	회복세 둔화	경기부진	내수중심 회복세	경기회복
고용	고용개선	고용개선	고용 부진 (청년고용 악화)	고용 부진 (청년고용 악화)	고용 부진 (청년고용 악화)
양극화/분배	서민층 소득 증가 정체	임금상승 둔화 고령층 빈곤율 증가	취약층 어려움	-	양극화 (가계/기업, 가계간)
재정	재정의 경기 대응 필요	-	_	_	재정의 선도적 투자 (일자리,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기업성과의 가계소득 환류	-	-	저성장, 양극화 극복

주: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자료를 토대로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2.2. 최근 조세정책 방향 및 주요 동향

2019년 정부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왔는데, 그동안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나 지원 등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이 여전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차별 없는 지원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5%포인트 높이고,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재정 지원 정책은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 대비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법령·제도 등을 개편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 화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확립하고,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6개 부담금(창업후 3년) 면제 혜택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의 집약도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서비스업(산업발전법 시행령)으

로, 관광산업도 포함된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일부 서 비스업종에서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음식·숙박업, 스키장 운영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서비스 등 신규 추가 하였고,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미풍양속 저해 업종은 제외된다.

둘째, 세제 관련 정책으로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제 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세세분류기준 620개중 148개) 등에 한해 지원(창업후 최 초 소득발생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등) 가능하다. 다만 과당경쟁이 우려되 는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은 제외된다.

셋째,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한다.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세세분 류기준 620개중 422개) 등에 지원하는데, 이를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한다.

넷째.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콘텐츠 및 신서비스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유형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요건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부설 연구소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 창작전담부서 추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가능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유흥업 등 외 全업종 허용).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업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는 재정·세제·금융 등에서 의 차별 해소이다.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의 서비스-제조업 차별 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창업기업 조세감면(소 득·법인세 등) 등 일부 세제지원 혜택이 여전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어, 서비스산업 친화적 제도 개편 등 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서비스 업과 제조업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범위를 제조업 한정에서 유망 서비스업(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 문·과학·기술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체 서비스업(네거티브 전환)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표 2-10〉 조세 지원 정책 동향

지원 유형	내용
신성장서비스업종 육성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이 강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초 3년간 75%를 감면, 이후 2년간은 현행 50% 감면율 적용 * 현행법상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 신성장서비스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등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 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도 포함되며 물류산업까지 신성장서비스업에 포함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혜택 확대	• 지원 대상은 현행 50%에 최대 50%(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의 1/2)를 추가 공제 •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별 상시근로자 최소고용인원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 업의 경우 10인, 그 밖의 업종은 5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도 확대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 업에 대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기존 대상에 창업 7년 이내 기보·중진공기술평가 우수기업, 신용평가사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000만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분야 2000만원)기업 등이 추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지역경제 회복 대책) *산업경쟁력 관계장관 회의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 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 기를 하면 세제지원 혜택 제공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7.)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

최근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 흐름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과 신성장 서비스업 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 산업 발 전을 위해 이와 관련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주목할 부분은 지원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종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도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조세 지원 정책 관련 또 다른 큰 변화는 예비타당성 평가, 심층평가는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신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예비타당 성조사'와 일몰도래 예정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조세특례제한법」제 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근거)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세수 감소분 이 300억 원 이상 예상 시 기재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

예비타당성 평가는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지원 적합성, 소득재분배 효과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도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원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1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책성 분석	•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을 분석
경제성 분석	•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지원 적합성 등을 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 -효과분석을 통해 분석
형평성 분석	•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종합 평가	•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 (AHP)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AHP 평점이 0.5 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정책 제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책제언으로 제시 정책제언으로는 해당 조세특례의 특성, 향후 조세특례금액의 증가 가능성,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자료: KDI(2017).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의 확보와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광 부문의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2건, 심층평가는 1건이 진행되었다.

〈표 2-12〉 관광 부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심층평가 추진 현황

구분	과제명	평가 결과
2017년	2017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타당함 → 유지
 2019년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타당성 없음 → 기각
2020년	호텔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	진행중

2.3. 2019~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2년간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은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시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하였다.

지난 7월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더불어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 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를 내용으로 한다.

〈표 2-13〉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 방향

구분	2019년	2020년
비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
기본 방향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 기반 확충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자료: 기획재정부(각 년도), 세법개정안

[그림 2-7]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표 2-14〉 2019년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구분	내용	내용		
	투자 활성화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제고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소비·수출 활성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 ·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혁신성장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2. 경제·사회의 포용 성· 공정성 강화	포용성 강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행복기숙사 이용료등 부가가치세 면제		
	공정경제·과세형평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착기간 조정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허용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세입기반 확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자료: 기획재정부(2019.). 2019년 세법개정안

2020년 세제개정안의 내용은 특히 코로나19의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 비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2020년 세제개정안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부각되지 않는다 는 점은 한계로 보여진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광업계의 의견 수렴 과 제도 검토를 통해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15〉 2020년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구분	내용	내용
1. 코로나19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주류산업 규제 개선
피해 극복 및 <u>포스트</u> 코로나	소비활력 제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비 경제활력 제고	성장동력 강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서민·중소기업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일자리 지원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0-1	과세 형평 제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3. 조세제도	조세제도 합리화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 ·관세평가 제도 정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보호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납세편의 제고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조세법령 새로 쓰기: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자료: 기획재정부(2020.7.22.). 2020년 세법개정안

제2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특징

1.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추진 현황

관광산업 부분의 조세감면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1990년대 관광산업 조세 지원의 가장 큰 변화는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1991년 1월 세법 개정을 통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세제상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율도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1994년 3월, 관광사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의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하였다.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94년에는 휴양업, 국내외여행업, 관광유람선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였고, 1995년에는 관광호텔, 국민호텔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였다.

1998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종합휴양업에 3,000 만 달러이상(신고기준)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각종 세금감면이 적용되었고, 법인이 분양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음식점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용역업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도입하였다.

1999년에는 관광호텔 객실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폐지, 카지노·관광음식점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2002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서 관광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2007년~2008년 관광산업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시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2007년 1월~2008년 12월에 한시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0.8%의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완화하였다.

2008년 3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¹⁾ 김희수(2014)의 내용을 토대로 최근 정책 현황을 수정, 보완하였음

취득세·등록세가 산업단지 수준으로 면제 적용되었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에 유원시설업을 추가 적용하였다.

2015년부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취득세는 기존 50%에서 25%로 감면혜택이 축 소되고,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은 종료되었다. 다만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에게 제 공되는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레저세, 관광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왔다. 외국의 호텔숙박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호텔객실, 관광 자원 이용 등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관광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외국인 관광객 을 대상으로 '여행자 체류세(city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김희수, 2014).

관광세는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과세에 따른 조세 저항 및 관광비용의 상승을 유발하여, 관광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관광자원 및 시 설을 공급하는 생산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 이 존재한다. 예컨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수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조세수 출이 이뤄지기 쉬운 특성 때문에 조세수출 경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관광세 를 부과하는 지역과 부과하지 못하는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김희수, 201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에 대한 과세가 항상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관광과세는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잘못 설계된 관광 과세는 관광수요를 감소시 켜 고용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이 요구된다(권혁진, 2015).

〈표 2-16〉 관광산업 조세 감면 연혁 및 주요 동향

구분	주요 조세 지원 현황
1994년	관광사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
1994년	대기업의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종합휴양업에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 인에게 각종 세금 감면 적용
1998년	법인이 분양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음식점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용역업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도입
1999년	관광호텔 객실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폐지
1999년	카지노, 관광음식점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폐지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관광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2007년	서비스업의 종합부동산세를 0.8% 단일세율 한시적(2007.1.~2008.12.) 적용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유원시설업 추가 적용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2011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
2008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산업단지 수준으로 면제 적용
	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2010년	문화접대비에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문화관광축제의 입장권·이용권 구입비 추가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11~20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관광객이용시설업 추가 확대
2014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한시적 허용)
2018년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1년 적용 후 1년 연장)
2020년	국내여행 경비 소득공제 추진

자료: 김희수(2014)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자 재작성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은 서비스업 육성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한다. 최근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 관련 큰 변동사항은 없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이 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적극적인 세제지원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관광산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는 ①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② 일반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폐광지역 카지노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 과세, ④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다음은 각 과제의 내용과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2.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 분석

2.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도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용역 및 숙박관련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를 법적 근거로 한다. 호텔은 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특례호텔로 신청·지정되어야 하며,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 신규 도입되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제도 재도입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2020년에 2022년까지 2년 연장이 결정되었다.

〈표 2-17〉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 제도 개요

내용	최초 도입		현재
적용기간	2014.04.01 ~2015.03.31(1년간)		2018.01.01.~2019.12.31.(1년 연장)
환급대상 숙박일수	2일 이상 30일 이하		30일 이하
특례호텔 숙박요금	2014.4.1~2014.9.10	전년 동기 0% 이하	제네 따느 저제네 도기 100/ 이렇
국력표금 인상 제한	2014.9.11~2015.3.31	전년 동기 5% 이하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

자료: KDI(2019). 2019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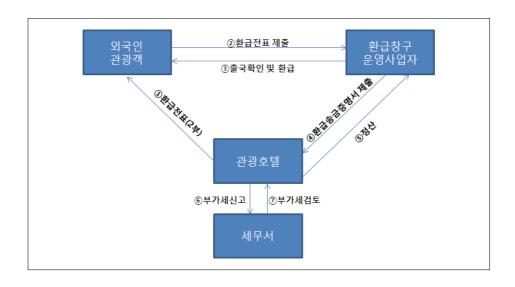
-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분기 단위로 전년(혹은 전전년) 동기 대비 객실종류 별(일반객실, 스위트룸) 평균 객실요금을 10% 이상 초과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에 한하여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표 2-18〉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 개요

구분	내용		
적용대상	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 - 관광객이 요금을 호텔에 직접 지불시(객실요금에 포함된 조식 포함, 봉사료 제외) -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 및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을 통해		
용역	숙박한 단체관광객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적용대상 호텔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로, 분기 단위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3개월) 객실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보다 10%를 초과하여 높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 지정 호텔 - 3개월 단위로 사전 신청('20.1./'20.3./'20.6./'20.9.)하고, 가격요건 준수여부는 기간 종 료 후 문체부 장관이 인상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장에 통보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로 확인		
적용관광객	- 특례적용호텔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		
범위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중 개인: 국내영업활동 또는 6월 이상 체재시 제외		

환급절차는 호텔이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교부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환급장소는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또는 도심환급 창구에서 가능하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은 2018년 29.5억 원, 2019년 49억 원 규모이다.

〈표 2-19〉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

기간	환급 실적
2014.4.1.~2015.3.31.	18억 7,519만원 환급(총 22,192건, 평균 84,500원/건)
2018년	29억 5천만원(3분기 기준, 132개 호텔 참여, 26,462건 환급)
 2019년	49억원

〈표 2-20〉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연혁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개정이유 및 비고
1977	■ 본조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정과 본조 신설 - 외국인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법령 및 시행령 제정 • 숙박용역 범위를 비거주자로 한정 한 것은 1979년 세법 개정에 포함
1980	■ 특례 범위 확대 - 기존 숙박용역 범위에 음식용역도 포함 - 음식용역 범위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 한정	
1990	■ 특례 제도 폐지 - 특례 범위 중 숙박용역과 음식용역 모두 제외	•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음식 요금을 과세대상으로 전환
1994	■ 제도 한시적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5의2 신설(숙박용역) - 적용기간: 1994.01.01. ~ 1994.12.31. (1년)	• 한국방문의 해인 1994연도를 맞 아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제도 한시적 시행
2001	■ 제도 한시적 재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5의2 재신설 - 적용기간: 2001.01.01. ~ 2002.12.31. (2년)	• 관광호텔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관 광객의 유치를 지원
2003~ 2004	■ 제도의 일몰 연장 - 당초 200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2003 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후 2004년 12월 31일 까지 1년 6개월 추가 연장 - 적용기간: 2003.01.01. ~ 2004.12.31. (2년)	• 총 3차례 일몰 연장 후 2004년 12월 31일 제도 일몰
2007	■ 제도 한시적 재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5의3 신설(숙박용역) - 적용기간: 2007.07.01. ~ 2008.12.31. (1년6개월)	•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
2008	■ 특례 범위 확대 및 일몰 연장 - 숙박용역 범위에 음식용역도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간 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음식용역은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 한정	•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시한 연장으로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상승 기대

자료: 기획재정부·KDI(2019).

2.2. 일반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 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 우는 영세율 적용되나,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외화 등으로 직접 지급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빙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여행업자의 외화획득여부에 대한 검증 이 곤란하여 탈루의 소지가 있으며,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용의 한계를 두고 있다. 2008년에는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다소 확대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 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제도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이나, 적용의 범위를 '관광알선용역'으로 규정하여 '알선'의 범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다. 2) 세법에서 규정하는 알선은 '대납'의 의미로 해석되어 여행사의 비용이 아닌 관광객(구매자, 소비자)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여행업계에서 영세율 적용의 범위를 '관광알선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요구가 제기된다.

²⁾ 조세심판원은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자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18서5003, 2019.11.05.)을 내림

2.3. 폐광지역 카지노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 과세

폐광지역 카지노(강원랜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및 제19조2의 제3호를 근거로, 폐광지역 카지노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저율과세하는 제도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모두 17개의 카지노가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내국인 1명이 카지노 1회 입장 시 개별소비세 50,000원과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된다. 현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폐광지역 카지노가 유일하며, 해당 카지노에 내국인 1명이 1회 입장하는 경우개별소비세는 6,300원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일반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법적으로 1회 입장 시 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면제되고 있으며 폐광지역 카지노 또한 면제되고 있다.

〈표 2-21〉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요 내용

구분	내국인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국민
폐광지역 카지노 조세특례	6,300원	면제
일반 카지노 개별소비세	50,000원	면제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7).

【 개별소비세법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과세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5. 카지노: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한편 폐광지역 카지노 조세특례는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입장하는 내국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명 1회 입장 시 3.500원으로 저율 과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금 액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배경에는 정선지역 일대의 석탄 산업이 퇴조함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

현재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현황 을 살펴보면 폐광지역 카지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준은 골프장 및 투전기시설 대비 낮으며 경마장 및 경륜장 경정장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주요 개정 현황

78	카지노		710171	트러기니서	777	거근 거둬다
구분	내국인	외국인	경마장	투전기시설	골프장	경륜·경정장
1976년	15,000원	1,000원	0171701	입장료의		
1988년	30,000원		입장료의 50%	100%	3,000원	
 1994년	50,000원	3070	2,000원		×	
 1998년				10,000원	12,000원	
1999년	50,000원 (3,500원)	2,000원 (면세)	500원			200원
2014년	50,000원 (5,250원)	(Livil)	1,000원			
2016년	50,000원 (6,300원)					400원

주: 개별소비세는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액이며, 괄호 안 숫자는 특례 적용 시의 개별소비세임, 경정장은 2008년 세법개정부터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포함됨

2017년 동 제도에 대하여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 심층평가가 시행되었다. 결론적으로 폐광지역 카지노 조세특례에 대한 정책적 타당 성과 적절성 및 제도의 효과성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폐광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폐 광지역 카지노 조세특례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생산 및 소득, 고용 증가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에서도 인 근 지역 주민들이 강원랜드를 폐광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7.10).

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이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등 제도 가 지역주민을 소외시키지 않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어 제도운영 및 정책목표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4.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982년에 신설되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 감면을 포함하 며, 관광호텔에 대한 규정은 2009년 신설되어 2014년 감면 축소, 2015년 감면이 종료된 상태이다. 현재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다.

〈표 2-23〉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등 감면 현황

조문	감면대상	감면율	일몰기한	
54조 ①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최대 50% (법 25% + 조례 25%)	2022.12.31.	
54조 ⑤-1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고유업무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조례) 재산세 최대 100%(조례)	2019.12.31. 종료	
54조 ⑤-2	여수세계박람회특구 창업기업	취득세 최대 50%(조례)	(조례 이관)	
54조 ⑤-3	여수세계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	재산세 최대 50%(조례)		
54조 ⑥-1~2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취득세 100%	2017.12.31.	
54초 ౷-1~2	경성당세달림국 선구본	재산세 중과세율 배제 특례	202212.31.	
농특 4조 ⑥-5	54조 ⑤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 의 20%	농특세 비과세	_	

자료: 구본풍·현기수·이광영(2020)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감면(취득세 25%) 이외에도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 추가 경감 사례는 25%~100%까지 나타난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 며,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요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표 2-24〉 지자체별 취득세 추가 경감률 적용사례

경감률	지자체
취득세 25% 경감	경기
취득세 35% 경감	경북
취득세 50% 경감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취득세 100% 경감	제주

자료: 구본풍·현기수·이광영(2020)

관광호텔에 대한 특례는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였으나,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한이 모두 종료되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6. 12. 27., 2020. 1. 15.)
-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 1.)
-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하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제도의 특징

관광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민간투자 및 해외투자 촉진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세제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광분야 조세 지원 제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대표적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시행과 폐지를 반복해 왔으며, 일몰제 적용이 특징적이다. 현재는 사 후 환급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재산세 감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 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한시적 시행 후 2014년 종료되었다.

둘째. 관광산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조항에 따라 관광 사업의 세부 업종을 추가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왔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이 전 업종이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관광산업은 적용 범위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현재 관광산업의 주요 업종별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조세 지원 항목을 분석하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조세 지원 제도는 총 4가지로 압축된다.

〈표 2-25〉 관광산업 업종별 조세 지원 제도 현황

구분	지원 내용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관광호텔업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부가가치세법)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일반여행업
개별소비세	- 폐광지역 카지노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 과세(개별소비세법) * 폐광지역 카지노 조세특례: 내국인 6,300원/ 외국인·해외 거주국민 면제 * 일반 카지노 개별소비세: 내국인 50,000원/ 외국인·해외 거주국민 면제 * 개별소비세 저율과세(면세)에 따라 이와 연동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도 경감	카지노
취득세	- 관광단지개발사업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2022년 12월 31일까지), 25%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 기능(지방세특례제한법)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업종별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관광호텔업, 일반여행업, 카지노업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일부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관광산업 내부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타 업종에서 조세 형평성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된다.

넷째, 관광산업 조세 지원제도의 연혁을 추적하면, 올림픽, 월드컵 등 메가 이벤 트 개최와 연계하여 제한적인 조세 특례를 적용해 왔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그동안 추진된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정책수단으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조세 지원 정책 동향과 제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의 과제는 조세 지원 제도의 지속성 확보와 앞서 시행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조세 지원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철지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세 지원을 통해 당초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조세 지원 제도의 설계는 합리적이고,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무엇보다 정책의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도조세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 조세 지원 제도의 대표적 사례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3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 및 정책수요 분석

제1절 세제 지원 효과 분석: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례

1. 분석 개요

1.1. 분석 배경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과거 세제 지원의 효 과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의 세제 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논의할 세제 지원 제도의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의 세제 지원이 효과가 없었다면, 본 보고서는 세제 지원의 효과가 없었던 원인 및 효과성을 가지는 새로운 지원 방향에 대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세제 지원의 효 과가 존재하였다면, 무엇이 효과인지 또한 어떻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타당한 논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는 과거 실제 로 시행되었던 관광숙박업 세제 지원 제도 중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효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물음에 답을 주고자 한다.

1.2. 분석 자료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 대해 다룬다. 안타깝게도 공개되어 있는 '관광사업체조사'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정책 효과 평가(policy impact evaluation)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매년 조사하는 사업체가 동일하지 않다. '관광사업체조사'의 목적은 전체 관광사업체의 매출, 고용 등 총량 자료(aggregate data)를 각 연도별로 작성 · 보고 하는데 있다. 따라서 매년 동일한 사업체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임의 추출(random sampling)과 추정(estimation) 통해 총량 자료를 작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연도마다 포함되는 업체가 상이하다는 사실은 정책 효과 평가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로 관광사업체조사에 포함된 일부 관측치는 '하나의 기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섹터에 따라 분리'한 개체이다. 3) 하지만 하나의 사업체 안에서는 외부에서의 거래와는 달리 편의상·세제상의 이유들로 인하여 경제적 유인에 따른 거래구조가 나타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예를 들면, 동일한 사업체 내에서의 거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와 달리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으며, 세금을 가장 적게납부하는 방식으로 전체 기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거래구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표 3-1〉 분석 데이터 기술 통계량

(7F)	로그	시지	매초애	기소	통계량
(/ 1/	\pm		메놀곡	/ 🛨	$\overline{\sim}$

(기) 도그 실실 배출액 기술 동계당						
구분		관측치	평균	SD	최솟값	최댓값
로그 실질 매출액	전체	5,135	6.352	2.002	-0.046	13.773
	2009	1,096	6.300	1.986	0.103	13.002
	2010	676	6.245	1.940	1.174	12.418
	2011	644	6.300	2.031	0.063	13.773
	2012	639	6.785	2.008	1.149	12.879
	2013	434	6.180	2.006	1.139	13.052
	2014	362	6.355	1.929	0.031	13.211
	2015	332	6.073	2.067	0.000	13.180
	2016	323	6.556	2.012	-0.020	13.028
	2017	282	6.113	1.855	-0.042	12.963
	2018	347	6.512	2.094	-0.046	13.157

³⁾ 업체 A가 숙박업과 컨벤션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 A1, A2로 나누었다는 의미이다.

⁴⁾ 즉, 사업체의 재무적 지표들이 실제 이용자·비용과 비례할 필요가 없다.

(나) 로그 고용인원 기술 통계량

_							
구분		관측치	평균	SD	최솟값	최댓값	
로그 고용 인원	전체	5,218	2.372	1.360	0.000	8.127	
	2009	1,120	2.377	1.368	0.000	8.127	
	2010	685	2.289	1.301	0.000	7.653	
	2011	655	2.353	1.285	0.000	7.510	
	2012	639	2.538	1.360	0.000	7.121	
	2013	434	2.279	1.332	0.000	7.530	
	2014	378	2.448	1.379	0.000	7.622	
	2015	341	2.223	1.378	0.000	7.649	
	2016	327	2.473	1.422	0.000	7.860	
	2017	292	2.193	1.307	0.000	6.908	
	2018	347	2.485	1.515	0.000	7.916	

주: 자가 고용을 포함하면 회사의 최소고용인원은 1명이나 매출은 영의 매출이 존재하므로, 로그 매출액의 관측치는 로그 고용인원에 비해 약간 작다. 또한 자가 고용 인원의 로그 값은 영이므로 로그 고용인원의 최솟값은 각 연도마다 영으로 일정하다. 매출액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GDP deflator)를 사용하여 실질화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2018년 '관광사업체조사'의 원시 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석용 데이터를 새롭게 작성하였다.5) 각 연도의 관광사업체조사의 원시자료를 결합한 다음, 하나의 사업체를 여러 개로 분할한 데이터는 제거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과 이후 기간에서 반드시 관측되는 사업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6)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패널 데이터로 구축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한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모두 기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동일한 조사업체에 대하여 각 연도별 명칭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시자료에 수록된 기업체의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사이트'에서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원시자료에는 행정망에 있는 오탈자가 그대로 수록되어있다. 7) 본 보고서의 분석 데이터는 이러한 오류들을 수정하여 구축하였음을 밝힌다.

^{5) 2008}년 데이터는 이후에 조사된 데이터와 변수명이나 부호화에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⁶⁾ 데이터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2009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조사되었으며, 2010-2018년 사이에도 반드시 한 번 이상 관측되었다.

⁷⁾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삼성전자'라는 사업체의 명칭으로 '삼성전자', '(주)삼성전자', '삼선전자(주)'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물론, 삼성전자는 관광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는

분석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표 3-1〉과 같다. 2009년 에도 조사되었고, 그 이후의 연도에 한 번 이상 조사된 사업체는 총 1,120개이다.8) 다만, 종속변수에 따라서 사업체 총수에 차이가 있다. 로그 고용인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동일하게 총 1,120개이나, 로그 매출액의 경우 영의 매출액을 가지는 일부 기업이 누락되어 가용한 사업체는 총 1,096개이다.

1.3.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효과로 볼 수 있는지를 다음의 예시를 통해 생각해보자. 9 우리가 '사탕쿠폰'의 효과를 알고자 한다면 쿠폰을 받았을 때의 소비와 쿠폰을 받지 않았을 때의 소비를 비교하면 된다. 만약 쿠폰을 받았을 때 사탕을 6개 사고, 쿠폰을 받지 않았을 때 사탕을 4개 샀다면 사탕쿠폰의 효과는 사탕 2개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동일한 조건, 즉 유전적으로 완전하게 동일하면서 독립적인 두 개체 각각에게 한 명은 쿠폰을 주고 한 명은 주지 않아야 가능한 방법이다.

상기한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실제로 완전하게 동일한 개체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두 집단에서 무엇인가를 제공받은 집단과 그러지 못한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과학계에서 처치군(treatment group)으로 칭하며, 후자는 대조군(comparison group)으로 부르고 있다. 앞에서의 예시와 연결하여 말하자면, 돈을 받은 집단이 처치군, 못 받은 집단이 대조군, 돈을 받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효과 분석이다. 본 절의 분석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은 집단과 적용받지 않은 집단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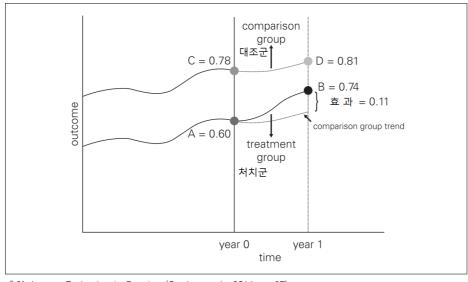
다만 실험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 데이터는 추가적 인 통계적 기법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정책 효과 평가(policy impact evaluation)

포함되지 않는다.

⁸⁾ 이것은 본 보고서에서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남은 사업체의 수를 제시한 것이다. 실제 연속적으로 조사된 사업체의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며, 2008년 데이터까지 결합하는 경우 더 많은 수의 관측치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⁹⁾ Gertler et al. (2011)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예시를 축약하여 설명한 것이다.

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여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효과를 추정해본다.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 하면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이중차분법의 개념

출처: Impact Evaluation in Practice (Gertler et al., 2011, p. 97)

그림에서 대조군과 처치군은 정책시행 이전(year0)에는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다(parallel trend assumption), 정책시행 이후(year1)에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조군의 정책시행 전후의 결과(outcome) 차이와 처치군의 정책시행 전후 차이는 각각 (D-C), (B-A)이다. 두 차이의 차이인 (B-A) - (D-C)를 정책의 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이중차분법의 기본 철학이다.10)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생산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에 비해 복잡하다. 그 이유는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A=C'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A와 C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실험이 잘 통제되기 때문에 두 번차감할 필요가 없고 현 시점에서의 단순차분 (D-B)을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생산되지 않고 관측에 의해 수집한 사회과학 데이터는 'A=C'의

¹⁰⁾ 이러한 이유로 '차이에서의 차이'. '이중차분법'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거의 갭을 현재의 갭에 차 감하여 비교하여 주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중차분법은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ln\left(\mathbf{\widetilde{S}} \leftarrow \mathbf{H} \leftarrow \mathbf{L}_{jt}\right) = \alpha + \beta_{DD} \leftarrow \mathbf{H} \mathbf{G}_{j} \times \mathbf{G} \, \mathbf{M} \, \mathbf{B} \, \mathbf{J} \, \mathbf{U}_{t} + \delta_{1} \leftarrow \mathbf{H} \mathbf{G}_{j} + \delta_{2} \, \mathbf{G} \, \mathbf{M} \, \mathbf{B} \, \mathbf{J} \, \mathbf{U}_{t} + \epsilon_{jt},$$

여기서 숙박업 $_j$ 은 업체 $_j$ 가 숙박업에 속하면 $_1$ 아니면 $_0$, 영세율기간 $_t$ 은 $_2$ 009년이면 $_1$ 아니면 $_3$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주어진 회귀모형에서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귀무가설 $_3$ 0의 대한 통계적 검증과 동일하다. 제시한 회귀모형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도효과, 지역효과를 고려하는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변수(outcome variable)는 실질매출액, 고용인원을 사용한다. $_3$ 1의 매출액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GDP deflator)를 사용하여 실질화를 수행하였다.

2.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2.1. 숙박업 대상 이중차분법 결과

이중차분법은 일정한 가정 아래서 '처치(treatment)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이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여기서는 매출액과 고용인원을 결과변수로 설정하고 처치군은 관광숙박업, 대조군은 그 외의 업종에 속한 관광사업체로 설정하여 분석한다.12) 아래 식에서는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¹¹⁾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¹²⁾ 관광사업체조사는 관광 업종을 크게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1) $\ln(\Delta \Delta \Omega \Omega) = \alpha + \beta_{DD} + \Delta \Omega_i \times \Omega$ 성세율기간_t + $\delta_1 + \delta_2 + \delta_3 + \delta_3$ $+\delta_{9}$ 영세율기간, $+\epsilon_{it}$,
- (2) $\ln(\Delta \Delta \mathcal{P}) = \alpha + \beta_{DD}$ 숙박업_i×영세율기간_t+ δ_1 숙박업_i $+\delta_2$ 영세율기간 $_t+\sum_{a=2010}^{2017}\psi_a$ 연도효과 $_{t,a}+\epsilon_{it},$
- $+\delta_{2}$ 영세율기간, $+\sum_{s=2}^{17} 2\gamma_{s}$ 지역효과, $s+\epsilon_{st}$
- (4) $\ln(\Delta \Delta M = \alpha + \beta_{DD} + \Delta M + \delta_{AD} + \delta_{$ $+\delta_2$ 영세율기간 $_t + \sum_{a=2010}^{2017} \psi_a$ 연도효과 $_{t,a}$ $+\sum_{s=2}^{17} \gamma_s$ 지역효과 $_{is} + \epsilon_{it}$,
- $(5) \quad \ln\left(\text{고용인원}_{it}\right) = \alpha + \beta_{DD} 숙박업_{j} \times 영 세율기간_{t} + \delta_{1} 숙박업_{j}$ $+\delta_{2}$ 영세율기간, $+\epsilon_{it}$,
- (6) $\ln(\text{고용인원}_{it}) = \alpha + \beta_{DD}$ 숙박업 $_{i} \times$ 영세율기간 $_{t} + \delta_{1}$ 숙박업 $_{i}$ $+\delta_2$ 영세율기간 $_t+\sum_{q=2010}^{2017}\psi_q$ 연도효과 $_{t,q}+\epsilon_{jt},$
- (7) $\ln(\mathbf{z} \mathbf{s} \mathbf{0} \mathbf{0} \mathbf{0}_{it}) = \alpha + \beta_{DD} \mathbf{c} \mathbf{v} \mathbf{0}_{i} \times \mathbf{0} \mathbf{0}$ 성세율기간 $_t + \delta_1 \mathbf{c} \mathbf{v} \mathbf{0}_{it}$ $+\delta_2$ 영세율기간, $+\sum_{s=2}^{17}\gamma_s$ 지역효과, $s+\epsilon_{it}$
- (8) $\ln(\mathbf{z} \mathbf{s} \mathbf{0} \mathbf{0} \mathbf{0}_{it}) = \alpha + \beta_{DD} \mathbf{c} \mathbf{v} \mathbf{0}_{i} \times \mathbf{s} \mathbf{0} \mathbf{0}_{it} + \delta_{1} \mathbf{c} \mathbf{v} \mathbf{0}_{it} + \delta_{1} \mathbf{c} \mathbf{v} \mathbf{0}_{it}$ $+\delta_2$ 영세율기간 $_t + \sum_{a=2010}^{2017} \psi_a$ 연도효과 $_{t,a} +$ $+\sum_{s=2}^{17} \gamma_s$ 지역효과 $_{is} + \epsilon_{it}$,

여기서 숙박업 $_i$ 은 업체 $_j$ 가 숙박업에 속하면 $_1$ 아니면 $_1$ 0, 영세율기간 $_t$ 은 $_2$ 009 년이면 1 아니면 0, 숙박업, × 영세율기간, 은 숙박업, 과 영세율기간, 의 교호항 (interaction term)이다. 교호항의 계수 β_{DD} 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된다면 부 가가치세 영세율의 정책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도효과 $_t$ $_a$ 는 t=q이 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예를 들어 연도효과 $_{t,2010}$ 은 t가 2010년이면 1 그 외의 연도에는 0인 더미 변수이다. 지역효과 $_{i,s}$ 는 업체 $_{j}$ 가 지역

s에 속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식 (1)은 앞에서 설명한 가장 기초적인 이중차분법 모형이며, 식 (2)는 연도효과를 고려한 모형, 식 (3)은 지역효과를 고려한 모형, 식 (4)는 연도효과와 지역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모형이다. 식 (1)-(4)는 매출액을 결과변수로 한다. 결과변수가 고용 인원이라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식 (5)-(8)은 각각 식 (1)-(8)의 모형과 동일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식의 번호와 각 표의 행의 번호를 일치시켜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식 (1)-(4)의 추정결과는 다음 〈표 3-2〉에서 제시한다.

변수	(1)	(2)	(3)	(4)
숙박 $\mathbf{d}_{j} \times$ 영세율기간 $_{t}$	0.091	0.062	0.102	0.068
	(0.083)	(0.085)	(0.080)	(0.082)
숙박업 $_{j}$	1.296***	1.326***	1.324***	1.360***
	(0.112)	(0.117)	(0.104)	(0.108)
영세율기간 $_t$	-0.050	-0.016	-0.091*	-0.027
	(0.054)	(0.107)	(0.052)	(0.100)
상수항	5.985***	5.951***	7.300***	7.236***
	(0.070)	(0.117)	(0.123)	(0.154)
연도효과	No	Yes	No	Yes
지역효과	No	No	Yes	Yes
관측치	5,135	5,135	5,135	5,135
결정계수	0.088	0.098	0.255	0.263

〈표 3-2〉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실질 매출액

본 보고서의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정책 효과는 숙박업과 영세율 기간의 교호항 숙박업 $_j \times$ 영세율기간 $_t$ 이 포착하게 된다. 만약, 영세율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교호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비유의하게 추정된다. 13 〈표 $^{3-2}$ 〉에서는 모든 교호항의 계수가 비유의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정책 효과는 통계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식 5 -(8)에 나타난 것처럼, 결과변수가 고용인원인 분석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표 $^{3-3}$ 〉이 제시하고 있다.

주: 괄호 안은 클러스터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매출액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화를 수행하였다.

¹³⁾ 통계적으로 비유의하다는 말은, 통계적으로는 추정치와 영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표 3-3)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고용인원

변수	(5)	(6)	(7)	(8)
숙박업 $_{j} \times$ 영세율기간 $_{t}$	0.283***	0.237***	0.301***	0.253***
	(0.049)	(0.051)	(0.047)	(0.048)
숙박업 _j	0.899***	0.945***	0.926***	0.975***
	(0.084)	(0.088)	(0.079)	(0.083)
영세율기간 $_t$	-0.056**	-0.041	-0.077***	-0.050
	(0.028)	(0.069)	(0.027)	(0.064)
상수항	2.101***	2.085***	2.722***	2.695***
	(0.046)	(0.081)	(0.098)	(0.121)
연도효과	No	Yes	No	Yes
지역효과	No	No	Yes	Yes
관측치	5,218	5,218	5,218	5,218
결정계수	0.105	0.113	0.188	0.196

주: 괄호 안은 클러스터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3-3〉의 모든 식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간에 숙박업은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분석되었다. 모든 행에서 숙박업과 영세율기간의 교호항은 통계적으 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사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인원을 늘리는 의사결정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표 3-2〉 와 〈표 3-3〉 결과에서 교호항 유의성의 상이함은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따라 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리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음의 내용은 이에 상응하는 논리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2. 서울 숙박업 대상 이중차분법 결과

앞선 절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로그 매출액에는 영향이 없으나 로그 고용인원 에는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매출액과 달리 고용인원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14) 그러나

¹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로 매출은 급감하였으나, 고용인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은 현재의 관광사업체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은 관련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기업이 마음대로 고용인원을 조절할 수는 없다.

기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체에서 고용이 이윤으로 이어 진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해당 시기에 존재하였을 수 있다. 즉, 매출이나 기업의 재무지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인력을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유는 당시의 시점에서 향후 매출 증가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그 매출액에서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한다. 그러나 〈표 3-2〉에서 살펴본 것처럼, 숙박업과 영세율 기간의 교호항 계수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쉬운 가능성은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인해 가격이 10%나 감소하는 유인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가 아무반응이 없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의 약점이다. 숙박시설의 신규 공급은 수 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숙박 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이어야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다른 이유로는 통계적 검정에 사용된 표준 오차가 강건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적 추론(statistical inference)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표의 주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고서의 통계적 추론은 군집화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사용한다. 군집화 표준오차는 데이터 내에서 군집의 수가 충분한 경우에는 자기 상관(serial correlation)이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에 모두 강건하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군집은 무려 1,000개를 넘어서고 있다.16) 따라서 통계적 추론이 잘못될 우려역시 매우 낮은 편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이중차분법에서 처치군과 대조군이 적절하지 않으면 효과가 측

¹⁵⁾ 물론 숙박시설의 수준은 사업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4~5성급 관광호텔과 소위 모텔이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는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모텔의 공급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 이 가격만을 고려하여 숙소를 선정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모텔은 숙박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체 사이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균질하므로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가격을 10%나 하락시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숙박 서비 스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가격탄력성의 실제 추정은 가격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수요·공급 연립방정식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의 통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실증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분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¹⁶⁾ 실무적으로는 약 50개 정도를 충분한 군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본 보고서에서 군집의 수는 매우 충분하다.

정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숙박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숙박 업을 처치군으로 설정한 것은 일견 적절하게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정책은 법률 로 규정한 정책 대상에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음주연령의 제한 (minimum legal drinking age)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음주연령 제한은 법이 시 행되는 즉시 모두에게 적용된다. 법에서 제한하는 연령에 있는 사람은 합법적인 방 법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표 3-4〉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

(단위: %, 중복 응답)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78.7	78.0	78.8	79.4
경기	13.3	13.1	15.6	14.9
부산	10.3	10.4	15.1	14.7
제주	18.3	20.2	10.0	8.3
인천	6.8	6.2	10.0	8.3
강원	6.4	6.4	6.8	9.7
대구	1.6	1.2	2.5	3.1
경북 경북	2.5	2.0	2.6	2.8
경남	3.2	1.9	2.2	2.3
 전북	1.7	1.3	1.5	1.1
대전	1.2	1.0	1.7	1.7
충남	1.3	1.0	1.3	1.4
충북	0.6	0.4	0.9	0.9
광주	0.8	0.5	1.2	1.1
 울산	1.0	0.6	1.4	1.2
 전남	1.8	0.9	0.7	0.7
 세종	0.2	0.2	0.4	0.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그러나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이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세율의 적 용을 받은 숙박업체는 그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은 전국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지 않 은 숙박업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기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표 3-4》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외래 관광객은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부산이나 제주와 같이 일본, 중국에서 오는 근거리 관광객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나마 응답률이 높은 인천과 강원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미미한 실정이다.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실제 적용은 숙박업체에 '외국인'이 숙박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외국인이 방문하지 않는 지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숙박업을 처치군으로 설정하면 정책의 정확한 효과 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념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 지 못한 업체를 처치군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 상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여부나 전체 매출액에서 부가가 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매출액을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장 많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되는 '서울의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영세율 정책의 효과 추정을 시도하였다. 모형은 다음의 식 (9)-(12)와 같다.

- $$\begin{split} (9) & \ln \left(\mathbf{\Delta} \mathbf{\Delta} \mathbf{\Pi} \mathbf{\Xi} \mathbf{\Psi}_{jt} \right) = \alpha + \beta_{DD} \mathbf{\Lambda} \mathbf{\Xi} \mathbf{L} \mathbf{\Psi} \mathbf{G}_{j} \times \mathbf{G} \mathbf{M} \mathbf{\Xi} \mathbf{J} \mathbf{U}_{t} + \delta_{1} \mathbf{\Lambda} \mathbf{\Xi} \mathbf{L} \mathbf{\Psi} \mathbf{G}_{j} \\ & + \delta_{2} \mathbf{G} \mathbf{M} \mathbf{\Xi} \mathbf{J} \mathbf{U}_{t} + \epsilon_{jt}, \end{split}$$
- $$\begin{split} (10) & \ln(\text{실질매출액}_{jt}) = \alpha + \beta_{DD} \text{서울숙박} \textbf{d}_j \times \textbf{g} \, \text{세율기간}_t + \delta_1 \text{서울숙박} \textbf{d}_j \\ & + \delta_2 \textbf{g} \, \text{세율기간}_t + \sum_{q=2010}^{2017} \psi_q \textbf{e} \text{도효과}_{t,q} + \epsilon_{jt}, \end{split}$$
- $$\begin{split} (11) & \ln(\text{실질매출액}_{jt}) = \alpha + \beta_{DD} \text{서울숙박업}_{j} \times \text{영세율기간}_{t} + \delta_{1} \text{서울숙박업}_{j} \\ & + \delta_{2} \text{영세율기간}_{t} + \sum_{s=2}^{17} \gamma_{s} \text{지역효과}_{j,s} + \epsilon_{jt}, \end{split}$$
- $$\begin{split} (12) & \ln(\text{실질매출액}_{jt}) = \alpha + \beta_{DD} \text{서울숙박업}_{j} \times \text{영세율기간}_{t} + \delta_{1} \text{서울숙박업}_{j} \\ & + \delta_{2} \text{영세율기간}_{t} + \sum_{q=2010}^{2017} \psi_{q} \text{연도효과}_{t,q} \\ & + \sum_{s=2}^{17} \gamma_{s} \text{지역효과}_{i,s} + \epsilon_{jt}, \end{split}$$

^{17) 2009}년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 특히 서울을 선호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과거의 조사에서는 시도가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 등의 권역으로 조사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표에서 같이 제시하지 않는다.

여기서 서울숙박업 $_{i}$ 은 업체 $_{j}$ 가 서울에 소재한 숙박업체이면 $_{i}$ 의 값을 가지며 그 외의 업체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영세율기간,은 2009년이면 1 아니면 0, 서울숙박업;×영세율기간,은 서울숙박업;과 영세율기간,의 교호 항이다. 연도효과 $_{t,q}$ 는 t=q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지역효과 $_{i,s}$ 는 업체 j가 지역 s에 속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식 (9)-(12)의 추정결과는 〈표 3-5〉에서 제시된다. 서울에 소재한 숙박업체를 대 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식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처치 군과 대조군의 설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변수 (9)(10)(11)(12)서울숙박업,×영세율기간, 0.269** 0.286** 0.311** 0.339** (0.132)(0.136)(0.132)(0.136)서울숙박업, 1.995*** 1.979*** 0.798*** 0.766*** (0.217)(0.218)(0.244)(0.247)영세율기간, -0.076*-0.138-0.118*** -0.210** (0.046)(0.104)(0.045)(0.101)7.436*** 7.533*** 상수항 6.240*** 6.301*** (0.137)(0.111)(0.170)(0.060)연도효과 No Yes No Yes 지역효과 No No Yes Yes 관측치 5,135 5,135 5,135 5,135 결정계수 0.062 0.071 0.174 0.182

〈표 3-5〉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실질 매출액, 서울 숙박업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숙박업체의 로그 고용인원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 역 시 수행하였다. 모형은 아래의 식 (13)-(16)에서 제시하고 있다.

 $(13) \ \ln(\mathbf{Z} \, \mathbf{S} \, \mathbf{U} \, \mathbf{H}_{jt}) = \alpha + \beta_{DD} \mathbf{H} \, \mathbf{S} \, \mathbf{\varsigma} \, \mathbf{H} \, \mathbf{U}_{j} \times \mathbf{S} \, \mathbf{H} \, \mathbf{S} \, \mathbf{J} \, \mathbf{U}_{t} + \delta_{1} \mathbf{H} \, \mathbf{S} \, \mathbf{\varsigma} \, \mathbf{H} \, \mathbf{U}_{j}$ $+\delta_2$ 영세율기간 $_t+\epsilon_{it}$

주: 괄호 안은 클러스터 표준 오차(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 $$\begin{split} (14) & \ln(\text{고용인원}_{jt}) = \alpha + \beta_{DD} \text{서울숙박업}_{j} \times \text{영세율기간}_{t} + \delta_{1} \text{서울숙박업}_{j} \\ & + \delta_{2} \text{영세율기간}_{t} + \sum_{q=2010}^{2018} \psi_{q} \text{연도효과}_{t,q} + \epsilon_{jt}, \end{split}$$
- $$\begin{split} (15) & \ln \left(\text{고용 인 } \mathfrak{D}_{jt} \right) = \alpha + \beta_{DD} \text{서울숙박업}_{j} \times \text{영세율기간}_{t} + \delta_{1} \text{서울숙박업}_{j} \\ & + \delta_{2} \text{영세율기간}_{t} + \sum_{s=2}^{17} \gamma_{s} \text{지역효과}_{j,s} + \epsilon_{jt}, \end{split}$$
- $$\begin{split} (16) \quad &\ln(\text{고용인원}_{jt}) = \alpha + \beta_{DD} \text{서울숙박업}_{j} \times \text{영세율기간}_{t} + \delta_{1} \text{서울숙박업}_{j} \\ &+ \delta_{2} \text{영세율기간}_{t} + \sum_{q=2010}^{2018} \psi_{q} \text{연도효과}_{t,q} \\ &+ \sum_{s=2}^{17} \gamma_{s} \text{지역효과}_{j,s} + \epsilon_{jt}, \end{split}$$

여기서 서울숙박업 $_j$ 은 업체 $_j$ 가 서울에 소재한 숙박업체이면 1의 값을 가지며 그 외의 업체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영세율기간 $_t$ 은 2009년이면 1 아니면 0, 서울숙박업 $_j$ ×영세율기간 $_t$ 은 서울숙박업 $_j$ 과 영세율기간 $_t$ 의 교호항이다. 연도효과 $_{t,q}$ 는 t=q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지역효과 $_{j,s}$ 는 업체 $_j$ 가 지역 $_s$ 에 속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이다.

〈표 3-6〉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고용인원, 서울 숙박업

변수	(13)	(14)	(15)	(16)
서울숙박업 $_{j}$ $ imes$ 영세율기간 $_{t}$	0.251***	0.246**	0.266***	0.265***
	(0.096)	(0.098)	(0.096)	(0.098)
서울숙박업 _j	1.505***	1.510***	1.125***	1.127***
	(0.184)	(0.185)	(0.206)	(0.208)
영세율기간 $_t$	0.000	-0.048 -0.015		-0.076
	(0.025)	(0.067)	(0.024)	(0.065)
상수항	2.276***	2.324***	2.656***	2.716***
	(0.041)	(0.078)	(0.110)	(0.135)
연도효과	No	Yes	No	Yes
지역효과	No	No	Yes	Yes
관측치	5,218	5,218	5,218	5,218
결정계수	0.076	0.081	0.113	0.118

주: 괄호 안은 클러스터 표준 오치(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종속변수를 로그 고용인원으로 하는 식 (13)-(16)의 추정결과는 〈표 3-6〉에서 제 시한다. 〈표 3-6〉의 모든 행에서 유의한 양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고, 따라서 〈표 3-3〉과의 정책적 함의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여기서 보고하지 않은 회귀분석에서도 본 결과를 지지하는 다수의 분석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서울이 아닌 지역의 숙박업체를 처치군으로 분석하였으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화하지 않은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서울에 소재한 숙박업체를 처치군으로 설정한 이중차분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얻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부 가가치세 영세율이 긍정적인 매출·고용 증대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효 과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지역발전 또는 산업정책을 통 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18)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본 장의 분석결과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관광 분야에서 조세 정책이 관광 사업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다. 본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상을 전체 관광숙박업과 서울 소재 관광숙박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상이하였으며, 이는 제도의 실제적인 측면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보다 정확한 정책 효과 평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개념적인 적용 범위는 전국에 있는 모든 관 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 범위는 외국인이 숙박하는 업 체가 된다. 조세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에 있어 정책 효과 측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책 효과 측정의 설계와 수행에서 실무적인 측면 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¹⁸⁾ 제조업의 경우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수출 기업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 지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경우 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적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홍성훈·성명재, 2013).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특정 재화가 외국으로 이송되어 소비되면 우리는 그것을 '수출'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특정 재화를 소비하면 그것을 '관광'이라 칭하고 있다. 수출이라고 하는 행위의 볼륨이 관광 행위의 볼륨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가져다주는 국제 수지의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두 행위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두 행위를 차별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관광숙박업 세제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사례는 관광숙박업체에 투숙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수출, 즉외국인의 인바운드 관광으로 인한 국내 매출의 추가적인 증대 유도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2절 관광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본 연구는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의 대상자인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업계의 세제 지원 현황 및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관광숙박업의 세제 이용 현황,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조사대상은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한정하 여 실시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인해 내·외 국인 관광객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내 숙박업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매출액 감소로 휴·폐업 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조사 항목에 코로나19 피해현황 및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1.2. 조사 설계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9년 기준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관광호텔업, 호스텔업, 기타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된 2.159개 사업체로 설정하였다. 목표 표본은 400개 사업체이고, 조사기간은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 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에 대한 응답은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대표이사나 기업의 회계(재정) 담당자가 직접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3-7〉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모 집 단	 관광진흥법상 호텔업(관광호텔업, 기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등록된 2,159개 사업체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은 기타호텔업으로 분류
표본 배분	• 업종별*소재지별 비례배분
유효 표본	유효표본: 400개 사업체 - 2020년 기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호텔 45개 업체 포함 포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문조사 병행
조사 기간	• 2020.7.27. ~ 2020.8.16.

표본배분은 분석단위 확보를 위해 업종별로 30개씩 우선 할당한 후, 업종과 소재 지별 비례배분을 실시하였다. 다만, 호텔업의 세부업종 중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 텔업, 소형호텔업은 모집단 수가 작아 기타호텔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3-8〉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

		모집	단 현황		표본배분 현황				
구분	호텔업			うびラニ		호텔업		= 아크드	
16	관광 호텔업	기타 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 관광 기타 호텔업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서울	332	31	96	1	51	4	12	_	
경기/인천	205	27	85	18	24	7	15	2	
전라(광주/전라)	85	22	208	17	13	6	36	5	
경상(대구/부산/ 울산/경상)	211	34	126	35	35	8	22	6	
충청·강원 (대전/충청/강원)	94	24	15	75	23	8	3	19	
제주	127	67	165	59	22	19	29	13	
전체	1,054	205	695	205	168	52	117	45	

조사 항목은 조세지원제도 인식, 조세지원제도 이용 현황, 세제 지원 체감 효과, 코로나19 피해 현황 및 정부 대응책, 관광산업 세제지원 과제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3-9) 조사 항목

구분	내용				
	조세부담정도 / 조세부담이 큰 세목				
조세지원제도 인식	조세지원제도 활용정도 / 조세지원제도 미활용 이유				
소세시면세도 한역	기업경영에 충분한 조세지원이 되고 있는 정도				
	타 산업 대비 조세지원의 적절 정도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적용 여부 / 미활용 이유 / 개편방안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도움 정도				
조세지원제도 이용 현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 여부 / 필요 이유				
	재산세 감면 적용 경험 여부 / 시기 / 도움 정도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이용 현황/미활용 이유				
	조세지원제도 혜택 체감 정도				
세제 지원 체감 효과	조세지원제도 효과 정도				
	조세지원제도 만족도				
771140 917117171	경영상 피해현황 / 필요 지원책				
코로나19 피해현황 및 정부 대응책	코로나19 확산 관련 관광기업 지원사업 인지/활용 여부				
X 01 1101	실효성이 높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관광기업 지원사업				
 관광산업 세제지원	가장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확대 분야				
과제에 대한 의견	조세지원제도 개선사항				

주: 상세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참고

2. 조사 결과

2.1. 응답기업 일반현황

응답기업은 업종별로 관광호텔업이(44.8%), 호스텔업(29.3%), 기타호텔업(13.0%), 휴양콘도미니엄(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제주(21.3%), 대구/부산/ 울산/경상(18.3%), 서울(16.8%), 경기/인천(15.5%), 광주/전라(15.0), 대전/충정/ 강원(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응답기업 일반현황

구분	내용	사례수	비율
	관광호텔업	(179)	44.8
업종		13.0	
급증	호스텔업	(117)	29.3
	휴양콘도미니엄업	(52)	13.0
	서울	호텔업 (179) 4 호텔업 (52) 텔업 (117) 2 미니엄업 (52) 울 (67) (인천 (62) (전라 (60) (울산/경상 (73) 청/강원 (53) 주 (85) 2	16.8
	경기/인천		15.5
A TUTI	광주/전라	(60)	15.0
소재지	대구/부산/울산/경상	(73)	18.3
	대전/충청/강원	(53)	13.3
	제주	텔업 (52) 13.0 텔업 (117) 29.3 미니엄업 (52) 13.0 를 (67) 16.8 인천 (62) 15.5 전라 (60) 15.0 울산/경상 (73) 18.3 형/강원 (53) 13.3 주 (85) 21.3	21.3
	■ 전체■	(400)	100.0

주: 기타호텔업은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임.

2.2.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체감 효과

가. 조세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인식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기업경영에서 조세부담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타 산업 대비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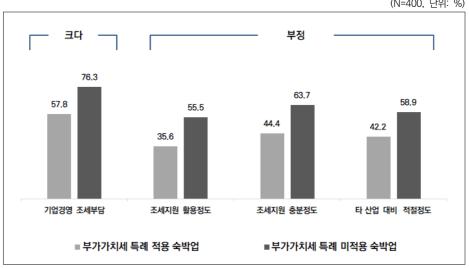
(단위: 업체, %, 점)

항목	구분	사례수 (400)	Bot2	Top2	평균 (5점 만점)
기업경영	특례 적용	45	15.6	57.8	3.6
조세부담	특례 미적용	355	5.9	76.3	4.0
조세지원	특례 적용	45	35.6	22.2	2.8
활용정도	특례 미적용	355	55.5	12.7	2.4
조세지원	특례 적용	45	44.4	4.4	2.5
충분정도	특례 미적용	355	63.7	4.8	2.2
 타 산업 대비	특례 적용	45	42.2	6.7	2.6
적절정도	특례 미적용	355	58.9	5.9	2.3

주1: 특례 적용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이고, 특례 미적용은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임(이하 동일함)

주2: Top2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치이고, Bot2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산치임.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과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57.8%)이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76.3%)보 다 조세부담은 더 적게 인식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이 조세지원 활용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보다 약 10%p 높 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답변은 20%p 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부가 가치세 특례 적용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N=400, 단위: %)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기업 경영의 조세 부담이 높은 응답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은 57.8%이고.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 업은 76.3%로 조세부담을 크게 느끼며, 부가가치세 특례 비적용 숙박업이 월등히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의 활용 정도에 대한 답변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은 35.6%이 고.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은 55.5%로 조세지원의 활용정도에 대해서 부 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업체는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업체보다 활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업체는 44.4%이고,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은 63.7%로 조세지원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업체보다 지원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산업 대비 적절에 대한 정도에 대한 답변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은 42.2%이고,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업체는 58.9%로 타 산업 대비 조세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업체는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보다 더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업경영에서의 조세부담 정도

기업경영에서 조세부담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80%이상으로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보다 약 20%p 높게 나타났다.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보다 '매우 그렇다'가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다'에서는 10%p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부담 정도

(단위: 업체,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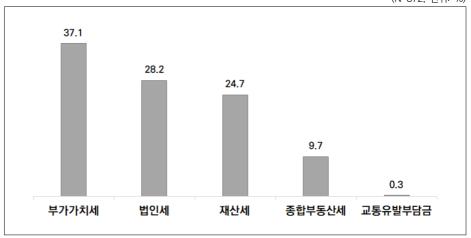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400)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Top2	평균
어레	특례 적용	(45)	6.7	8.9	26.7	35.6	22.2	57.8	3.6
구분 업체 : 업종 :	특례 미적용	(355)	1.1	4.8	17.7	44.2	32.1	76.3	4.0
	관광호텔업	(179)	2.2	6.7	22.9	40.2	27.9	68.2	3.8
어조	기타호텔업	(52)	-	3.8	11.5	48.1	36.5	84.6	4.2
업종 	호스텔업	(117)	0.9	2.6	12.0	46.2	38.5	84.7	4.2
	휴양콘도미니엄업	(52)	3.8	7.7	26.9	42.3	19.2	61.5	3.7
	서울	(67)	3.0	9.0	26.9	31.3	29.9	61.2	3.8
	경기/인천	(62)	1.6	4.8	12.9	56.5	24.2	80.6	4.0
A TUT1	광주/전라	(60)	-	3.3	8.3	58.3	30.0	88.3	4.2
소세시	대구/부산/울산/경상	(73)	1.4	5.5	27.4	32.9	32.9	65.8	3.9
	대전/충청/강원	(53)	_	7.5	24.5	47.2	20.8	67.9	3.8
	제주	(85)	3.5	2.4	12.9	38.8	42.4	81.2	4.1

주: Top2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치임

이러한 결과는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대상이고, 휴양콘도 미니엄의 경우 관광단지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어 나타나는 상대적 인식 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경영에서 조세 부담이 큰 항목은 부가가치세 (3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28.2%), 재산세(24.7%), 종합부동산세(9.7%), 교통유발부담금(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조세 부담이 큰 항목

(N=372, 단위: %)



〈표 3-13〉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 부담이 큰 항목(복수응답)

(단위: 업체, %)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372)	부가 가치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교통유발 부담금
어테	특례 적용	(38)	31.6	36.8	26.3	2.6	2.6
업체	특례 미적용	(334)	37.7	27.2	24.6	10.5	_
	관광호텔업	(163)	33.7	31.3	25.2	9.2	0.6
어조	기타호텔업	(50)	44.0	22.0	24.0	10.0	_
업종	호스텔업	(113)	51.3	16.8	21.2	10.6	_
	휴양콘도미니엄업	(46)	6.5	52.2	32.6	8.7	_
	서울	(59)	32.2	35.6	23.7	8.5	_
	경기/인천	(58)	31.0	17.2	24.1	27.6	_
A TUT I	광주/전라	(58)	32.8	29.3	36.2	1.7	_
소재지	대구/부산/울산/경상	(68)	44.1	26.5	22.1	7.4	_
	대전/충청/강원	(49)	34.7	28.6	20.4	16.3	_
	제주	(80)	43.8	31.3	22.5	1.3	1.3

업종별 조세부담이 가장 큰 항목은 기타호텔업(44.0%)과 호스텔업(51.3%)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법인세(52.2%)가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대구/부산/울산/경상(44.1%)과 제주(43.8%)에서 높게 나타났고, 법인세는 서울(35.6%)과 제주(31.3%)에서 크게 나타났다. 재산세는 광주/전라(36.2%)에서 높게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는 경기/인천(27.6%)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도

기업의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에 비해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는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이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지원 제도 활용

(단위: 업체, %, 점)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400)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2	평균
어테	특례 적용	(45)	8.9	26.7	42.2	22.2	_	35.6	2.8
ᆸᄾᅦ	특례 미적용	(400)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Bota (45) 8.9 26.7 42.2 22.2 - 35.6 (355) 22.3 33.2 31.8 12.4 0.3 55.5 (179) 15.6 28.5 39.7 16.2 - 44.7 (52) 26.9 42.3 23.1 5.8 1.9 69.2 (117) 29.1 31.6 27.4 12.0 - 60.7 전 (52) 13.5 38.5 32.7 15.4 - 51.5 (67) 11.9 32.8 44.8 10.4 - 44.8 (62) 11.3 32.3 48.4 8.1 - 43.5 (60) 10.0 40.0 28.3 21.7 - 50.0 전 (73) 32.9 31.5 21.9 13.7 - 64.4 (85) 35.3 23.5 27.1 14.1 - 58.8	55.5	2.4					
	관광호텔업	(179)	15.6	28.5	39.7	16.2	_	44.1	2.6
구분 업체 업종 	기타호텔업	(52)	26.9	42.3	23.1	5.8	1.9	69.2	2.1
	호스텔업	(117)	29.1	31.6	27.4	12.0	-	60.7	2.2
	휴양콘도미니엄업	(52)	13.5	38.5	32.7	15.4	_	51.9	2.5
	서울	(67)	11.9	32.8	44.8	10.4	-	44.8	2.5
업체 업종	경기/인천	(62)	11.3	32.3	48.4	8.1	-	43.5	2.5
A TUT1	광주/전라	(60)	10.0	40.0	28.3	21.7	-	50.0	2.6
소세시	대구/부산/울산/경상	(73)	32.9	31.5	21.9	13.7	-	64.4	2.2
	대전/충청/강원	(53)	15.1	39.6	30.2	13.2	1.9	54.7	2.5
	제주	(85)	35.3	23.5	27.1	14.1	-	58.8	2.2
	전체	(400)	20.8	32.5	33.0	13.5	0.3	53.3	2.4

주: Bot2는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의 합산치임.

조세지원 제도의 미활용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세지 원 제도의 내용 및 적용방법을 모름'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업계를 대상으로 조 세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제도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 하다.

〈표 3-15〉 업종 및 소재지별 조세지원 제도 미활용 이유

(단위: 업체, %)

					<u> </u>	1. [], 707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213)	조세지원제도 내용 및 방법을 모름	적용대상에서 제외(소재지/ 업종/매출액 등)	투입되는 행정노력 대비 실익이 없음	세금 연체
업체	특례 적용	(16)	62.5	31.3	6.3	_
답세	특례 미적용	(197)	59.4	27.4	12.7	0.5
	관광호텔업	(79)	60.8	27.8	10.1	1.3
ωz	기타호텔업	(36)	58.3	22.2	19.4	-
업종	호스텔업	(71)	63.4	28.2	8.5	-
	휴양콘도미니엄업	(27)	48.1	33.3	18.5	-
	서울	(30)	63.3	33.3	3.3	-
	경기/인천	(27)	55.6	25.9	18.5	-
A TUT1	광주/전라	(30)	30.0	50.0	20.0	-
소재지	대구/부산/울산/경상	(47)	83.0	10.6	6.4	-
	대전/충청/강원	(29)	65.5	17.2	13.8	3.4
	제주	(50)	52.0	34.0	14.0	-
	전체	(213)	59.6	27.7	12.2	0.5

라. 조세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는 정도

업종별로 기업에 충분한 조세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관광호텔업 (54.2%)과 휴양콘도미니엄업(55.8%) 보다는 기타호텔업(73.1%)과 호스텔업(70.1%) 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업종 및 소재지별 충분한 조세지원 정도

(단위: 업체, %, 점)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400)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Bot2	평균 (5점)
업체	특례 적용	(45)	(45)	6.7	37.8	51.1	44.4	2.5
	특례 미적용	(355)	(355)	22.5	41.1	31.5	63.7	2.2
	관광호텔업	(179)	16.2	38.0	40.2	5.6	54.2	2.4
OLX	기타호텔업	(52)	23.1	50.0	25.0	1.9	73.1	2.1
업종	호스텔업	(117)	28.2	41.9	28.2	1.7	70.1	2.0
	휴양콘도미니엄업	(52)	17.3	38.5	32.7	11.5	55.8	2.4
	서울	(67)	17.9	37.3	40.3	4.5	55.2	2.3
	경기/인천	(62)	19.4	32.3	43.5	4.8	51.6	2.3
A TUT1	광주/전라	(60)	13.3	51.7	25.0	10.0	65.0	2.3
소재지	대구/부산/울산/경상	(73)	27.4	38.4	30.1	4.1	65.8	2.1
	대전/충청/강원	(53)	18.9	35.8	41.5	3.8	54.7	2.3
	제주	(85)	24.7	47.1	25.9	2.4	71.8	2.1
	전체	(400)	20.8	40.8	33.8	4.8	61.5	2.2

주: Bot2는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의 합산치임

마. 타 산업 대비 조세지원의 적절성

업종별 타 산업 대비 조세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관광호텔업(48.6%)과 휴양콘도미니엄업(55.8%)보다 기타호텔업(73.1%)과 호스텔업(63.2%)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업종 및 소재지별 타 산업 대비 조세지원의 적절성

(단위: 업체, %, 점)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400)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2	평균 (5점)
업체	특례 적용	(45)	6.7	35.6	51.1	6.7	-	42.2	2.6
<u>⊔</u> ^	특례 미적용	(355)	19.4	39.4	35.2	5.6	0.3	58.9	2.3
	관광호텔업	(179)	14.5	34.1	43.0	7.8	0.6	48.6	2.5
어조	기타호텔업	(52)	19.2	53.8	25.0	1.9	_	73.1	2.1
업종	호스텔업	(117)	22.2	41.0	32.5	4.3	-	63.2	2.2
	휴양콘도미니엄업	(52)	19.2	36.5	38.5	5.8	_	55.8	2.3
	서울	(67)	9.0	41.8	41.8	7.5	-	50.7	2.5
	경기/인천	(62)	16.1	33.9	46.8	3.2	-	50.0	2.4
A TUT1	광주/전라	(60)	10.0	43.3	36.7	10.0	-	53.3	2.5
소재지	대구/부산/울산/경상	(73)	27.4	37.0	30.1	5.5	-	64.4	2.1
	대전/충청/강원	(53)	18.9	37.7	35.8	7.5	-	56.6	2.3
	제주	(85)	23.5	40.0	32.9	2.4	1.2	63.5	2.2
	전체	(400)	18.0	39.0	37.0	5.8	0.3	57.0	2.3

주: Bot2는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의 합산치임

바. 세제지원에 대한 체감과 효과 기대

세제지원에 대한 체감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세제지원에 대한 효과 기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지원 체감 도는 특례 미적용 숙박업이 특례 적용 숙박업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세제지 원 효과의 기대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세제지원에 대한 체감도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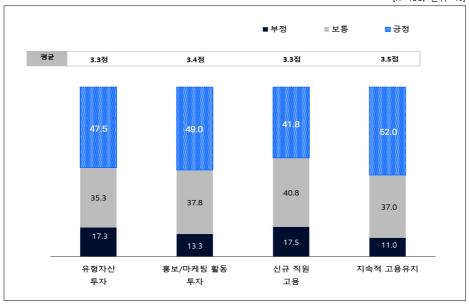
(단위: 업체, %, 점)

	(근표: 급세, 70, 급/								
항목	세부 항목	업체구분	사례수 (400)	Bot2	Top2	평균 (5점 만점)			
	조세부담	특례 적용	45	42.2	-	2.5			
	감소	특례 미적용	355	62.0	5.6	2.2			
÷1171c	T 111=11CH	특례 적용	45	40.0	2.2	2.6			
체감도	조세혜택	특례 미적용	355	60.0	6.8	2.2			
	0101571	특례 적용	45	55.6	4.4	2.4			
	이익증가	특례 미적용	355	67.6	5.6	2.1			
	유형자산 투자	특례 적용	45	13.3	40.0	3.3			
		특례 미적용	355	17.7	48.5	3.3			
	홍보./마케팅	특례 적용	45	6.7	48.9	3.5			
효과	투자	특례 미적용	355	14.1	49.0	3.4			
기대	신규	특례 적용	45	4.4	48.9	3.5			
	직원고용	특례 미적용	355	19.2	40.8	3.2			
	コムコロ	특례 적용	45	4.4	48.9	3.5			
	지속고용	특례 미적용	355	11.8	52.4	3.5			
만족	만족	특례 적용	45	35.6	6.7	2.7			
건축	건축	특례 미적용	355	41.4	11.0	2.6			

주: Top2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치이고, Bot2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산치임

[그림 3-4] 기업의 조세지원 효과 인식

[n=400, 단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세제지원의 체감에서는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이 관광호텔 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제지원 의 효과기대에서는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이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세제지원 만족의 경우에는 기타호텔업(46.2%) 과 호스텔업(41.9%)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세 혜택이 비교적 적 은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에서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긍정적인 사업투 자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심리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제지원이 이 루어진다면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9〉 세제지원에 대한 업종별 체감도 및 효과

(단위: %)

항목	네ㅂ하모	그ㅂ		업종					
영국	세부항목	구분	관광호텔	기타호텔	호스텔업	휴양콘도	- 비고		
	조세부담 감소	Bot2	54.2	67.3	65.0	59.6	부정 순		
체감	조세혜택	Bot2	52.0	61.5	68.4	50.0	부정 순		
	이익증가	Bot2	61.5	71.2	71.8	65.4	부정 순		
	유형자산 투자	Top2	43.6	53.8	55.6	36.5	긍정 순		
효과	홍보/마케팅 투자	Top2	50.3	48.1	49.6	44.2	긍정 순		
기대	신규 직원고용	Top2	38.5	48.1	45.3	38.5	긍정 순		
	지속고용	Top2	51.4	59.6	53.8	42.3	긍정 순		
만족	만족	Bot2	40.8	46.2	41.9	32.7	부정 순		

주: Bot2는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의 합산치이며, Top2는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합산치임.

2.3. 관광숙박업 대상 조세지원 제도 이용 현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적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숙 박업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이 100%이고.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 이 9.9%로 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이 13.5%, 기타호텔업이 9.6%, 호스텔업이 3.4% 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서울(37.3%)과 경기/인천(21.0%)인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3

〈표 3-20〉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경험

(단위: 업체, %)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400)	있다	없다
업체	특례 적용	(45)	100	-
급세	특례 미적용	(355)	9.9	90.1
관광호텔업		(179)	35.8	64.2
업종	기타호텔업	(52)	9.6	90.4
집중	호스텔업	(117)	3.4	96.6
	휴양콘도미니엄업	(52)	13.5	86.5
	서울	(67)	37.3	62.7
	경기/인천	(62)	21.0	79.0
소재지	광주/전라	(60)	13.3	86.7
소세시	대구/부산/울산/경상	(73)	17.8	82.2
	대전/충청/강원	(53)	18.9	81.1
	제주	(85)	12.9	87.1

1)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한 도움 여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53.3%)과 부가가 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54.3%)이 모두 5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고 인식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호스텔업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1〉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에 대한 도움 여부

(단위: 업체, %, 점)

상세구분	사례수 (80)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Top2	평균
특례 적용	(45)	2.2	6.7	37.8	42.2	11.1	53.3	3.5
특례 미적용	(35)	5.7	11.4	28.6	45.7	8.6	54.3	3.4
관광호텔업	(64)	4.7	6.3	35.9	43.8	9.4	53.1	3.5
기타호텔업	(5)	1	20.0	40.0	40.0	-	40.0	3.2
호스텔업	(4)	-	25.0	-	75.0	-	75.0	3.5
휴양콘도미니엄업	(7)	-	14.3	28.6	28.6	28.6	57.1	3.7
서울	(25)	4.0	8.0	36.0	40.0	12.0	52.0	3.5
경기/인천	(13)	-	7.7	30.8	46.2	15.4	61.5	3.7
광주/전라	(8)	-	12.5	12.5	75.0	-	75.0	3.6
대구/부산/울산/경상	(13)	7.7	-	46.2	46.2	-	46.2	3.3
대전/충청/강원	(10)	_	_	50.0	20.0	30.0	50.0	3.8
제주	(11)	9.1	27.3	18.2	45.5	_	45.5	3.0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서울 경기/인천 광주/전라 대구/부산/울산/경상 대전/충청/강원	정세구분 (80) 특례 적용 (45) 특례 미적용 (35) 관광호텔업 (64) 기타호텔업 (5) 호스텔업 (4) 휴양콘도미니엄업 (7) 서울 (25) 경기/인천 (13) 광주/전라 (8) 내구/부산/울산/경상 (13) 대전/충청/강원 (10)	정세구분 (80) 아니다 특례 적용 (45) 2.2 특례 미적용 (35) 5.7 관광호텔업 (64) 4.7 기타호텔업 (5) - 호스텔업 (4) - 휴양콘도미니엄업 (7) - 서울 (25) 4.0 경기/인천 (13) - 광주/전라 (8) - 내구/부산/울산/경상 (13) 7.7 대전/충청/강원 (10) -	정세구분 (80) 아니다 아니다 특례 적용 (45) 2.2 6.7 특례 미적용 (35) 5.7 11.4 관광호텔업 (64) 4.7 6.3 기타호텔업 (5) - 20.0 호스텔업 (4) - 25.0 휴양콘도미니엄업 (7) - 14.3 서울 (25) 4.0 8.0 경기/인천 (13) - 7.7 광주/전라 (8) - 12.5 내구/부산/울산/경상 (13) 7.7 - 대전/충청/강원 (10)	정제구분 (80) 아니다 아니나 이다 특례 적용 (45) 2.2 6.7 37.8 특례 미적용 (35) 5.7 11.4 28.6 관광호텔업 (64) 4.7 6.3 35.9 기타호텔업 (5) - 20.0 40.0 호스텔업 (4) - 25.0 - 휴양콘도미니엄업 (7) - 14.3 28.6 서울 (25) 4.0 8.0 36.0 경기/인천 (13) - 7.7 30.8 광주/전라 (8) - 12.5 12.5 대구/부산/울산/경상 (13) 7.7 - 46.2 대전/충청/강원 (10) - 50.0	등례 적용 (45) 2.2 6.7 37.8 42.2 특례 미적용 (35) 5.7 11.4 28.6 45.7 관광호텔업 (64) 4.7 6.3 35.9 43.8 기타호텔업 (5) - 20.0 40.0 40.0 호스텔업 (4) - 25.0 - 75.0 휴양콘도미니엄업 (7) - 14.3 28.6 28.6 서울 (25) 4.0 8.0 36.0 40.0 경기/인천 (13) - 7.7 30.8 46.2 광주/전라 (8) - 12.5 12.5 75.0 대구/부산/울산/경상 (13) 7.7 - 46.2 46.2 대전/충청/강원 (10) - 50.0 20.0	등례 적용 (45) 2.2 6.7 37.8 42.2 11.1 특례 미적용 (35) 5.7 11.4 28.6 45.7 8.6 관광호텔업 (64) 4.7 6.3 35.9 43.8 9.4 기타호텔업 (5) - 20.0 40.0 40.0 - 호스텔업 (4) - 25.0 - 75.0 - 휴양콘도미니엄업 (7) - 14.3 28.6 28.6 28.6 48.7 성울 (25) 4.0 8.0 36.0 40.0 12.0 경기/인천 (13) - 7.7 30.8 46.2 15.4 광주/전라 (8) - 12.5 12.5 75.0 - 대구/부산/울산/경상 (13) 7.7 - 46.2 46.2 - 대전/충청/강원 (10) - 50.0 20.0 30.0	등례 적용 (45) 2.2 6.7 37.8 42.2 11.1 53.3 특례 미적용 (35) 5.7 11.4 28.6 45.7 8.6 54.3 관광호텔업 (64) 4.7 6.3 35.9 43.8 9.4 53.1 기타호텔업 (5) - 20.0 40.0 40.0 - 40.0 호스텔업 (4) - 25.0 - 75.0 - 75.0 후양콘도미니엄업 (7) - 14.3 28.6 28.6 28.6 57.1 서울 (25) 4.0 8.0 36.0 40.0 12.0 52.0 경기/인천 (13) - 7.7 30.8 46.2 15.4 61.5 광주/전라 (8) - 12.5 12.5 75.0 - 75.0 대구/부산/울산/경상 (13) 7.7 - 46.2 46.2 - 46.2 대전/충청/강원 (10) - 50.0 20.0 30.0 50.0

주: Top2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치임

2)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에 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 지 잘 모름이 약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22〉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업체, %)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320)	잘 모름	절차 복잡	지원대상 아님	지원요건 미충족	지원내용 미흡
업체	특례 적용	(0)	_	-	-	_	
급제	특례 미적용	(320)	50.3	15.6	12.2	11.6	7.8
	관광호텔업	(115)	46.1	20.0	7.8	11.3	9.6
업종	기타호텔업	(47)	55.3	14.9	10.6	6.4	10.6
급증	호스텔업	(113)	54.9	13.3	9.7	15.0	6.2
	휴양콘도미니엄업	(45)	44.4	11.1	31.1	8.9	4.4
	서울	(42)	40.5	19.0	9.5	11.9	9.5
	경기/인천	(49)	49.0	22.4	8.2	18.4	2.0
A TUT1	광주/전라	(52)	38.5	13.5	5.8	25.0	13.5
소재지	대구/부산/울산/경상	(60)	61.7	11.7	13.3	3.3	10.0
	대전/충청/강원	(43)	62.8	14.0	9.3	2.3	7.0
	제주	(74)	48.6	14.9	21.6	9.5	5.4

3)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한 개편 방안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과 지원 조건의 개 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한 지원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개편 방안에서는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 분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23〉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대한 개편사항

(단위: 업체, %)

							2 11: [271], 707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지원방식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금액	개편의견
十正	경세구군	(400)	개편	개편	확대	확대	없음
어테	특례 적용	(45)	48.9	48.9	28.9	40.0	2.2
업체	특례 미적용	(355)	40.0	37.2	38.3	30.4	1.7
	관광호텔업	(179)	44.7	40.8	31.8	27.4	1.7
업종	기타호텔업	(52)	42.3	44.2	44.2	36.5	_
입공	호스텔업	(117)	35.0	33.3	39.3	40.2	1.7
	휴양콘도미니엄업	(52)	40.4	36.5	44.2	21.2	3.8
	서울	(67)	53.7	38.8	38.8	19.4	1.5
	경기/인천	(62)	40.3	41.9	30.6	41.9	3.2
A TUT1	광주/전라	(60)	26.7	28.3	26.7	31.7	_
소재지	대구/부산/울산/경상	(73)	43.8	43.8	37.0	31.5	2.7
	대전/충청/강원	(53)	43.4	37.7	24.5	18.9	-
	제주	(85)	37.6	38.8	56.5	41.2	2.4

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이 필요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특례 숙박업(77.8%)과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 (69.3%) 모두 높게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이미 부가가치세 특례를 받고 있는 부가 가치세 특례 숙박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

(단위: 업체, %)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업체	특례 적용	(45)	77.8	22.2
급제	특례 미적용	(355)	69.3	30.7
	관광호텔업	(179)	74.3	25.7
업종	기타호텔업	(52)	78.8	21.2
급증	호스텔업	(117)	69.2	30.8
	휴양콘도미니엄업	(52)	50.0	50.0
	서울	(67)	80.6	19.4
	경기/인천	(62)	83.9	16.1
소재지	광주/전라	(60)	68.3	31.7
소세시	대구/부산/울산/경상	(73)	76.7	23.3
	대전/충청/강원	(53)	69.8	30.2
	제주	(85)	48.2	51.8

5)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 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행 세율이 과도하여 인하가 필요,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필요한 이유

(단위: 업체, %)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320)	운영비 절감	현행 세율 과도	투자 증가 및 고용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
업체	특례 적용	(0)	-	-	_	-
급세	특례 미적용	(320)	52.0	24.0	23.6	0.4
	관광호텔업	(115)	57.9	18.8	22.6	0.8
어조	기타호텔업	(47)	53.7	34.1	12.2	_
업종	호스텔업	(113)	49.4	27.2	23.5	_
	휴양콘도미니엄업	(45)	42.3	23.1	34.6	_
	서울	(42)	53.7	20.4	25.9	
	경기/인천	(49)	42.3	30.8	26.9	
A TUT1	광주/전라	(52)	34.1	36.6	26.8	
소재지	대구/부산/울산/경상	(60)	62.5	21.4	16.1	
	대전/충청/강원	(43)	62.2	13.5	24.3	
	제주	(74)	65.9	19.5	14.6	

나, 재산세 감면 제도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총 47개 업체로, 특례 적용 숙박업이 11.1%, 특례 미적용 숙박업에서 3.9%로 나타났다.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경영여건의 도움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 중소기업 대상 조세감면 제도 이용

중소기업 대상의 조세감면 제도 적용을 받은 경험 역시 전반적으로 적용 받은 적 이 없다가 약 88%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도움 여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서 도움이 되었던 분야는 경영안정(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접대비 손금산업 특례 등)과 고용/인력(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호텔업(71.4%)과 관광호텔업(54.5%)은 경영안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고용/인력(50.0%)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6〉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도움이 되었던 분야

(단위: 업체, %)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47)	경영안정	고용/인력	창업/벤처	설비투자	가업승계
업체	특례 적용	(5)	60.0	40.0	_	_	_
급세	특례 미적용	(42)	50.0	21.4	16.7	9.5	2.4
	관광호텔업	(22)	54.5	31.8	4.5	9.1	_
어조	기타호텔업	(7)	71.4	-	14.3	14.3	_
업종	호스텔업	(12)	41.7	8.3	33.3	8.3	8.3
	휴양콘도미니엄업	(6)	33.3	50.0	16.7	-	_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는 업체, 업종, 소재지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약감면(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5~30% 감면)'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7〉이용 경험이 있는 조세지원 제도

(단위: 업체, %)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47)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구/인력세 액공제
업체	특례 적용	(5)	80.0	_	20.0	20.0	_
	특례 미적용	(42)	66.7	31.0	19.0	19.0	7.1
업종	관광호텔업	(22)	63.6	13.6	27.3	27.3	4.5
	기타호텔업	(7)	100.0	42.9	_	_	14.3
	호스텔업	(12)	66.7	41.7	16.7	8.3	8.3
	휴양콘도미니엄업	(6)	50.0	33.3	16.7	33.3	_

2.4. 코로나19 경영 피해 현황 및 정책 대응 관련 의견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 원인을 살펴본 결과, 운영자금 부족/자금 압박(83.3%)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75.3%)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 로나19 확산으로 현재 관광숙박업은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운영자금 부족 및 자금 압박 상태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긍정 부정 사례수 평균 구분 그렇다 (업체) (5점 만점)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관광객 감소로 매출액 감소 400 75.3 2.3 4.6 400 4.4 운영자금 부족, 자금 압박 83.3 3.3 임대료 부담 400 33.0 3.3 46.3 의심 직원 휴무로 영업활동 차질 400 30.0 54.3 2.6

31.3

48.3

2.7

〈표 3-28〉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귀사의 경영상 피해 현황

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지원책

400

인력 유출(업무 기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상 향지원 확대(86.8%).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86.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81.0%)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회생. 구조조정 등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76.3%)가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긍정	부정	평균 (5점 만점)	
구분	(업체)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400	86.2	2.5	4.4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확대	400	86.8	3.5	4.4	
금융기관 명책방안 및 대출유도	400	70.0	9.0	4.0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400	81.0	3.5	4.2	
금융지원 강화	400	76.3	4.8	4.1	

〈표 3-29〉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숙박업 경영에 필요한 지원책

2.5. 관광산업 조세지원 확대에 가장 필요한 분야

관광산업 조세지원 확대에 가장 필요한 분야는 전반적으로 경영안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영안정은 기타호텔업(71.2%)과 호스텔업(69.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용지원은 휴양콘도미니엄업(30.8%)과 관광호텔업(2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자 촉진은 기타호텔업(13.5%)과 호스텔업(1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3-30〉 관광산업 조세지원 확대에 가장 필요한 분야

(단위: 업체, %)

구분	상세구분	사례수 (400)	경영안정	고용지원	투자 촉 진	창업/벤처	연구 및 인력개발
업체	특례 적용	(45)	75.6	20.0	2.2	_	2.2
	특례 미적용	(355)	66.8	19.7	8.5	4.8	0.3
업종	관광호텔업	(179)	68.7	23.5	5.6	1.7	0.6
	기타호텔업	(52)	71.2	7.7	13.5	7.7	_
	호스텔업	(117)	69.2	14.5	10.3	6.0	_
	휴양콘도미니엄업	(52)	57.7	30.8	3.8	5.8	1.9
소재지	서울	(67)	76.1	20.9	1.5	_	1.5
	경기/인천	(62)	66.1	21.0	12.9	_	_
	광주/전라	(60)	53.3	16.7	16.7	13.3	_
	대구/부산/울산/경상	(73)	71.2	19.2	5.5	4.1	-
	대전/충청/강원	(53)	66.0	26.4	3.8	1.9	1.9
	제주	(85)	70.6	16.5	7.1	5.9	-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현재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을 받 고 있는 숙박업과 미적용 숙박업 간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표 3-31〉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에 따른 인식 차이

(단위: %)

구분		상세구분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	비고
조세지원		조세부담 정도	57.8	76.8	크다
		조세지원 활용정도	35.6	55.5	부정
제도 인식		조세지원 충분정도	지용 숙박업 미적용 숙박업 미급 57.8 76.8 크다 35.6 55.5 부장 44.4 63.7 부장 42.2 58.9 부장 42.2 62.2 부장 40.0 60.0 부장 55.6 67.6 부장 두자 40.0 48.5 공장 부두자 48.9 49.0 공장 48.9 40.8 공장 48.9 52.4 공장 부터 35.6 41.4 부장 1점용 경험 100 9.9 있다 3의 도움 여부 53.3 54.3 공장 4박용역 작용 필요성 77.8 69.3 있다 점용 경험 88.9 96.1 없다 도움 조세감면 은 경험 88.9 88.2 없다 지원 제도 40.0 59.5 공장 40	부정	
		타 산업대비 적절정도		58.9	부정
		조세부담 감소	42.2	62.2	부정
	체감	조세혜택	40.0	60.0	부정
조세지위		이익 증가	55.6	67.6	부정
조세지원 제도		유형자산 투자	40.0	48.5	긍정
제도 체감효과	동기	홍보/마케팅 투자	48.9	49.0	긍정
	효과	신규 고용직원	48.9	40.8	긍정
		지속 고용	48.9	52.4	긍정
	만족	만족 여부	35.6	41.4	부정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경험	100	9.9	있다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의 도움 여부	53.3	54.3	긍정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50.3	잘모름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성	77.8	69.3	있다
조세지원		재산세 감면 적용 경험	88.9	96.1	없다
제도 이용현황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경영여건의 도움	40.0	85.7	긍정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 대상 조세감면 제도 적용 받은 경험	88.9	88.2	없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도움 인식	40.0	59.5	긍정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만족 여부	42.2	62.0	부정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숙박업보다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이 조세지원 제도의 전반적 인식에 더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부가가치세 특례 미적용 숙박업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에 대한 기대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32〉 업종별 인식 차이

(단위: %)

구분		상세구분	관광 호텔업	기타 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비고
조세지원		조세부담 정도	68.2	84.6	84.7	61.5	크다
		조세지원 활용정도	44.1	69.2	60.7	51.9	부정
제도 인식		조세지원 충분정도	54.2	73.1	변합 내내함합 4.6 84.7 61.5 크다 9.2 60.7 51.9 부정 3.1 70.1 55.8 부정 3.1 63.2 55.8 부정 7.3 65.0 59.6 부정 1.5 68.4 50.0 부정 1.2 71.8 65.4 부정 3.8 55.6 36.5 긍정 8.1 49.6 44.2 긍정 8.1 45.3 38.5 긍정 9.6 53.8 42.3 긍정 6.2 41.9 32.7 부정 9.6 3.4 13.5 있다 0.0 75.0 57.1 긍정 6.4 15.0 8.9 잘모름 6.5 40.2 21.2 있다 100 98.3 94.2 없다 - 50.0 100 긍정 6.5 89.7 88.5 없다		
		타 산업대비 적절정도	48.6	73.1	63.2	日 回口留留 61.5 51.9 55.8 55.8 59.6 50.0 65.4 36.5 44.2 38.5 42.3 32.7 13.5 57.1 8.9 21.2 94.2 100 88.5 66.7	부정
		조세부담 감소	54.2	67.3	65.0	59.6	부정
	체감	조세혜택	52.0	61.5	68.4	50.0	부정
		이익 증가	61.5	71.2	71.8	65.4	부정
조세지원 제도		유형자산 투자	43.6	53.8	55.6	36.5	긍정
제도 체감효과		홍보/마케팅 투자	50.3	48.1	49.6	44.2	긍정
	장객	신규 고용직원	38.5	48.1	45.3	38.5	긍정
		지속 고용	51.4	59.6	53.8	42.3	긍정
	만족	만족 여부	40.8	46.2	41.9	32.7	부정
	부가 가치세 특례 제도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경험	35.8	9.6	3.4	13.5	있다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의 도움 여부	53.1	40.0	75.0	57.1	긍정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1.3	6.4	15.0	8.9	잘모름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성	27.4	36.5	40.2	21.2	있다
조세지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적용 경험	92.2	100	98.3	94.2	없다
제도 이용현황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경영여건의 도움	71.4	_	50.0	100	긍정
	중소 기업 조세 지원 제도	중소기업 대상 조세감면 제도 적용 받은 경험	87.7	86.5	89.7	88.5	없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도움 인식	54.5	57.1	58.3	66.7	긍정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만족 여부	54.2	67.3	65.0	59.6	부정

관광숙박업 세제 지원에 대한 업종별 차이도 나타났다.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 니엄업이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고,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이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세제 혜택을 받는 업종인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세 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비해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다르 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타호텔업과 호스텔업이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보다 조세지원 제도의 전반적 인식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체감도 더 부정 적이며, 만족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업은 부가가치세 특례, 취득세 감면 등 상대적으로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기타호텔과 호스텔업이 전반적으로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조세 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감면 제도와 중소기업 대상 조세 감면제도는 공통적으로 이용 경험이 낮 게 나타났다. 특히 조세지원 제도의 이용현황 면에서는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대상 에서 배제된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 지원의 형평성 측면 에서 업종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재산세 감면 제도나 중소기업 대상 조세 감면제도 이용 경험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 규모의 관광숙 박업에 적용 가능한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제도 홍보, 중소기업 맞춤형 관 광숙박업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국내외 세제 지원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타 산업 분야 세제 지원 사례분석

1.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1.1. 개요

2016년 10월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연관 업종의 충격 완화와 새로운 조선업 보완 먹거리 발굴과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자 「조 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기자재업체의 다각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 전환 또는 다각화 의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 지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고, 조 선밀집지역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지정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8년 11월 조선업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사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소 조선사, 기자재업계 대상 금융 및 고용 지원,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등을 추진중에 있다. 2018년 4분기 이후 조선업 생산·고용 등 전반적 상황은 회복세이 나, 여전히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기존 대책 보완 사항 및 새로운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후속 보완 대책 중 하나로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표 4-1〉 조선업 세제 지원 추진경위

기간	대상	내용
201613 109	사업 다각화 업체	기존 사업의 50% 이상 업종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¹⁹⁾ 시 적용하는 사업 전환일 5년으로 연장
2016년 10월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 유예(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을 최장 9개월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최대 1년 범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확대 선정	- 지역: 거제, 창원(진해), 통영, 고성, 울산(동구), 영암, 목포, 해남 - 기간: 2018.05.29.~2019.05.28.(1년)
	기업 유치 및 창업 대상 (31개 업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기업 규모별 감면 한도 차등 설정 ²⁰⁾)
2018년 5월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기존 인하율을 5% → 1% 인하
	고용유지 세제 지원	기존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기업 유치 및 창업 대상 (31개 업종)	신규 지정지역까지 확대 납세 연장·징수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연장
004014 501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 지역: 거제, 창원(진해), 통영, 고성, 울산(동구), 영암, 목포, 해남 - 기간: 2019.05.29.~2021.05.28.(2년 연장)
2019년 5월	신규 투자 세액 공제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사용료 감면	조선소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1.2. 주요 내용

조선업을 위한 세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관세,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 장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관세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세조사 유예를 통하여 부담을 완화하였다. 국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입 기한을 최대 9개월 까지 연장하고,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연기하였다. 2017년 지방세의 경우에는 장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였다. 그리고 4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였다.

둘째, 사업의 다각화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하여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50%이상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하였다. 2018년에는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하여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기도 하였다.

¹⁹⁾ 국세(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대상 4년간 50% 감면

²⁰⁾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 중견·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비례하여 감면 한도 설정

〈표 4-2〉 조선업 세제 지원 주요 내용

구분	세금	세제 혜택	비고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9개월~2년 유예	
산업위기대응	관세	납부 연장/분할납부	1년	
특별지역	지방세	납부 연장	6개월~2년 유예	
	자산투자 세액	세액 공제	중소 3% → 7%, 중견 1~2% → 3%	
사업체 다각화	국세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5년	
	지방세 (취득세)	100% 감면	LNG 연료 추진선	
지역 내	국세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EIE	
기업 유치	지방세 (개인지방 소득세)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5년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

1.3. 시사점

조선업의 침체를 벗어나고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조선업을 시작으로 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에는 특별위기 업종을 대상으로도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체의 다각화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중 소기업과 소규모 업체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세제 혜택

2.1. 개요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2019년 8월 개정안이 통 과하여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다. 효력 기간이 연장된 것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 기업 대상이었던 기업활력법은 신사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기업까지 포함되었다.

〈표 4-3〉 기업활력법 적용 범위

구분	적용 범위 업종	
과잉공급업종 기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업종 ²¹⁾	종전
신사업 진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 ²³⁾ 을 활용	
기업 ²²⁾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서비스 생산업	신규
산업위기지역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²⁴⁾ 된 지역 의 주된 산업의 기업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

2.2. 주요 내용

기업 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혜택과 동일하게 이월결손금 100%를 공제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법인세를 계산 할 때 최장 15년(20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로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어 법인세를 내야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법인세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 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표 4-4〉 기업활력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른 효과

이월결손금 공제율	2017년 적자 5억원이던 기업이 2018년 흑자 5억원을 낸 경우
60% 공제	흑자 5억원의 60%인 3억원을 뺀 2억원에만 2018년 법인세 부과 남은 적자 2억원은 2019년 법인세 계산 때 공제
100% 공제	흑자 5억원의 100%인 5억을 빼면 2018년에는 흑자가 없으므로 부담해야할 법인세 없음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2019.11.11.)

²¹⁾ 가동률, 재고율, 과잉공급 지속성 등도 검토

²²⁾ 신산업 해당 여부는 신산업 판정위원회(신설)에서 판정

²³⁾ 자율차, 인공지능,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을 포함하여 총 173개

²⁴⁾ 현재 6개 지정 (군산,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지역의 주된 산업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매출 비중 20% 이상)도 대상

2.3. 시사점

기업활력법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숙박업의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업종으로, 숙박업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제 혜택

3.1. 개요

2011년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뿌리산업은 국가주력 생산제품의 핵심 제조기술을 가공하는 기반산업이며, 뿌리기술25)은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제품으로, 제품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핵심 제조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기술을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로 6개 분야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뿌리기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 되어제조업 경쟁력 근간을 형성하고 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업이다. 현재는 뿌리산업법 제27조에 3항26에 의거하여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 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²⁵⁾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뿌리산업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을 의미한다.

²⁶⁾ 제27조 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2. 주요 내용

현재 뿌리산업에서 세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면허세와 소득세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는 100% 면세를 적용하고, 법인세는 5년간 100% 면세를 적용하였으나, 2020년 4월부터는 5년간 100% 면세 이후 추가로 2년 동안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감면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수도권은 35%, 지방의 경우 최대 75%까지 감면 가능하며, 이는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다. 취득세의 경우는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는 50%, 건축물에 대해서는 25%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30억한도 이내에서 10%를 부과한다. 일반적인 상속세의 경우는 10억 초과 30억 이하일 경우에는 2억 4천만원과 1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40%를 부과하고 있다.

〈표 4-5〉 뿌리산업 대상 세제 혜택

구분	세제 혜택	비고
등록면허세	100% 면세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법인세	100% 면세 + 50% 감면	5년 + 2년
소득세	50%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재산세	수도권 35%/지방 최대 75% 감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상속세·증여세	5억을 제외한 후 10% 부과	30억 한도 이내, 2년 이내 창업
취드 내	신축/증축을 위한 토지 50% 감면	-
취득세	건축물 25% 감면	-

자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자료

3.3. 시사점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의 경우에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을 위하여 창업부터 사업의 안정화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뿌리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 취득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실효성이 있는 세제 혜택이다. 그리고 뿌리산업계의 요청으로 인하여 법인세 혜택과 기간도 추가 연장되었다. 관광숙박업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재산세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4.1. 개요

우리나라는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벤처기 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벤처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효율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벤처기업의 보증 및 보험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신 용보증지원 및 기술인력지원 등과 같은 일반지원과 더불어 소득세, 법인세 감면,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취등록세 면제 등과 같은 조세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4.2. 주요 내용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 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벤처투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 로 분류된다. 현행 제도는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유용되며,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더불어 벤처기 업 지원요건 충족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세지원제도 의 유효성과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이 높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추세이다.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당위 성은 투자자의 위험회피적 성향과 벤처투자자금 회수기회의 부족인 초기단계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벤처투자 환경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과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및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술진보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는 데 있다(김재진·홍범교, 2014).

〈표 4-6〉 벤처기업 대상 조세지원 제도

단계	조세지원 내용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호언다게	지방세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창업단계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손금산입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인수합병단계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자료: 김재진·홍범교(2014).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대상 조세지원은 다음과 같다.

〈표 4-7〉 벤처기업 대상 조세지원 제도

구분	조세지원 내용	근거 법령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벤처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벤처기업-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3천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4.3. 시사점

우리나라의 현행 벤처기업 대상 조세 지원 제도는 타 영역과 비교할 때 과감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 관광산업 역시 최근 정부가 육성하는 관광스타트업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세제 지원의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5. 중소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제도

관광산업은 대부분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중소기업 대상 조세특례 지원 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대상 적용 세제 지원 혜택을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4-8〉 기업 규모별 적용가능한 조세지원 제도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0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舊 고용증대세액공제)	0	0	0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	×	×

자료: 기획재정부(2019). 조세지출예산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7)'에 관한 조세특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은 비중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일정 수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조세 지원은 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지원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는 추세이다(한정미·이준호, 2019).

〈표 4-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항목	2017년(실적)	2018년(전망)	2019년(전망)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583	660	86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93	1,977	2,61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03	22,277	25,76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468	25,326	24,608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3,796	3,869	97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230	1,053	1,10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	3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94	152	2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²⁷⁾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지원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특례는 창업,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4-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구분	항목	조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주요 항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기타 항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조특법 제조의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관광산업은 영세한 산업 규모의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 분류되며, 실제 관광사업체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조세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세제 혜택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기업이 체험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사료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중소기업세제 지원의 목적이 혁신 유도, 연구 개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설계되어 있기때문에 실질적인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체의 조세특례 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4-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배당소득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접대비의 손금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기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 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2절 주요국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분석

1. 영국

1.1. 개요

영국의 경우 유럽 국가 내 해외 방문객과 영국 거주자의 국내 관광 산업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관광산업은 가격에 민감한 산업으로 영국의 경우, EU 유럽국가 대비 숙박업의 부가가치세가 높아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영국 내에서는 'Cut Tourism VAT Campaign'이 진행 되고 있다. 'Cut Tourism VAT Campaign'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 4-12〉 영국 Cut Tourism VAT Campaign 추진 경위

기간	구분	내용		
2008년 2월	British Hospitality Association	VAT 인하 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간 (관광산업 수익 연간약 6 억 파운드 인상, 23,000개 일자리 창출		
2009년 12월	노동당	부가가치세의 인하는 광범위하므로, 효율적인 다른 부양 방법 강구해야 함		
2011년 7월	아일랜드	호텔, 식당에 관한 VAT 인하 (13.5% → 9%)		
2011년	영국 재무성	VAT 인하는 연 10 억 이상의 예산 손실 발생 BHA의 보고서는 경제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2012년 ~2015년	Cut Tourism VAT Campaign	지속적으로 EU 세금 규정에 의한 숙박업 VAT 인하 요구		
2015년 3월	영국 재무성	브렉시트로 인하여 EU 세금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음을 주장		
2017년 6월	Cut Tourism VAT Campaign	관광산업에 있어서 VAT의 영향에 관한 중요성을 주장 하였지만 관련 법안 통과 부결		

1.2. 주요 내용

영국 내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인하 관련 의견은 관련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VAT 인하로 인한 감세 수준이 약 10억 파운드로 예상하는 반면, 영국 재무성에서는 약 30억 파운드로 예상하고, 감세로 인한추가 영향 수준은 약 100억 파운드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유럽 36개국과 비교했을 경우 영국의 숙박업의 VAT 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광업 가치 경쟁력이 하락한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재무성에서는 유럽 36개국에 비하여다른 산업의 VAT 세율은 낮은 편이며, 관광업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입장료가 낮기때문에 관광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표 4-13〉 영국 내 숙박업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입장 차이

구분	관련 업계 Cut Tourism VAT Campaign	정부 Her Majesty Treasury	
VAT 인하로 인한 감세 수준	약 10억 파운드	약 31억 파운드, 영향에 따른 감세 수준은 약 100억 파운드	
유럽 36개 국 중 VAT 차이 발생	다른 나라 대비 VAT 세율 높아서 관광업 가치경쟁력 하락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업계의 VAT 세율이 높음 영국은 대중교통, 입장료 등에서 다른 나라 대비 낮은 가격임	
VAT 인하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	VAT 인하로 인한 관광 수요증가로 인하여, 감세액 보전 가능	VAT를 인하하는 만큼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감세액 보전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매년 영국의 관광객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VAT 인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3 만 일자리 창출 가능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효과를 보아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음	
관광 무역 수지 개선	관광 수입으로 인한 무역 수지 개선 가능	부가가치세 인하가 세입 부족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불가	

자료: Vat on tourism Briefing paper(2018.11.15., House of Commons Library)

영국의 숙박업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VAT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감세로 인하여 관광 수요는 추가로 발생한다. 'Cut Tourism VAT Campaign'에서는 VAT를 5% 감세할 경우, 2018년 기준 10년 동안 발생하는 손해액이 12,361백만 파운드가 발생하지만, 매출 증대, 추가 고용으로 인한 소득세, 법인세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5,268백만 파운드의 재정이익을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영국 재무성에서는 부가가치세를 5%

인하할 경우, 연간 20억 파운드의 추정 비용이 발생하며,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인하가 다른 업종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가져 올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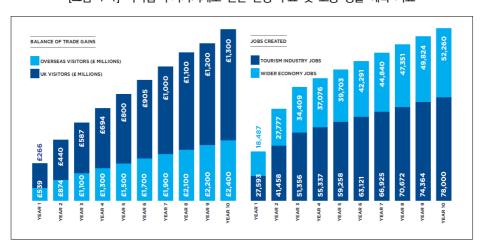
〈표 4-14〉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수익 발생 효과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매년 발생(4년 이후)	10년 총액
VAT 감면으로 인한 세수	-23.2	-12,361
매출 증대로 인한 수익 창출	1.9	1,047
추가 고용 창출로 인한 소득세	3.5	2,396
고용창출로 인한 수당 지급액 절감	4.5	2.589
법인세로 인한 수익 발생	3.2	2056
관련한 추가 수익 발생	13.7	9091
총 계	3.1	5,268

자료: Cut Tourism VAT Campaign 2018년 보고서

[그림 4-1] 숙박업 부가가치세로 인한 관광 수요 및 고용 창출 예측 자료



자료: Cut Tourism VAT Campaign 2018년 보고서

둘째,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감세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Cut Tourism VAT Campaign'에서는 관광객 증가를 기준으로 하여, 관광업 일자리 7만8천 개가 발생하며, 전체적인 일자리 13만 개가 발생할 것으로 산출하였다. 이는 'Cut Tourism VAT Campaign'에서 영국 내 방문객이 숙박 및 관광명소에 미치는 전체 재정 및

고용 영향을 반영률 75%로 가정하여 산출한 일자리 예측 데이터이다.

반면, 영국 재무성에서는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나, 영국 내에 전반적인 고용 창출은 미비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숙박업 부가가치세 감세보다는 영국 항공 여객세 감세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아일랜드의 경우, 부 가가치세 인하 이후 해외 관광객 9%, 해외 관광객 지출이 9% 증가되었으며, 영국 항공 여객세²⁸⁾로 약 34억 파운드, 부가가치세로 1,250억 파운드가 발생하므로 영 국 항공 여객세 감세 또는 폐지의 경우는 해외여행 수요의 증대 효과를 가져 오지 만, 숙박업 부가가치세 감세의 경우, 국내여행에 대한 경쟁력 증대로 내외국인에 대 한 수요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1.3. 시사점

'Cut Tourism VAT Campaign'의 주장과 같이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인하는 외 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사료된다.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진행 할 경우. 호텔 숙박비가 하락하고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관광객이 증가하며 관광산업의 매출·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에 대한 조건 등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프랑스

2.1. 개요

프랑스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1967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인하가 된 후, 4성급이상 호텔은 가격 인하가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관광산업의 활성 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를 진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인하를 적용받기 위한 다양 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²⁸⁾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에게 부과되며, 비행거리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세금비행거리 가 3,200km 이내면 A 그룹(£13~£78), 이상이면 B그룹(£78~£515)이며 탑승 항공기 구분에 따라 달라짐

1988년부터 숙박업 부가가치세는 인상 되었지만, 인하된 호텔 가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아서 호텔 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2009년부터는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숙박업과 외식업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진행하 였고, 2012년부터 재정수지 회복 대책으로 2% 선에서 조금씩 인상하였으며 현재는 표준 부가가치세의 1/2 수준인 10%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숙박업 부가가치세 인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5〉 프랑스 숙박업 부가가치세 변화

기간	기간 구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1967년~1987년 VAT 인하		7%	18.6%	
1988~2008년	VAT 인상	18.6%	18.6%	
2009년 VAT 인하		5.5%	19.6%	
2012년	VAT 인상	7%	19.6%	
2014년 VAT 인상		10%	20%	

자료: EU 국가별 부가가치세 자료

2.2. 주요 내용

프랑스의 숙박업과 외식업의 부가가치세 인하에는 이행 합의 동의서를 통하여 다 양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2009년 부가가치세 인하 조건으로 최저 임금 개선과 고용 창출, 근로조건 개선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하 였고, 두 번째는 투자 확대, 세 번째로 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고용 환경 개선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숙박업과 외식 업의 부가가치세 인하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6〉 프랑스 관광산업 부가가치세 인하 조건

구분	부가가치세 인하 조건		
적용 대상 업체	- 호텔 및 레스토랑, 카페 관련 업종		
이행 합의 동의 진행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조건 이행합의서 동의 업체 한정		
고용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최저 임금제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 - 고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신규 고용 창출 여부 확인 - 훈련센터시스템 기준, 전문화 학생실습제와 튜터링 및 자체 교육체계 구비		
외래 관광객 유치 투자 확대	- 운영 기간 2년 동안 최소 1.5% 이상 외래 관광객 유치에 관한 비용을 투자: 프랑스 관광청, 프랑스 상공회의소 등 관련 연구개발 투자 또는 기부금 납부 등 - 운영 시설 이용객의 20% 수준까지 외래 관광객으로 계약 진행 및 이용		
가격 인하	- 물가 상승률 대비 10%선 이내에서 가격 조정 (26개월 이내 기준): 가격에 대한 명확한 고시 및 인하 내용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 - 분기별 소비자 가격지수, 외식 물가지수 가격 조사 실시		

자료: 프랑스 국세청 자료29)

2009년 이후 외식업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19.6%에서 5.5%로 적용함에 따라 약 75,000명의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 왔고, 연간 이직률도 80%에서 40%로 감소되었다.

〈표 4-17〉 프랑스 외식업 부가가치세 인하 고용 효과

구분	2008년 기준	2011년 기준	
식당 부가가치세 19.6%		5.5%	
관련 고용 89만 8,100명		97만 3,100명 (+75,000명)	
최저 임금 1,350유로/월		1,620유로/월	
연간 이직률 80%		40%	

자료: 프랑스 국가 통계국(INSEE)

프랑스의 관광산업 부가가치세 인하는 숙박업의 가격경쟁력을 가져 왔으며,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숙박업 부가가치세 인하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부터 농촌 활성화 지역(ZRR)의 숙박업에 대해서는 건축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2019년 1월부터 각 지방세로 적용 되는 건축 재산에 관한 재산

²⁹⁾ Christine LAGARDE et Hervé NOVELLI annoncent les contreparties de la baisse du taux de TVA à 5,5% pour la restauration à partir du 1er juillet 2009.

세(TFPB) 중에서 농촌 활성화 지역(ZRR)에 있는 숙박업의 경우에는 각 관할 법령에 따라 영구 또는 임시 면제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소규모 관광업을 포함한 마이크로 기업에 대한 면세에 대한 정책도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 기업은 소득 산출 및 과세, 부가가치세 납세 면제 등이 진행 된다. 마이크로 기업 제도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2020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구분	매출액 기준	
구매-자판매업자, 즉석 소비판매업자, 숙박업자 (민박, 가구가 구비된 관광숙소, 또는 게스트 하우스 임대업자 포함)	176,200 유로 이하(*한화 약 2억 3,500만원 정도)	
용역 서비스업이나 자유업 활동, 가구가 구비된 임대업자(상기 임대업 제외)	72,500 유로 이하(*한화 약 9,600만원)	
혼합형 사업(판매 및 서비스 제공업)	용역 서비스 매출액 72,500유로 이하이고 총 매출액이 176,200유로 이하	

〈표 4-18〉 프랑스 마이크로 기업 제도 기준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상기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상공업, 자유업, 수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비상업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고정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업소득 과세 표준은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하 여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과세 표준 = 연 매출액 - (매출액 × 고정공제율)

고정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은 34%, 50%, 71%로 나뉘고, 최소 공제액은 305유로로 한화 약 40만원 상당이다.

마이크로 기업은 간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 (n° 2042-C-PRO)에 매출액 또는 수입총액, 종업원 수, 주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면 필요경비 공제 및 과세표준 소득을 과세당국이 산출 한다.

마이크로상공소득(micro-BIC) 또는 비상업특별소득(BNC) 제도 대상 개인사업 자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보장 분담금 간이정액납부제도인 간이마이크로사 회보장제도(micro-social simplifie)와 소득세 정액 납부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

^{*}사업을 당해 연도 중에 창업한 경우, 사업 영위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

다. 소득세 정액 납부를 선택하면 매출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회보장 분담 금의 정액 납부액을 합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과세 한다.

〈표 4-19〉 간이마이크로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세 정액 납부 세율

사업자 구분	소득세 정액 납부(2020)
상품 판매 사업자(BIC)	매출액의 1.0%
상업 혹은 수공업 서비스 용역 사업자(BIC)	매출액의 1.7%
기타 서비스 용역(BNC)사업자	메초에이 2 20/
자유업 공제 및 노령 보험 금고(CIPAV)에 속하는 자유업 사업자	· 매출액의 2.2%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변경 한다.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 85,800유로(한화 약 1억 1,700만원), 34.400유로(한화 약 4.700만원)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익년도에는 각각 94.300유로와 36.500유로로 한도가 조정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해부 터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신설 기업의 경우, 첫 해의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 94,300유로 또는 36,500유로를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4-20〉마이크로 기업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연도	판매 매출액 한도	용역 서비스 매출액 한도	부가가치세 면세
N	85,800유로 이하	34,400유로 이하	면세
N+1	85,800유로 초과 ~ 94,300유로 이하	34,400유로 초과 ~ 36,500유로 이하	면세
	94,300유로 이하	36,500유로 이하	면세
N+2	94,300유로 초과	36,500유로 초과	일반과세(매출액 한도를 초과한 달의 1일부터)

2.3. 시사점

프랑스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적용하면서 관련 업종에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세금 혜택에 따른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각 혜택 적용이 규모 및 업종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면 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 일본

3.1. 개요

일본에서는 호텔·여관업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건물·시설을 제공하고, 그 사용 대가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 때문에 시설·설비의 악화가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고객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건물은 경과 연수가 비교적 짧아도 보수가 진행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호텔·여관용으로 제공하는 건물과 관련되는 고정자산세에 관해서는 관할 시의 기준이 호텔 여관용으로 제공하는 건물의 실태와 상이하므로, 기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을 추진하였다.

구분	기간	내용
지방세 불균일 과세 적용	2008년	방일 외국인 여행객 확보를 위하여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을 제정하여 지방세 불균일 과세 적용
	2010년	방일 외국인 여행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에 관한 특례조치 연장 (~2012년 까지)
고정자산세 기준 완화	2011년	호텔 여관용 건물에 관한 고정자산평가에 있어 적정화하기 위해서 사용 실 태 조사 검토
	2012년	호텔 여관용 건물에 관한 고정자산평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여부 검토
	2014년	고정자산평가 실태조사에 따라 갱신 기간을 50년에서 45년으로 단축

〈표 4-21〉 일본 숙박업 대상 세제 지원 관련 추진 내용

3.2. 주요 내용

일본의 호텔·여관업의 주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에 따른 지방세 불균일 과세 적용이다. 「국제관광호텔 정비법」 제5장제32조 (지방세의 불균일 과세) 조항에 따라 호텔업 또는 등록여관업용으로 제공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조제2항30)에 의거하여 감세

^{30) 「}지방세법」 제6조 지방단체는 공익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를 부적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 지방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수익으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

혜택 가능하다. 이는 각 도시마다 감세 경감 세율이 상이하며, 지방세 불균일 과세 를 적용하여 숙박업에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는 다음과 같다.

〈표 4-22〉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에 따른 지방세 불균일 과세 적용 도시

도시명	도시명 기본 세율		비고
가나자와 시		1.0%	등록된 이후 처음으로 과세된 연도 한정
다카아마 시	1.4%	1.2%	신청 대상 한정
히가시오미 시		0.7%	등록된 이후 5년 까지 (신청 대상 한정)

자료: 각 시청 홈페이지 지방세 기준 참고

둘째, 「2014년 세제 개정 대강」에 따른 고정자산세의 고정자산 평가 기준에서 갱년 감점 보정률 경과 연수를 조정함으로써 고정자산세를 감면하였다. 호텔·여관 업의 고정자산 평가 갱년 감점 보정률을 50년에서 45년으로 조정하였다. 고정자산 평가 기준 갱년 감점 보정률 경과 연수를 조정한 결과 준공 10년 건물에서 2.1%, 준공 20년 5.2%, 준공 30년 10.3%, 준공 40년 19.8%의 감세 효과가 나타나며, 2015년 기준 연간 감세 효과는 약 56억 엔 정도로 나타났다.

〈표 4-23〉호텔·여관업의 고정자산평가 기준 갱년 감점 보정률 및 감액 비율

건축물 종류	철골 및 철근	준공 년도에 따른 감액 비율			
	콘크리트 구조물	준공 10년	준공 20년	준공 30년	준공 40년
2014년 이전 호텔 시설 용도	50년	2.1%	5.2%	10.20/	10.00/
2014년 이후 호텔 시설 용도	45년*	2.170	5.2%	10.3%	19.8%

^{*} 해당 호텔 및 여관시설: 54,540개 시설(호텔영업: 9,796, 여관시설 44,744개), 2014년 3월31일 기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 고정자산세 산출 기준: 건축 가격×갱년 감점 보정 세율

3.3. 시사점

일본에서는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제정 이후, 방일 관광객이 증대되고, 지방세 감면으로 인하여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실질적 세금 감면 효과가 적용되었다. 숙박 시설의 경우, 고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자주 진행함에 따라 고정자산세에 대한 감면을 진행함으로써 이에 관한 감세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숙박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비율만 조정하여 관광산업의 감세 혜택을 줌으 로써 숙박시설 재투자율을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관광기업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 된다.

제3절 코로나19 관련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1. 아시아 주요국의 관광산업 관련 세제 혜택

아시아에서는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피해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관광 관련 세금 50%를 삭감하였는데, 식당, 호텔, 교통 및 여행 관 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50% 감면 및 세금 징수 3분기로 연기 예정 및 호텔 및 컨벤션의 토지세를 2년간 50% 감면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7%에서 9%로 인상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그리고 재산세를 10%에서 30% 까지 할인 적용하였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업용 부동산 재 산세를 10%에서 30%까지 할인하며, 여기에는 호텔, 레지던스, MICE 컨벤션 등도 포함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 보다는 세금 납부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 나로 인하여 20% 이상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세 납부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 사업자와 상업용 주택에 관하여 30%~50% 미만 매출 감소는 50% 감 면, 50% 이상 매출 감소는 전액 면제한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재산세를 90%까지 감면하기로 하였다.

〈표 4-24〉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업 관련 아시아 각국 세제 혜택

구분	국가명	내용
부가	베트남	- 인허율: 50% 감면 - 대상: 식당, 호텔, 교통 및 여행 관련 - 기간: ~ 2020.12.31
가치세	싱가포르	- 인허율: 7% 유지(2021년부터 9% 인상계획 보류) - 대상: 부가가치세 부과 전체 대상 - 기간: ~ 2020.12.31
	베트남	- 인하율: 50% 감면 - 대상: 식당, 호텔 및 컨벤션 업종 토지세 - 기간: ~ 2020.12.31
재산세	싱가포르	- 인하율:10% ~ 30% 할인 적용 - 대상: 상업용 부동산(호텔, 레지던스, MICE 컨벤션 등 포함) - 기간: 2020.01.01.~ 2021.12.31
	일본	- 인하율: 50% ~ 100% 할인 적용 - 대상: 30% ~ 50% 미만 소득 감소자는 50% 50% 이상 소득 감소자는 100% - 기간: 2020.01201.~ 2020.10.31
	태국	- 인하율: 90% 감면 - 대상: 모든 토지세 - 기간: ~ 2020.12.31
소득세	베트남	- 인허율: 50% 감면 - 대상: 식당, 호텔, 교통 및 여행 관련 - 기간: ~ 2020.12.31

자료: OECD Tax Policy³¹⁾ 자료 재구성

2. 유럽 관광산업 관련 세제 혜택

유럽에서도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피해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과 관련한 사회 보장기여금을 감면해 주는 사례도 있다.

그리스는 코로나 19(COVID-19)로 관광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빠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이에 식음료 및 운송, 관광관련 부가가치세를 24%에서 13%로 줄이기로 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인하32)를 적용하였고, 2020년 3월 20일부

³¹⁾ Overview of country Tax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crisis, (2020.05.29.)

³²⁾ Norwa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reduced VAT further reduced,

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여객 운송 공급 및 조달, 공영 방송국, 영화관, 박물관 등에 대한 입장료, 호텔 숙박업, 캠핑 산업에 12%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독일에서도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를 적용하였으나. 현재 독일은 호텔 숙박시 설을 코로나 19(COVID-19) 격리 시설로 이용하고 있어서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혜택 적용에서 제외 된다. 부가가치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 일까지 19%에서 16% 인하하고, 호텔, 레스토랑 부가가치세는 7%에서 5% 인하하 기로 하였다.

벨기에는 관광 숙박시설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 세를 면제하였다. 그리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재산세와 부동산세의 경우는 납부유예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며, 납부 기간이 5월에서 9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연장되었다.

불가리아에서는 모든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하여 5% 인하율을 적용하였다. 그 리고 납부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다.

아이슬란드는 급작스런 소득감소로 인한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를 3회에 걸쳐 미 룰 수 있고, 2021년 1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호텔업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호텔세는 2021년까지 면제 된다.

영국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전면 면제를 부가가치세에서는 납부 유예에 대한 혜택 을 제공한다. 소매업, 관광 및 숙박업에 대한 재산세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 년 3월 1일까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6 월 30일까지 2021년 4월 5일까지 납부를 유예하며, 소득세는 2020년 7월 31일자 납부가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 유예되었다. 관광업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세에 대하여 납부를 면제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관광업 종사자 및 관련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이 3월부 터 4월까지 면제된다. 그리고 관광, 교통, 식당, 문화, 스포츠, 교육 등에 관련한 사 업은 3월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헝가리에서 관광업 관련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COVID-19) 피해 분야에 혜택을 제공하였다. 관광, 오락, 스포츠, 문화, 여객 등 피해가 큰 분야 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면제를 실시하고. 건강보험료를 최저액으로 감면하였다. 또 한, 해당 분야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였으며, 관광개발세를 임시 중단하였다.

^{(2020.03.17.,} News IBFD).

〈표 4-25〉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업 관련 유럽 각국 세제 혜택

구분	국가명	내용
1 =	그리스	- 인허율: 24% → 13% - 대상: 여객운송, 숙박업, 입장료, 캠핑 등 - 기간: 2020.06.01.~2020.10.31.
부가	노르웨이	- 인하율: 12% → 6%(기존 8% → 6% 추가 인하) - 대상: 문화, 관광 서비스 - 기간: 2020.04.01.~2020.10.31.
가치세	독일	- 인허율: 7% → 5% - 대상: 호텔, 레스토랑, 맥주바 등(숙박세 제외) - 기간: 2020.07.01.~2020.12.31.
	이탈리아	- 인하율: 면제 - 대상: 관광, 교통, 식당, 문화, 스포츠, 교육 - 기간: 2020.03.02~2020.03.31.
	영국	- 인하율: 면제 - 대상: 소매업, 관광 및 숙박업 - 기간: 2020.04.01.~2021.03.01.
재산세	벨기에	- 납부기간 유예 - 대상: 부동산세, 재산세 - 기간: 2020년 05월 → 2020년 9월
	불가리아	- 인하율: 5% 할인 적용 및 납부 유예 - 대상: 자동차세, 부동산세 - 기간: 2020.04.30. → 2020.06.30.
소득세	아이슬란드	- 인허율: 면제 - 대상: 호텔업의 호텔세 - 기간: 2020.03.21. → 2021.12.31.
소비세	헝가리	- 인허율: 면제 - 대상: 관광세 관련 소비세 - 기간: 2020.04.01.~2020.12.31
관광 개발세	헝가리	- 인허율: 면제 - 대상: 관광개발세 - 기간: 2020.04.01.~2020.06.30
사회 보장 기여금	아이슬란드	- 납부기간 유예 - 대상: 소득 감소 대상자 - 기간: 2020.04.01. → 2021.01.15. (최대 3회 유예 가능)
	이탈리아	- 인히율: 면제 - 대상: 관광업 종사자 및 관련 고용주 - 기간: 2020.03.02. ~2020.04.30.
	헝가리	- 인허율: 면제 - 대상: 관광업 종사자 및 관련 고용주 - 기간: 2020.03.18. ~2020.06.30.

자료: OECD Tax Policy³³⁾ 자료 재구성

33) Overview of country Tax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crisis, (2020.05.29.)

제5장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제1절 관광산업의 특성과 세제 지원의 필요성

1.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방한 외래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기준 1,700만명으로 전년대비 1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은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인 1.750만 명을 유치 하여 관광수입 약 5조 1천억원, 생산유발효과 약 46조원, 취업유발효과 약 46만 명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러한 증가 세와 향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관광산업이 유망서비스업, 혁신 성장을 위한 대표 산업군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며, 관광을 과거 소비성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해서 지원·육성 해 나아가야 하는 근거가 된다.

(단위: 명, %) ■ 방한 외래관광객수 ⊸ 증감률 17.241.823 17.502.756 30.3% 15.346.879 14,201,516 13,231,651 13,335,758 15,10% 14.00% 13.70% 12.175,550 12,50% 11 30% 16,6% 9.3% 11,140,028 9,794,796 8.797.658 -6.8% 22.7% 2010년 2011년 2018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그림 5-1] 방한 외래관광객수 및 증감률

외래관광객 유치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무역'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국 관광객이 국내 여행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외화는 제조업에서 물품의 해외 수출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은 외화획득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이유로 수출기업에 준하는 세제 지원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에 합당한 세제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대외무역법 제2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며, 외화획득산업으로서 타 수출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의 수준과 동일하게 산업적 위상에 맞는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관광산업은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수출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경우, 호텔업에는 과거 한시적으로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요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한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특례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조세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산업용 전력요금의 적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임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관광산업은 수출산업이나 타 유망산업에 적용하는 세제 지원 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하여 관광산업의 세제 지원 정책은 미미한 것을 확인할수 있다.

타산업과의 세제 형평성과 산업으로서 높아진 관광산업의 위상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세제 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적 관점에서 차별적 규제 개선 및 산업적 기반 확충에 따른 세제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1〉 수출산업(제조업)과 관광산업 비교

구분	수출산업(제조업)	관광산업(호텔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미적용(부분 특례)	
전력 요금	산업용	일반용	
교통유발담금	면제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배출부과금 부과)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배정	부분 배정	

2. 관광산업의 가격탄력성

관광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산업이다. 다시 말해, 수요가 가격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권혁진(2015)의 연구에서 국내 관광수요 에 대한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국내 관광 수요를 전국적으로 볼 때 소득과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광재는 음식, 교통, 숙박 순으 로 나타났다.34)

〈표 5-2〉 관광 수요 탄력성 추정 결과(권혁진, 2015)

	숙박	교통	음식	오락/문화	쇼핑/기타
소득 탄력성	0.947***	1.053***	1.064***	0.591*	0.634
	(0.063)	(0.037)	(0.033)	(0.252)	(2.611)
가격 탄력성	-0.733***	-0.781***	-0.809***	-0.364	-0.248
	(0.023)	(0.035)	(0.033)	(0.276)	(2.466)

주1) * p<0.05, ** p<0.01, *** p<0.001

자료: 권혁진(2015).

주2) 괄호내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³⁴⁾ 숙박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숙박 가격의 비례적 변화에 따른 숙박 수요량의 비례적 변화를 의미한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의 비례적 변화 비(ratio)로,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는 이질적 재화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권혁진, 2015).

다만, 관광산업의 가격탄력성 관련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5) 가격탄력성의 실제 추정은 가격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수요·공급 연립방정식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의 통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실증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의 경우 단기에 수요는 탄력적이나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 객실의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급격한 가격 변화에 객실이 모자라거나 남아도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앞서 사례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의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에서도 주된 근거는 높은 가격탄력성과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를 들고 있다. 예컨대 호텔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유사하다. 국내 호텔 객실료가 주변 경쟁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작용할 수 있다. 호텔업은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호텔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우리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3〉아시아 주요 경쟁국 호텔 지표 비교

구분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본 태국		중국	싱가포르
객실료	141.6\$(67)	137.4\$(63)	116.6\$(42)	98.2\$(25)	202.2\$(96)
객실수 (인구100명당)	1.7(17)	1.1(33)	1.1(34)	0.1(114)	1.2(28)
부가가치세	10%	8%	7%	6%	7%

자료: WEF(2019). 관광경쟁력지수, ()은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의미

³⁵⁾ 거시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예: 이경희·김경수, 2017)에서는 가격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으나, 국내 미시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그 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관광업계 내부적으로 최근 호텔업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호텔업의 매 출은 비슷하나 인건비, 조세 부담 등 고정비가 상승하여 실질적 영업이익은 감소하 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공시 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매출액 대비 세금과 공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일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숙박 업의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은 2014년 0.96%에서 2018년 1.55%로 증가 하였다. 이는 또한 전산업의 0.3%보다 5배 높게 나타나는 수치로 숙박업의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4〉 매출액 대비 세금과공과의 비중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산업(전체)	0.27%	0.30%	0.30% 0.30%		0.30%
서비스업	0.43%	0.46%	0.46%	0.44%	0.46%
숙박업	0.96%	1.47%	1.52%	1.54%	1.55%

자료: 한국은행(2019). 기업경영분석

3. 관광산업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관광산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산업이다. 최근 사드, 일본 수출규제, 이 어진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여행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호텔 등 관광 업계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2월 말 전국 숙박·음식점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 3,000명(4.2%) 급감, 숙박업의 비 중은 약 4%로 2,000~3,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고용동향 최근 자료에서도 취업자수 감소와 전년대비 감소가 뚜렷하다.

〈표 5-5〉 주요 서비스 산업 최근 고용 동향

(단위: 천명, %)

구분	업종	2020.1	2020. 2	2020. 3	2020. 4	2020. 5
-101TLA	전체	26,800	26,838	26,609	26,562	26,930
	도매 및 소매업	3,609	3,573	3,527	3,536	3,520
취업자수 (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2,332	2,275	2,135	2,077	2,13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07	507	474	483	511
	전체	568	492	-195	-476	-392
	신세	2.1%	1.8%	-0.7%	-1.8%	-1.5%
	도매 및 소매업	-94	-106	-168	-123	-189
전년동월	도메 및 소매합	-2.6%	-3.0%	-4.8%	-3.5%	-5.4%
대비 증감 (증감율)	AU EL CUEIO	86	14	-109	-212	-183
	숙박 및 음식점업	3.7%	0.6%	-5.1%	-10.2%	-8.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69	56	9	11	28
		13.6%	11.0%	1.9%	2.3%	5.5%
	전체	-354	38	-229	-47	368
	신세	-1.30%	0.14%	-0.85%	-0.18%	1.39%
		-8	-36	-46	9	-16
전월대비 증감 (증감율)	도매 및 소매업	-0.22%	-1.00%	-1.29%	0.26%	-0.45%
	스바 미 오시되어	-8	-57	-140	-58	59
	숙박 및 음식점업	-0.34%	-2.44%	-6.15%	-2.72%	2.84%
	예술스포츠 및	-26	0	-33	9	28
	여가관련서비스업	-4.88%	0.00%	-6.51%	1.90%	5.80%

출처: 통계청(2020. 6. 10), 2020년 5월 고용동향

호텔업협회의 내부 조사 결과, 객실 및 연회 취소로 인한 호텔업 누적 피해액 (2020.2.3.~2020.3.8)은 약 2,153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정한 관광소비지출 동향 조사결과에서도 관광숙박업은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2020년 1분기 숙박업 소비지출 감소액 추정

구분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1/4분기(p)
전년동기 대비 증감액(억원)	380	△1,597	△2,452	△3,670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8.2	△38.7	△70.3	△29.9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월별 관광레저소비지출동향(신한카드사 지출액 빅데이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 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산업활동 동향의 서비스 산업 생산지수도 전년대비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서비스 산업 생산지수 - 숙박 및 음식점업 상세 현황

(단위: %)

구분	구분			4월	'20.1/4p	2월	3월p	4월p
숙박 및 음식점업	전월(기)비	_	-0.8	0.2	-17.3	-18.8	-18.2	12.7
국익 및 급식점합	동월(기)비	-1.0	-1.2	-0.9	-16.5	-14.9	-32.5	-24.5
	전월(기)비	_	-4.6	1.0	-30.2	-33.5	-37.0	6.7
숙박업	동월(기)비	-0.5	-2.7	2.3	-29.9	-29.2	-58.1	-55.8
호텔업	동월(기)비	3.7	2.9	8.0	-29.7	-24.4	-64.8	-63.5
• 여관업	동월(기)비	-7.5	-7.9	-6.7	-26.0	-29.5	-41.8	-36.2
• 휴양콘도운영업	동월(기)비	-3.6	-8.4	11.1	-36.0	-42.7	-63.6	-63.4

자료: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관광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세제지원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 는 한계가 있다. 호텔업의 경우, 최근 인건비 증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등 고정비는 매출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텔업이 직면한 유동성 위 기를 완화하고 국내 호텔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호텔업 등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 비율이 높아 '15년 메르스, '17년 중국 사드, '20년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에 직접적인 타 격을 받는다. 외국인관광객의 객실점유율은 관광호텔업의 경우 '18년 46% 수준(호 텔업협회)으로 높기 때문에 체감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4. 관광산업의 높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산업을 대표한다.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지역밀착산업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이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향후 지속되는 관광수요를 통해 성장의 잠재력이큰 영역이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때 관광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예컨대 호텔업의 경우, 세제 감면은 단순히 호텔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시설 투자 및 고용창출 등 경기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관광숙박업은 시설 투자가 높은 산업적 특성을 지니는데, 2018년 기준 매출액 대비 19.1%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시설투자비는 694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텔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지역 경제 뿐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관광기업의 시설 투자와고용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5-8〉 관광사업체 시설 투자비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관광숙박업 시설 투자비 총액	1,520,876	1,700,896	1,463,885
관광숙박업 평균 시설 투자비	886	923	694
관광숙박업 매출액 대비 비중	18.4	20.2	19.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관광사업체조사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도 여행업, 호텔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관광업계의 경영 위기가 고용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관광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으로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서비스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유망서비스산 업을 대표하는 분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종사원 당 매출액이나 업체당 매출액 등 주요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성과 산업경쟁력 면에서 여전히 취약하기 때 문에 관광업계의 가격경쟁력, 인적자원 경쟁력, 기술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 다. 관광업계의 자구적 노력 뿐 아니라 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표 5-9〉 관광사업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광사업체수(개소)	14,281	16,154	18,926	18,141	20,769	23,874	27,696	33,089
관광사업체 종사원수(명)	186,394	204,579	229,658	227,136	230,334	235,604	261,978	280,270
개소당 종사원수(명)	13.1	12.7	12.1	12.3	11.1	9.9	9.5	8.5
종사원 1인당 매출액(백만원)	72.8	85.9	94.3	81.9	94.4	96.4	94.0	80.4
개소당 평균 매출액(백만원)	1,251	1,251	1,245	1,263	1,087	937	904	7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관광사업체조사

제2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

1. 정부 세제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강화

관광산업 세제 지원 방향 설정은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조세 지원정책 방향은 크게 혁신을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다. 혁신 유도, 연구개발지원, 고용 창출,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조세지원제도를 집중하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이슈는 고용으로,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특허청, 2018).

2019년과 2020년 세법개정안의 공통점은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도 나타난다.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5년 연평균 지출증가가가장 빠른 분야가 보건·복지·고용(2018~2022 연평균 10.3%)분야였다. 반면 2019년에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19~2023 연평균 12.4%)와 R&D(2019~2023 연평균 10.8%)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조세정책 내용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중점 기본방향을 토대로 관광산업 혁신 성장과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조세지원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반면 현재 기존 관광산업 세제 지원은 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업계의 인식 또한 고용 지원이나 투자촉진, 창업·벤처 및 연구개발 등 보다는 경영 안정을 위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관광사업체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전 담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관광사업체가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관광사업체가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필요시 비상시적으로 연구개발 운영'(3.0%), '전담부서 운영'(2.7%), '연구소 운영'(2.5%) 순으로 나타났다. 2018 년 연 매출액과 대비하여 R&D 부문에 사용하는 금액 역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관광사업체가 91.6%였고, 관광사업체가 연 매출액 대비 R&D부문에 사용 한 금액의 평균은 약 1%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김현주·안희자, 2019).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광사업체가 연구개발 지원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 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할 수 있다.

(N=406, 단위: %) 60~79% 40~59% 전담부서 운영 20~39% 1.5 2.7 연구소 운영 필요시 3.0 80~100% 2.5 비상시적으로 운영 1~19% 0.2 3.0 3.0 수행하지 않음 0% 91.9 92.1 [연구개발 활동 방식]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

[그림 5-2] 관광사업체 연구개발 전담인력 및 활동방식

자료: 김현주·안희자(2019).

〈표 5-10〉 매출액 대비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비중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산업(전체)	0.91%	0.92%	0.93%	0.92%	0.98%
서비스업	0.26%	0.25%	0.25%	0.25%	0.26%
숙박업	0.02%	0.04%	0.03%	0.04%	0.0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0.10%	0.38%	1.40%	0.12%	0.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03%	0.02%	0.03%	0.04%	0.03%

자료: 한국은행(각 년도). 기업경영분석

반면 관광산업은 환경 변화 OTA의 등장과 시장 지배력 강화, 비대면 서비스 등 기술과의 융복합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세제 지원 정책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과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일시적 정책지원보다는 산업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이다.

정부는 지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2019.4.2.)에서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관광스타트업 발굴, 강소형 관광기업 육성 등을 통해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 지원을 하고,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 기술, 인력,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을 위한 관광산업 법제도 개선을 통해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업종 신설을 포함하였다.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은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정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관광산업은 정부의 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뿐아니라 국내에서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18)는 관광산업에 대한 과세정책의 원칙으로 ①공평성(equity), ②공정한 수익 창출, ③효율성, ④단순성, ⑤성장에 효과적인 자극과세 정책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 적용을 통해 관광이역동적인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인프라를 지원하는세금은 투자와 새로운 고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관광 분야의 세제 지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목표 하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차별성과 불균형 개선

관광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세제의 불균형성 개선과 접근이 필요 하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 대비 차별적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과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으나,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세제 등 정책지원이 불리한 실정이다(김희수, 2014). 이러한 배경에는 관광산업을 여전히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 특히 호텔업의 경우, 현재 등록 호텔의 90%가 중소기업, 10%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관광의 기간산업으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치산업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호텔업 매출의 50% 이상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관광산업 역시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관광사업 은 적용범위가 일률적이지 않고,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유형자산에 대한 설비투자, R&D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자본·인력투자 중심인 서비스업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세부 업종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서비스업은 조세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는 설비투자, R&D 등이 없어도 포괄적으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므로 조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업 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조업은 포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제 감면 업종을 기존 열거식 (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19).

관광 부문도 마찬가지로, 세제 지원의 연혁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조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세부 업종을 추가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처럼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서 언급한 WTTC(2018)의 과세정책의 원칙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산업은 조세와 관련하여 공평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시의성과 효과성 강화

조세 지원 제도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책적 조세는 사회적·경제적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특정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이동건·박종수, 2018). 즉 일몰 적용이 합리적 방안이 다. 따라서 정책적 필요성과 목표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 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동안 업계 등에서 제안된 세제 지원과 제를 일시적 지원과 상시 지원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하 다. 예컨대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시의성 있는 세제 지원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세 지원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업계가 체감하는 실질적 세제 지원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관광산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 세부 업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접근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업계의 요구 사항 등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관광사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은 자금 지원(69.7%), 세제 지원(52.0%), 수요확대 지원(49.3%), 인력 지원(40.0%)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카지노업에서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관광숙박업으로 58.2%로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가 조사되었다. 업종간의 인식 차이는 일정 규모가 있는 시설 기반의 업종에서 세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카지노업의 경우 사행산업으로 개별소비세 등, 중과세율 적용 등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업종으로 볼 수 있다.

〈표 5-11〉 관광사업체 필요 지원 정책 과제(1~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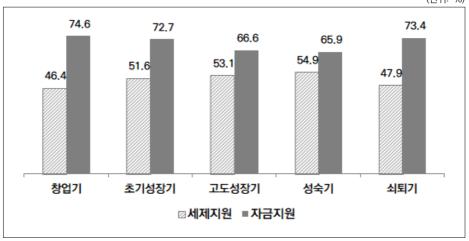
구분	자금지원	연구개발	인력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창업지원	경영지원	세제지원	시장질서
전체	69.7	11.6	40.0	49.3	13.0	6.5	28.3	52.0	29.7
여행업	73.3	10.3	27.3	50.0	19.1	6.0	29.2	54.4	30.2
관광숙박업	67.2	8.6	46.1	41.6	14.6	3.9	28.6	58.2	31.1
관광객 이용시설업	72.0	16.7	38.0	56.2	6.9	9.3	26.8	45.2	28.7
국제회의업	72.3	21.1	46.8	32.0	23.8	4.1	25.9	40.0	34.0
카지노업	37.5	12.5	25.0	25.0	87.5	-	12.5	75.0	25.0
유원시설업	64.8	15.5	48.1	44.3	5.1	13.3	29.6	51.8	27.3
관광편의시설업	70.0	9.6	40.1	63.8	9.4	5.4	27.7	46.5	27.5

자료: 류광훈·김희수(2018),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기와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등 개별 기업이 처한 위치에 따라 세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달리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 정책의 수요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비교해보면 창업기와 초기성장기에는 자금지원 수요가 월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고도성장기와 성숙기에는 세제 지원에 대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 관광사업체 필요 지원 정책 과제(1~3순위)

(단위: %)



자료: 류광훈·김희수(2018),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조세 지원 정책은 개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동시에 시기적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OECD(2020)는 코로나19 진행 단계를 위기-봉쇄-전환-포스트 코로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재정 및 조세 정책 대응전략을 제 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은 기업 유동성 공급 및 근 로자 보호. 가계에 대한 소득보조. 실업급여 혜택 확대 등은 초기 단계의 기급 대응 조치이다(백경엽 외, 2020).

〈표 5-12〉 코로나19 진행 단계별 조세지원 대응전략

구분	내용
1단계 위기 발생 단계	-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공급 및 소득보조를 위한 긴급 조세지원 요구에 신속 대응 필요 - 핵심 정책목표는 유동성 지원과 소득지원이며 정책수단은 납부유예 및 면제, 조기환급 등 세무행정을 활용한 조치가 수반
2단계 봉쇄·완화 단계	- 봉쇄와 완화(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조세지원 추진 필요 - 봉쇄 기간의 경과에 따른 기업 유동성·지불능력 위험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납부 유예, 사회보장세(SSCs) 및 임금지원과 같은 다각적인 조세지원 지속 제공 필요
3단계 전환기	- 코로나19의 극복과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정 부양책 등 재정적 자극 필요 - 기업·가계부채 증가, 실업 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투자·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적 자극이 필요
4단계 포스트 코로나	-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 도모 - 코로나19 위기 비용 충당,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세원확보 관점에서 새로운 조세 정책 논의 필요

자료: 백경엽·태정림·박지원(2020).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는 2020년 세법개정 안의 주요 방향과도 일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관광산업의 위기에서 조속히 회 복하여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세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럽 과 아시아의 주요국에서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재산세, 법인소득 세 등의 면제, 감면, 유예 등의 조치는 관광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의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조세 지원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조세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가 점차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조세 특례 적용은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시행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한 다. 따라서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제 지원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검토

1. 선행 제안 과제 이행 현황 분석

본 연구는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제안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세제 지원 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미추진 과제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는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정기적인 과제 관리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관광산업 세제 지원 연구는 2008년, 2012년, 2014년에 총 3차례 진행되었다.

먼저 2008년에 수행된 「한국관광산업 규제개혁 종합연구」에서는 관광호텔 부지 에 대한 차별적 세제 개선 등 총 26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 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가스 요율 등 각종 부담금까지 포괄하여 과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2012년 수행된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방안 연구」는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5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수행된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연구는 세목별, 업종 별 세제 지원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총 18개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관광업종 추가 등의 과제는 이미 반영되어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제안한 개별과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 과 대부분의 과제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지원 과제의 주된 특징은 타 산업 대비 차별적인 세제가 적 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다. 타 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근거는 관광산업이 사치성 소비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고 있다.

〈표 5-13〉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08년)

순번	제안 과제	반영 여부
1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차별적 세제 개선	미반영
2	수도권 내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	미반영
3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	부분 반영
4	여행업체 획득 현금외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분 반영
5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반영
6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분 반영
7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시 관세 경감	미반영
8	마리나 개발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및 부담금 감면	-
9	크루즈선의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등 감면	-
10	외국인의 관광호텔 부대시설 이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미반영
11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부담금 개선	미반영
12	관광숙박업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미반영
13	관광숙박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미반영
14	관광호텔 도시가스 산업용 요율 적용	미반영
15	외국인이 이용하는 전세(관광)버스 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미반영
16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 임야에 대한 보유세 완화	부분 반영
17	관광산업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확대	부분 완화
18	관광호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지수 조정	미반영
19	유원시설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반영
20	관광접대비(국내여행상품) 손금한도특례 제도 도입	미반영
21	컨벤션업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22	숙박업 등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 제외 완화	-
23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
24	국제회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미반영
25	관광호텔업 산재보험요율 인하	-
26	여행업・관광안내업 산재보험요율 인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 한국관광산업 규제개혁 종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5-14〉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12년)

순번	제안 과제	반영 여부
1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_
2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미반영
3	MICE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_
4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미반영
5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 (서비스교육, 조리연구시설 확충, 객실 개보수 등)	미반영

자료: 이성태(2012).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장 최근인 2014년 수행된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연구에서 제안된 18 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5〉 관광산업 조세지원 과제(2014년)

순번	제안 과제	반영 여부		
1	관광활동의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미반영		
2	기업체의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의 손비 인정 미반영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기준 개정	미반영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관광업종 추가	종료		
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관광업종 추가	미반영		
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 관광종사자 포함	미반영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관광업종 추가	미반영		
8	관광휴양형 주거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미반영		
9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서 관광업종 제외	미반영		
10	근로자 휴가지원경비의 비과세소득 인정	미반영		
11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분 반영		
12	숙박, 휴양 등 관광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미반영		
13	관광사업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미반영		
14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미반영		
15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미반영		
16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시 관세 경감	미반영		
17	관광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적용	부분 반영		
1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관광업종 추가	반영		

자료: 김희수(2014).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신규 제안 과제 발굴 및 검토과제 선정

둘째, 관광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업계의 세제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협회, 여행업협회 등 관계자 서면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업 계의 세제 지원과제를 수렴하였다.

〈표 5-16〉 관광업계(협회) 세제 지원 과제 의견 수렴 결과

구분	제안 과제				
	국내여행 경비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유람선/잠수함 부가가치세 면제				
	관광식당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개선				
한국여행업협회	인바운드 여행 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한국호텔업협회	관광호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리모델링 취득세 감면				
	관광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				

셋째, 기존 논의된 주요 관광산업 세제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 관광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새로이 도출된 과제를 종합하여 핵심 과제를 도 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제안과제 중 미이행 과제와 관련 협회 및 업계에서 수렴한 신규 제안 과제를 종합하여 검토과제를 목록화하였다.

〈표 5-17〉 관광산업 세제지원 과제

과제명	세부 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기준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조)	- 기업규모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관광업계의 소기업 기준 완화 적용 요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관광업종 추가 (조특법시행령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업종 추가 -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등 추가 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범위에 업종 추가 -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등 추가 건의
관광활동의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 적용을 받는 관광활동의 범위 확대

 과제명	세부 내용
숙박, 휴양 등 관광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세법 제26조)	- 국민들의 관광비용 부담 경감, 국내여행 활동 촉진 유도 - 유원시설업 등록시설의 이용료,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국내여행 경비의 세액공제 (*중앙회)	- 국내여행 숙박비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30%,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에 포함) 추진 발표 -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국내여행경비는 세액공제 제도로 도입 필요
인바운드 여행 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KATA)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여행사는 호텔이나 버스, 식당 등 외국인 단체여행에 소요되는 여행경비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함(세무당국은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리하여납부하는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인바운드 여행사가 여행경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로 지급하는 금액에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관광사업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세법 제65조)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관광사업 포함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7조의2)	-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사전적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 적용(현재는 사후 환급)
관광호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호협)/(지방세특례법 제54조제2항)	- 호텔업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0%감면
관광사업용 토지(휴양콘도) 보유세 부담 완화(*콘도협회)	 현재 관광단지의 모든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 세율 적용, 건축물이 없는 부속 토지(녹지 등)에 대해서도 세율 완화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이외의 '관광지' 및 '관광사업 부지'의 부속토지 (녹지 등)도 형평성 차원에서 저율의 별도합산 적용 필요
관광단지 취득세 면제/재산세 경감	- 관광단지에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적용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조특법 118조)	- 수입물품 중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관세경감항목을 지정, 65~ 85%까지 경감 - 유원시설 등의 장비 수입시 관세 경감 신설 필요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지방세법 제277조)	- 현재 관광단지 개발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관광단지 내에 입지한 유원시설업자의 부동산 및 오락시설 취득은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형평성 문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카지노업 개별소비세 감면	-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카지노 입장과 매출(영업)에 각각 개별소비세 부과하고 있어 통합 필요
유람선/잠수함 부가가치세 면제(*제주협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현재 일반여객선, 차도선형 여객선 등 특수선박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유람선, 잠수함 등 해상관광사업을 여객운송용역으로 추가
관광식당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개선(*서울협회) (지방세법 제35조)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되어 등록면허세를 납부 일반음식점이 관광식당으로 지정 받을 경우 식품접객업 등록면허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등록면허세(관광면허세)를 납부 관광식당으로 지정 받을 경우 등록면허세가 이중 청구

3. 세제 지원 과제 검토 결과

앞서 기존 미이행 과제와 신규 발굴 과제를 종합하여 세법적 관점에서 전문가 검 토의견을 수렴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일몰로 종료된 과제와 중복, 개별과제의 상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였다.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 의견은 다음의 〈표 5-18〉과 같다.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정책목적(주제별)에 따라 건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세제 지원과제는 업종별, 시기별로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른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하여 지원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나빠지거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 5-18〉 세제 지원 제안과제 전문가 검토 결과

과제명	검토 의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기준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조)	 관광산업이 실질적으로 육성되려면 그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을 적용해야 실질적인 세제 지원의 효과가 있음. 대부분의 관광산업은 자금지원이나 투자유치가 어려워 실현된 이익으로 재투자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함.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인용하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소기업 기준은 관광산업만을 위하여 개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에서 관광산업은 소기업 중기업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다른 지원 업종과 관광업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논리 필요). 법 제7조 제3항 같이 관광산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의 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 제6호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일반여행업, 관광호텔업 및 콘도 등 전반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 동종 업종의 국내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규모를 제한시킬 필요는 있음. 투 자비율은 경영권이 확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감면 필요.
관광활동의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비"에 따른 시행령 제 130조 제5항의 문화비는 관광업종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어 보임. 따라서 법률 제136조에 별도의 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비"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시행 령에서 "국내관광"을 신설하여 접대비의 특례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한 접대비 지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관광"도 접대비 특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국내관광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검토 의견
숙박, 휴양 등 관광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뿐 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제106조에도 영세율과 면세규정이 있음. 면세는 해당기업으로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이익을 관광가격에 반영하여 관광비용 부담 경감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음. 또한 면세규정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이론에 따른 면세이거나 특별한 정책적 차원의 면세로서관광산업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해외여행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해외여행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을 영세율로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알선용역"이라고 규정하여 알선의 범위 해석에 대한 갈등이 있음. "관광알선용역"을 "관광용역"으로 개정 요구 검토
국내여행 경비의 세액공제 (*중앙회)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소득세의 '이론적인' 공제로 신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음. 반면 감염 병으로 "특별하게" 경영상의 위기에 빠진 국내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여행이나 숙박비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요구.
인바운드 여행 경비의 부가가차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KATA)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원리가 있어서 그 기본원리를 따르지 않는 법률은 입법할 수가 없음. 매출은 알선수수료로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입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광알선용역"이 아니라 "관광용역"으로 개정 요구하여 총액을 매출로 영세율로 신고하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함.
관광사업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세법 제65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됨. 관광사업 중 간이과세자는 관광펜션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 또한 농산물로 제조 가공 창출한 재화나 용역도 거의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제107조의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 추가)	 관광호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적용 당시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여야 함. 현재 시행되는 사후환급은 외래관광객 유치 효과도 불분명하고, 관광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임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사전적으로 하여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함. 입법논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호텔의 국제적 가격경쟁력,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경제효과, 해외의 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현황 등
관광호텔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지방세특례법 제54조제2항)	• 시행령 제27조에서 30 또는 20% 이상만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30 또는 20% 미만도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해줄 것은 건의

과제명	검토 의견
관광사업용 토지(휴양콘도) 보유세 부담 완화	• 산업단지 지원과 관광산업 지원을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건의함
관광단지 취득세 면제/재산세 경감	• 관광단지 감면은 지방세특례법 제54조로, 제1항에서 개발사업자에게 감면혜택을 적용하면 관광관련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만 관광관련 기업의 취득에 대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지방세법 제277조)	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의 세제지원은 미흡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화원제골프장을 개별소비세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은 쉽지 않음 소비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임.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며 '사치성' 소비에 과세하는 것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회원제골프장 기업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비'에 대한 과세이므로 회원이 아니 비회원의 '소비'에 한정
카지노업 개별소비세 감면	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 카지노업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동일함
유람선/잠수함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세법 제26조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면세로 조세특례 법(제3장)에서 별도로 정할 것을 요구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제4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1. 세제 지원 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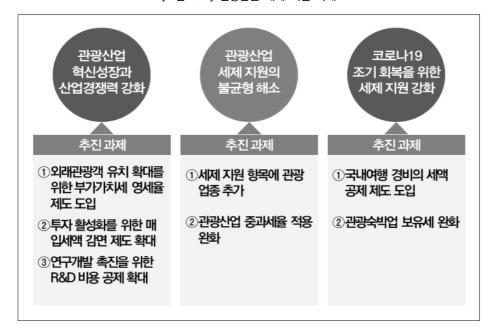
본 연구는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도출을 위해 앞서 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3가 지 방향을 고려하였다. 즉, 관광산업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성 해소,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의 관점에서 향 후 지원이 요구되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관광산업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이다. 추진 과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도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입세액 감면 제도 확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R&D 비용 공제 확대를 제안하였다.

둘째,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현행 세제 지원항목에 관광업종을 포괄적으로 추가하여 산업 내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였 다.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과제로 제안한 '국내여행 경비의 세액공제 제도'와 '관광숙박업 보유세 완화(재산세 감면)'는 시급하게, 한시적 도입과 적용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림 5-4]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2. 관광산업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에서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우선적인 정책 목 표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광산업 세제 지원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용이다.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저율 과세 적용은 일반적인 조세 지원 수단이다. 현재 관광업계에서 제안된 관광호텔의 객실 및 부대 시설, 국제회의, 유원시설업 입장료 등 개별 업종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다. 영세율 적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표 5-1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과제

세목 구분	제안 과제
부가가치세	숙박, 휴양 등 관광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외국인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유람선/잠수함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26조)

둘째, 법인세와 관련하여 관광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입세액 감면 제도 확 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R&D 비용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관광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표 5-2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적용연도	1998년	2002년	2003년	2008년	2014년	2016년
세액공제율	5%	10%	7%	10%		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표 5-21〉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요

구분	업종	세액감면율(%)	
(본점 소재지)	ű ő	소기업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_
수도권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TIHE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지방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타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30	

3.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조세지원 제도에서 관광사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관광사업의 일부 업종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 '관광사업에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관광사업에 대표에도 적용이 제외된 경우', '관광사업에 적용기준이 불리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희수, 2014). 이러한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과제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2〉 관광산업 세제 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구분	내용
관광사업의 일부 업종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법인세 중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지방소득세 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서 적용 제외
▶ 관광산업 내부 세부 업종 간 차별성과 불균형성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지방소득세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서 적용 제외
관광사업에 세율이 불리하게	- 법인세 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 관광업종 관련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적용
적용되는 경우	- 도박장, 유흥장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중과세율 적용
	- 카지노의 입장행위와 영업행위시 두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 부과
관광사업에 감면제도 적용이 제외된 경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적용 제외

자료: 김희수(2014)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첫째, 조세 감면에서 관광사업의 일부 업종이 제외된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법인세 중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지방소득세 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유람선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등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수, 2014).

세제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항목에 관광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 세법에서

는 소비성지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법정 소비성서비스 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손금용인한도 축소 및 각종 세제지원 배제 등 과세 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관광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제 외되어 왔다.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 1. 호텔업 및 여관업<u>(「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u>
-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둘째, 관광산업에 중과세율 적용 등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관광숙 박업 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적용, 도박장·카지노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 비세의 중과세율 적용, 카지노에 대하여 입장행위시와 영업행위시 두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예컨대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며 사치성 소비에 과세하는 것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회원제골프장 기업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비에 대한 과세이므로 회원이 아닌 비회원의 소비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36 과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대중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와 동일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처럼 과세형평성을 개선하는 유사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³⁶⁾ 골프장 원형보전지는 산림관련법에서 20%이상 산림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임야로 이용 및 개발이 불가능해 현행 대중제 골프장은 원형보전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해 왔다. 반면 회원용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비업무용·투기용 토지로 간주돼 종합합산으로 과세해 와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표 5-23〉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시 세율 비교

구분	종합합산과세 (회원제 원형보전지) 세율	구분	별도합산과세 (대중제 원형보전지) 세율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금액의 0.6%
45억원 초과시	45억원 초과 금액의 2%	400억원 초과시	400억원 초과 금액의 0.7%

취득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이나 기계자산을 취득하거나, 개인이라도 취득대상이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등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 득세 감면액 규모가 큰 주요 비과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다.

〈표 5-24〉 취득세 과세대상별 세율

과세대상	구분	표준세율
	유상취득	주택 1~3%/토지 1.5~4%
부동산	무상취득 상속 원시취득 등	비영리 2.8%, 이외 3.5% 1가구1주택 0.8%, 농지 2.3%, 이외 2.8% 2.8%
차량·선박·항공기	비영업용 차량	5~7% (경차 4%)
	이외	2~3%
입목, 광업권, 어업권	_	2%
기계건설장비	_	2~3%
골프·승마·종합체육시설· 콘도미니엄·요트 회원권	_	2%
과점 주주	-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표 5-25〉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비과세 감면 제도

구분	대상	적용세율	비고
중과세율 _ 적용 (①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 취득,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표준세율+4%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제외
	②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이나 지점, 분소, 공장 설치 혹은 이를 위한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 -4%	공업지역, 유치지역 제외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기본세율+8%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목적 부동산	감면율 35%	지특법 §78
비과세 감면	임대사업자 임대목적 부동산	감면율 100% (*85%)	지특법 §31
	도시개발사업 취득 토지 및 건축물	감면율 100% (*85%)	지특법 §74

주: *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라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4.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과제

코로나19로 인한 각 국의 입국제한 조치와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실천 등 국내·외 관광객 급감으로 관광업계는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에 있다. 코로나19는 인·아웃, 인트라바운드까지 전 영역, 전 세계에 글로벌 재난으로 관광업계 회복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 지원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세제 지원정책은 산업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의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0년 현재 관광산업은 전반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 대응책이요구된다.

첫째, 관광수요의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여행 경비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30%, 도서·공연비 등추가한도(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2019.12.19.). 이미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카드소득공제 4~6월 한시적 적용, 국회 기획재

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 업종 카드소득공제 80%, 4~7월 적용으로 확대되어 통과('20.4.29)되었다.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 감면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며, 소득공제의 경우 세율적용 이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계세율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자(고소득자)에게 보다 유리한 특징이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정해진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고 그만큼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액공제는 주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도입하고 적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여행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여행경비 세액공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의 규정이 필요하며, 숙박비 외 유원시설 입장료, 여행상품 구입비, 박람회 입장료, 식비(관광식당) 등 여행에 사용된 것으로 식별 가능하고, 증빙 가능한 경비를 대상으로 검토가필요하다.

〈표 5-26〉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관광산업 세제 지원과제

과제명	세부 내용
국내여행 경비의 세액공제	- 국내여행 숙박비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30%,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에 포함) 추진 발표 -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국내여행경비는 세액공제 제도로 도입 필요
관광호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호텔업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0%감면
휴양콘도미니엄의 관광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	 현재 관광단지의 모든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 세율 적용, 건축물이 없는 부속 토지(녹지 등)에 대해서도 세율 완화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이외의 '관광지' 및 '관광사업 부지'의 부속토지 (녹지 등)도 형평성 차원에서 저율의 별도합산 적용 필요
관광단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 경감율 확대	- 관광단지 대상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적용

둘째는 관광숙박업의 보유세 완화 방안이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가 장 큰 분야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호텔산업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가 향 후 2~3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수적 이다. 또한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호텔업의 경 우 재산세 감면이 핵심 과제이다. 관광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가정에서 지 원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여행 경비의 세액공제 도입과 보유세 완화 등은 코로나19의 조기 회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책 목표에 맞게 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5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심층 분석

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1. 필요성 및 도입 목적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정책대상인 호텔업에 등록된 시설에 투숙하는 경우 숙박용역 및 숙박과 함께 제공받은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KDI, 2019).

본 제도의 목적은 호텔업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관광객 유치전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사후 환급 방식의 조세특례가 관광호텔업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연재는 사무 완급 방식의 소세득례가 관광호텔업에 안성하여 석용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적 편의성 등에서 제약이 많아 참여호텔의 비율이 낮고, 호텔업계는 영세율 적용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표 5-27〉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기치세 조세특례 관련 제도 비교

구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현행)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		
 감면 방식		부가가치세 10% → 0% 적용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적용 범위		숙박 및 음식용역 (숙박과 함께 제공)	숙박용역		
적용 대상		호텔업	관광호텔업		
요금 적용 예시	객실요금	150,000원	150,000원		
	부가가치세(10%)	_	15,000원		
	최종요금	150,000원	165,000원 (*15,000원 추후 환급)		
	특징	소비자가 자각하는 가격과 최종 소비자 가격이 동일	소비자가 자각하는 가격이 (세금 포함) 실제 가격보다 높음		

자료: KDI(2019). 2019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1.2. 주요 내용

조세특례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정책대상(호텔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숙박용역 및 숙박과 함께 제공받은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수출산업과 동일하게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표 5-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안

 현 행	개 선 안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 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내용 생략〉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내용 생략》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등에게 공급하는 용역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둘째, 조세특례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정책대상인 호텔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조세지원 정책의 방향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부가가치 세 사후 환급 특례 관련 제도는 숙박요금 기준을 적용하여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즉,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호텔의 숙박요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고용 창출은 핵심적인 정책 기 조이므로, 고용 유지 조건을 적용하여 제도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

〈표 5-29〉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제도 개선안

구분	현 행	개 선(안)		
감면 방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 범위	숙박용역	숙박 및 음식용역(숙박과 동시 이용)		
적용 대상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 일수	30일 이하	30일 이하		
적용 요건	숙박요금 기준 적용-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	고용 유지 조건 적용 전년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한시적이기는 하나, 코로나 19의 조기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 상황에서 방한 관광상품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호텔업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국가적인 행사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외화획득 분에 대한 일시적 조세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도의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규 호텔업의 육성과 기존 업계의 지속적 성장도 보장할 수 없다.

〈표 5-30〉 과거 호텔업 영세율 적용 현황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연도	시행 여부	숙박 용역	음식 용역	연도	시행 여부	숙박 용역	음식 용역
1977~1979년	0	0	×	2001~2004년	0	0	×
1980~1991년	0	0	0	2005~2006년	×	×	×
1992~1993년	×	×	×	2007년	0	0	×
1994년	0	0	×	2008~2009년	0	0	0
1995~2000년	×	×	×	2010~2018년	×	×	×

자료: 기획재정부·KDI(2019).

1.3. 주요 쟁점사항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도입 효과 검증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대한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수용 곤란'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재정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부담, 과세불형평 초래(호텔업에 대한 특별 적용의 설득력 부족)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앞서 2019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대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영세율 제도가 시행되었던 2009년 이후의 관광사업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중차분법을 시행하여, 제도 시행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가 매출액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시 말해 관광산업에도 세제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 전가

부가가치세 전가(pass through)란, 쉽게 표현하면, 부가가치세 인하가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1,000원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상응하는 가격 인하가 500원이라고 하면 50%의 전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영국의 사례(Seely, 2020)에서는 부가가치세 인하가 완전하게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인하가 가격에 아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소비의 증가는 없고, 인하된 세금은 전적으로 생산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귀속의 주체가 소비자인지 생산자인지, 또는 더 많은 금액이 귀속되는 주체는 어디인지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행되었던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예를 들면, 소비자는 외국인이고 생산자는 한국인이며, 부가가치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더 많이 귀속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할인의 상당부분이 외국으로 이전됨을의미한다. 또한 생산자에게 더 많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신규 고용이나

투자가 창출되고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37)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간에서 추가적인 고용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이중차분법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인하의 생산자 귀속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38) 경제학적으로 세금은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의 인하가 생산자에게 귀속되면 경제적 후생의 증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귀속 주체에 대한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부가가치세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보다 정확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전가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시장에 대하여 적절하게 고려하는 추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부가가치세 인하의효과가 완전하게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 인하가 거래 가격의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한다.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인관광수요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숙박 공급은 제한된 기간안에 급격한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에 숙박 수요의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귀결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중국인 해외관광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관광객은 꾸준하게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요의 증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일어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가격 인하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개연성도 매우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측된 숙박 거래 가격만으로 전가의 효과를논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추정방식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39

³⁷⁾ 숙박 분야에서의 신규 투자는 일시적인 매출이나 이윤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 보다는 일정한 장기 계획이나 인접한 업체의 신규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t년의 이익이나 매출 증가와 t년의 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익이 발생한 바로 당해에 투자한다는 보장도 없다.

³⁸⁾ 물론, 본 연구에서 부가가치세의 전가에 대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가 생산자나 소비자 일방에 모두 귀속되기 보다는 일정한 비율로 양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이 현실적이다.

³⁹⁾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으면 모두 생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는 생산자 귀속분이 과대 추정될 우려가 존재한다.

다. 외화획득 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범위

현행 법 상 외화획득 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범위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외국인전용판매장 등 제한적 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광산업이 수출산업의 위상을 갖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에서 규정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세제 지원 이 가능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 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
 -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내의 보관및창고업, 「해운법」 상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 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제외)

【 부가가치세법 】

-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 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하다
-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 8. 삭제 〈2015. 2. 3.〉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라. 주요국 대비 부가가치세율 비교(가격경쟁력 확보)

해외 OECD 국가의 관광산업 관련 세율 적용 현황 비교를 통해서도 세율 조정 등 감면의 필요성이 입증된다. 부가가치세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 표준세율보다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태국등의 부가가치세율이다. 대만은 5%, 중국 6%, 태국·싱가포르 7%. 일본 8% 등 모두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결국 호텔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외국의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우리나라 호텔업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1〉OECD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및 호텔적용 세율

국가명	표준세율	호텔적용세율	국가명	표준세율	호텔적용세율
호주	10.0	10.0	멕시코	16.0	16.0
文十		0.0] 렉시 <u>고</u>	10.0	0.0
오스트리아	20.0	13.0	라트비아	21.0	12.0
벨기에	21.0	6.0	폴란드	23.0	8.0
체코	21.0	15.0	포르투갈	23.0	6.0
에스토니아	20.0	9.0	슬로베니아	22.0	9.5
헝가리	27.0	18.0	스페인	21.0	10.0
리투아니아	21.0	9.0	스웨덴	25.0	12.0
룩셈부르크	17.0	3.0	독일	19.0	7.0
터키	18.0	8.0	그리스	24.0	13.0
네덜란드	21.0	6.0	핀란드	24.0	10.0
노르웨이	25.0	12.0	아이슬란드	23.0	11.0
스위스	7.7	3.7	아일랜드	23.0	9.0
	47.0	17.0	프랑스	20.0	10.0
이스라엘	17.0	0.0	이탈리아	22.0	10.0
칠레	19.0	19.0	대만	5.0	5.0
덴마크	25.0	25.0	필리핀	12.0	12.0
뉴질랜드	15.0	15.0	태국	7.0	7.0
 영국	20.0	20.0	베트남	10.0	10.0
캐나다	5.0	5.0	싱가포르	7.0	7.0
일본	8.0	8.0	중국	16.0	6.0

주 1) 호주: 학생 숙소, 은퇴 후 거주시설 등에 한정하여 영세율 적용

자료: OECD(2018), Consumption Tax Trends 2018; KDI(2019) 재인용

²⁾ 헝가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터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텔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accommodation) 에 특별세율 적용

³⁾ 이스라엘: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하여 영세율 적용

⁴⁾ 멕시코: 외국인 숙박객 중 회의나 컨벤션 등의 참석 목적에 한정하여 영세율 적용

1.4. 전문가 검토 결과

현재 시행되는 사후 환급 제도는 관광객과 호텔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후 조치라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사전적으로 적용하여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영세율 적용의 논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호텔의 국제적 가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호텔업 재산세 감면

2.1. 필요성 및 도입 목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며 현재 호텔업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제조업 공장부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호텔업은 별도합산과세로 토지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다. 호텔업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제조업의 공장부지와 같은 서비스 생산의 기반이 되는 원가요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제조업의 공장부지는 0.2%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면제 대상이다. 공장과 동일하게 호텔 역시 건물 및 부지가 없으면 숙박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상응하는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 5-32〉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세표준 산출 및 명목 세율

과세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u> </u>			명목세율	과표	명목세율
합산방식		누진세율 적용 토지는 시군구내 인별합산		과세항목별로 국가내 인별합산		
주택	일반주택		시가 표준액의 60%	~0.6억 0.1% 0/6~1.5억 0.15% 1.5~3.0억~ 0.25% 3억~ 0.4%	과세기준 초과분의 80% (세법개정)	~6억 0.5% 6~12억 0.75% 12~50억 1.0% 50~94억 1.5% 94억~ 2.0%
		별장	60%	4%	Ī	과세하지 않음
	분리	농지, 임야 등	70%	0.07%	과세하지 않음	
		공장용지, 공급목적	70%	0.2%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70%	4%		
토지	별도 합산	건물 부속토지, 사업용토지	70%	~2억 0.2% 2~10억 0.3% 10억~ 0.4%	80%	~200억 0.5% 200~400억 0.6% 400억~ 0.7%
	종합 합산	분리과세, 별도합산토지 이외 모든 토지	70%	~0.5억 0.2% 0.5~1억 0.3% 1억~ 0.5%	80%	~15억 0.75% 15~45억 1.5% 45억~ 2.0%
 건축 물		공장용 건축물	70%	0.5%	과세하지 않음	
물	일	반건축물(상가 등)	70%	0.25%		
	부기	세(surtax)	지방	방교육세 20%	농0	H촌특별세 20%

주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과세기준액)*공정시장기액비율(80%)

이처럼 제조업과 차별화된 과세가 적용 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 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호텔업협회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호텔의 매출액 대비 재산세의 비중은 서울 지역이 4~5%, 부산·울산이 2~3% 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2) 과세기준액: 주택 6억원(1주택 9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표 5-33〉 매출액 대비 재산세

(단위: %)

ID	TIC	004717	004017	(211-70)
ID	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В	서울A호텔	5.7	5.7	5.8
С	서울B호텔	3.4	3.9	4.2
D	제주	1.0	1.2	1.1
Е	제주	1.5	2.2	1.9
F	광주	1.5	1.6	1.3
G	광주	0.2	0.2	0.2
1	부산	2.1	2.1	2.7
J	부산	1.1	1.5	1.5
K	울산	3.5	3.6	3.6
L	경기	1.0	0.9	0.9
계	평균	2.1	2.3	2.3

자료: 한국호텔업협회 내부자료, 전국 10대 호텔 재산세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호텔을 산업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사치재로 간주하고 세제 지원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은 호텔업계의 불만사항이다. "호텔은 소유주가 이익을 얻는 산업이지 법인이 이익을 남기는 산업이 아니다"라는 인식⁴⁰⁾이 호텔업을 독자적인 산업의 영역으로 인정받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호텔업에 적용된 보유세 감면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3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200억 이상인 경우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근거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및 취득세를 50% 경감(특1·2등급은 25%)하는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⁴⁰⁾ 호텔업계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발췌

〈표 5-34〉 관광단지·관광호텔 지방세 감면

적용시기	내용
2009.1~ 2010.12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과밀억제권역내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6% → 2%)
2011.1~ 2014.12	-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경감 -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내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자료: 김희수(2014)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자 재작성

현 시점에서 호텔업의 토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 필요성이 논의되는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호텔업의 위기상황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영업 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해외 관광객의 입국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국내관광의 수요만으로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항공업의 경우, 재산세 부과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례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

〈표 5-35〉항공기 재산세 감면 사례

구분	내용
서울 강서구 구세조례 정 (2020.5.28.)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적용
인천 중구 구세 조례 (2020. 6. 1.)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재산 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적용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2020.2.17.)'에서 관광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긴급 피해지원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방안으로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의결로 감면하고,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후속 진행이 미진한 상태이다. 재산세의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있기때문에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41)

⁴¹⁾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116조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 속에 관광숙박업계의 어려움 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5-36〉 경북 경주시 재산세 감면 사례

구분	내용
경북 경주	-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감소,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지속·확산되고 있어, 2020년 지방세 감면 추진 - (감면규모) 5~100%, 총 약 45억여 원의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의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 면제, 재산세(건축물, 주택)는 재산세(액의 10% 감면 *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 사업체에는 재산세(건축물)에 5% 감면 등

재산세는 지방세를 구성하는 주요 재원으로 당해 시·군의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지원 효과는호텔의 숙박료 인하 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세 감면에 따른 호텔 숙박료 등의 인하요인이 되어 실질적인 관광객의 증가 및 타 관광소비로 이어져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텔업의 매출증가에 따른 소득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의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회복 전략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력을 높이고, 시장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호텔업의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 주요 내용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으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2014년 일몰로 종료된 과세 특례를 재시행하는 방안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생 략)
-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5성급 및 4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둘째, 호텔업 재산세 감면의 적용 조건 설계이다. 과거 외국인투숙객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지원책이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표 5-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성 안 제27조(매출액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 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을 기 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 이상 감소한 호텔업

2.3. 주요 쟁점사항

가. 관광호텔의 재산세 건물시가표준 지수 조정

재산세는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하며. 이때 활용하는 지수(용도, 구조, 위 치)가 호텔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 내구도가 높으면 구조지수가 높으며, 다른 용도에 비해 높은 지수를 적용한다. 또한 건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은 지수를 적용한다. 호텔업의 특 성상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 하며, 건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 고, 좋은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도 높을 가능성이 상당하 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 경우 호텔업은 모든 지수에 대해서 가장 높 은 지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더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우월한 입지로 인해 재산세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현재 관광숙박업의 건물재산세 과세시 용도지수 적용은 다른 용도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지수(145)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호텔의 경우 3성급 이 하는 135, 4~5성급은 145의 용도지수를 적용받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상 호 텔의 경우는 130의 용도지수를 적용받고 있어, 재산세 산정에 있어 차별받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상업시설 중 145의 용도지수를 적용받는 시설은 관광호텔이 유일 하다. 관광진흥법상 펜션은 130, 일반 펜션은 123의 지수를 적용하며, 타 상업용 건물과 비교해도 높은 지수를 적용(대형마트 135, 무도장 135)받고 있다.

현행 법상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해당지수의 5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관광진흥법 규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의 건물시가표준 용도지수를 타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과 동일 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39〉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구분	대상건물	지수
	관광호텔(5성급, 4성급)	145
	관광호텔(3성급 이하),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135
스바디서	호텔(공중위생관리법), 펜션, 한옥체험, 생활숙박시설	130
숙박시설	여관(모텔), 호스텔업	125
	일반펜션	123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여인숙	100
Thail i l k-i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135
판매시설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10
 운수시설	100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35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위락시설	단란주점	127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5
	무도학원	123

나. 호텔업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비업무용 시설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 세이다. 조세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 시설인 호텔의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적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관광호텔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높아 과세표준이 높고 종 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표적용율의 지속적 상향조정 및 공 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매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호텔업계의 요구사항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이다. 즉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포함시켜 지방세 부담을 완 화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직결될 수 있는 문 제가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2.4. 전문가 검토 결과

관광숙박업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 지원 대책으로 한시 적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관광숙박업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정안, 즉 시설 재투자 확대 시 세제 감면 등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감정평가사 A〉

용도지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높은 관광숙박업의 경우 지수가 높게 적용될 수 있다. 감정가가 높을 경우 장점은 건축물 담보 대출시 저금리 적용, 대출한도 증액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사업자(숙박업체)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공시지가 산정시 업종의 특성에 맞는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단순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공시지가는 아파트가 기준점이 되는경우가 많고,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호텔업의 상업용 자산에 대한평가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관광숙박업 보유세 적용의 경우 또한 매출과 연동해서적용하는 방안이나,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업무용 자산은 고용 창출 등 호텔업의 사회적 기여 측면을 분석하여 감면의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호텔의 경우 업무용 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고, 유휴부지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 설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사 B〉

현재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업은 별도합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과세방법에 따라 사업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은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리과세의 순으로 볼 수 있다. 호텔업계의 요구사항인 분리과세 적용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며, 호텔업이 해당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세의 분리과세 근거는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구분이다. 따라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경우 중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리과세를 적용한 사례에 해당된다. 분리과제 적용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제시가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감면 지원은 필요하나, 상시적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방세법 제106조 재산세의 과세 대상 구분(1항 3호)

-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대통령으로 정한 토지
-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
-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영농에 사용, 특별시·광역시 제외
- 공장용지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일정 기준 면적의 토지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관광산업 세제 지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세 지원은 호텔업 등 관광업계의 기대와 요구가 큰 정책 수단이다. 이 연구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 방향 설정과 관광산업에 적용가능한 세제 지원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정책 동향 분석, 관광산업 세제 지원 효과 및 정책 수요 분석, 국내외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 분석, 관광산업 세제 지원 방향 및 개선과제 검토,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심층분 석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별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현황 및 정책 동향 분석에서는 정부의 조세 지원 체계와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였 다. 현재 관광산업에 적용되는 4가지 주요 지원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광산업 조세 지원 정책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제도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과 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3장은 관광산업 지원 효과 및 정책 수요 분석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상당한 의 의를 가진다. 우선 관광 분야 조세 정책의 효과 추정 결과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 고. 관광 분야에서 조세 정책이 관광사업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지하 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효과분석 사례는 관광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용하여 추가적인 수출, 즉 외국인의 인바운드 관광으로 인한 국내 매출의 추가적인 증대 유도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수요 조 사에서는 기존 조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은 업종과 미적용 업종간의 조세 부담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등 세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효과적인 제도 홍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4장은 타 산업 분야와 주요국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관광산업과 타 산업 분야, 해외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관 광산업 세제 지원체계의 차별적 요소를 규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각국의 관광산업 등 경 제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및 재정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은 앞선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관광산업 세제 지원 방향과 개선과 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과 과제 제시에 앞서 관광산업이 갖는 특수성, 현재 우리나 라 관광산업이 처해있는 상황적 특수성을 규명하고,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의 방향은 혁신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제시하였다. 세제 지원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관광 과세는 공평성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관광산업에 적용되는 세제가 타 산업부분에서 공급되는 유사한 재화와 서비스와 비교할 때 차별적으로 부과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수출산업으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세제 적용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 조세 수입의 관점에서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불균형성 해소,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의 관점에서 향후 지원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세제 지원 과제 제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선행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상시적 지원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시 한시적 세제 지원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세제 지원 과제 심층분석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광숙박업 재산세 감면 제도를 선정하여 각 제도에 대한 심 층분석을 진행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이 연구의 의의는 관광산업 세제 지원 관련 정기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개선과 제를 관리한다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미이행 과제의 논리 보완, 최근 조세제도의 흐름에 맞게 기존 과제를 보완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광숙박업 재산세 감면 제도 등 2개를 대상으로 내용을구체화하였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조세특례제도 운영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 등 성과관리 강화 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한 성과분석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관광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것과 같은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과 조세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는 관광산업 세제 지원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조세특례는 정부의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합당한 직간접적 효과 검증이 요구된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일반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등의 향후 심층연구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검토과제 중 '국내여행 경비의 세액공 제 제도' 도입 등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 관련 부분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하여 호텔업이 부과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공과)는 관광업계의 세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관광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세제 지원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보다 는 과거부터 수차례 제안되어 왔으나 이행되지 못한 과제가 반복적으로 제안되었 다. 그동안 관광산업 세제 지원 관련하여 제도 건의가 이루어졌으나, 논의가 본격화 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정책 실행력 확보에 대한 노력은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혁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세제 지원 과제의 발굴과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관광업계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기업 데이터에 기초한 세제 지원 규모 산정. 성과 목표 제시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업계의 적극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2021년은 관광산업 세제 지원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기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 산업 확대, 관광산업 생태계의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세제 지원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편 을 유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구본풍·현기수·이광영(20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 국세청(2019), 국세통계연보.
- 권혁진(2015), 「관광에 대한 과세 방안 연구: 관광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18),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2018),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8),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 국회예산정책처(각 연도), 2012~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금융감독원(2020),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2018),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고용노동부(2018.3.22.),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0), 2020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 기획재정부(2019), 2020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9.9), 2019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 김상태·이강욱(2002). 관광부문 세제개선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재진·홍범교(2014),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 김현주·안희자(2019), 「관광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희수(2014), 「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광훈·김희수(2018),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19 외래관광객조사」.
- 박영선(201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박재혁·정규언(2017).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 분석, 조세연구 17(3): 195~218.
- 백경엽·태정림·박지원(2020).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 이슈 통권 제11호.
- 이경희·김경수(2017). 한국관광수요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6(4), 81-102.
- 이동건·박종수(2018), 정책적 조세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의 평가 및 관련 규정의 폐지 절차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3호 pp.199~235.
- 이성태(2014), 「문화·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2019).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중소기업중앙회(2019.3.21.),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보도자료).
- 전형준(2018). 『조세정책론』, 문우사.
- 특허청(2018).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정미·이준호(2019), 「기업의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법제연구원.
-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7.10), 2017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 Angrist, J. D, Pischke, J.-S. (2014). Mastering '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Scottsda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2017). The Impact of Taxes on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Tourism.
- European Union(2019).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 Gertler, P. J., Martinez, S., Premand, P., Rawlings, L. B., & Vermeersch,
 C. M. J. (2011). Impact Evaluation in Practi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OECD(2011), Revenue Statistics.
- OECD(2014).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4, Ch.3 Taxation and tourism.
- OECD(2018). Consumption Tax Trends 2018.
- OECD(2020). Tax Policy Overview of country Tax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crisis(2020.05.29.).

- Seely, A. (2020). VAT on tourism. Briefing paper, no. 6812, House of Commons.
- WEF(2019). The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WTTC(2018). Fairer and more Intelligent Tax Policies in Travel & Tourism.

ABSTRACT

A Study on Tax Relief Plans for the Tourism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a direction of the tax relief policy for the tourism indust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ourism businesses and to present specific tax relief tasks.

The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ax system of the tourism industry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major trends of Korea's tax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tax relief for the tourism industry. Second, it intend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tax relief policy by analyzing the effect and demanding tax relief based on cases in the tourism and accommodation industry. Third,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for introducing the system by deriving major tax relief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and reviewing the feasible policy of each task.

Despite the effectiveness as a policy tool, the tax relief system for the tourism industry has not been fully implemented. The zero rate of VAT on accommodation services for foreigners, for instance, has been adopted and abolished several times; the beneficiaries of the tax cut have been expanded in a passive manner by adding sub-sectors of the tourism industry, rather than including the whole tourism industry. The history of the tax relief system for the tourism industry shows that tax privileges have been provided only during major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tax relief system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eviously implemented systems in order to improve the policy. It is essential to monitor whether the original policy goals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policy, whether the tax relief system has been reasonably designed, and whether it is user-orient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the effect of the policy is spread out across the tourism industry.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tax relief policy has not been analyzed properly. Accordingly,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the policy based on the application of zero-rate VAT on accommodation services for foreign tourists,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the tax relief system for the tourism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the innovative growth an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the tourism industry, the correction of the imbalance in tax relief for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reinforcement of tax relief for quick recovery from COVID-19 as policy directions. The tax relief policy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induc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instead of being used as a means to reduce costs for businesses. It should also not impose discriminatory taxes on the tourism industr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efficiency. The ultimate goal of the tax relief policy for the tourism industry i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promoting its growth. This also means expanding the tax base in terms of government tax revenu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accumulating regular data on tax relief for the tourism industry and managing improvement measures. As for tax relief tasks, the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ceding tasks discussed was reviewed, and a content analysis, including expert reviews, was conducted. In addition, the tasks were presented in two categories: consistent tax relief and temporary tax relief for the event of a crisis such as COVID-19. For the in-depth analysis of the tax relief tasks for the tourism industry, an in-depth review was conducted on major issu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zero-rate VAT on accommodation services for foreign tourists and the property tax reduction system for the tourism and accommodation industry.

Finally, during the crisis in the tourism industry due to COVID-19,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actical tax relief plans for the industry;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its role in the tax sector.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that performance management, including the study of preliminary feasibility and in-depth evaluation, is being strengthened for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s tax concession system, a performanc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in follow-up research.

Keywords

Tax, Tax Relief, Zero-rate VAT, COVID-19, Tourism Industry

관광산업 세제 지원방안 연구



부록

【부록】설문지

관광숙박업 세제지원 관련 업계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산업 세제 지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관광숙박업 조세지원 제도 이용 현황과 제안 사항은 관광산업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 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을 준수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및 연구 목적 외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주관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사 기관	한국데이터연구소
구한 시간	인국문화근등인기전	글시 기간	최서우 대표이사(swchoi@k-drc.com)

❷ 조사 응답시 꼭 지켜 주십시오 ☺

- 1. 응답은 귀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회계(재정) 담당자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계(재정) 담당자분이 아니신 경우 담당자분께 메일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 3. 귀사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므로 응답을 귀사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Screening Question

SQ1. 귀 사는 <u>어디에 소재</u>하고 있습니까? [단수]

- ⑥ 대전
- ② 부산

- ⑩ 제주 ① 세종

- ③ 대구
- ⑦ 울산 ⑧ 경기
- ⑩ 전북 ③ 전남

- ④ 인천
- 9 강원
- ④ 경북

- ⑤ 광주
- ⑩ 충북
- (5) 경남

SQ2. 귀 사의 <u>설립연도는 언제</u>입니까? [오픈]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년

SQ3. 귀 사는 관광진흥법 상 <u>어떤 업종에 등록</u>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u>모두 골라</u> 주십시오. <mark>[복수]</mark>

- ① 과과 충텍언
- ③ 한국전통호텔업 ⑤ 호스텔업
- ② 가족호텔업
- ④ 소형호텔업
- ⑥ 휴양콘도미니엄업

SQ4. 본 조사가 완료되면, 약 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이 사례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례비 지급을 위해 아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840											
성		명									
핸	드	폰									
직		위	1	대표	2	임원/부사장	3	중간관리자	4	기타()

Ⅰ.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문1. 귀 사는 <u>기업 경영에서 조세 부담을 느끼고</u> 계십니까? <mark>[척도]</mark>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İ	1	2	3	4	6
	→ 문2.	로 이동		→ 문1-1로 이동	

문1-1. (문1=3), ④, ⑤ 응답자만 응답) <u>조세 부담이 가장 큰 항목</u>은 무엇입니까? 가장 <u>주된 이유 한 개만 골라</u> 주십시오. <mark>[단수</mark>]

- ① 법인세
- ② 부가가치세
- ③ 재산세
- ④ 종합부동산세
- ⑤ 기타(적어주세요:

문2. 귀 사는 <u>조세지원제도를 활용</u>하고 있습니까? [척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2	3	4	6
→ □2-1	리 이토	VA (5)	→ 무3이리 이토	42

문2-1. (문2=1), ② 응답자만 응답) <u>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u>는 무엇입니까? 가장 <u>주된 이유 한 개만 골라</u> 주십시오. <mark>[단수</mark>

- ① 조세지원제도 내용 및 적용방법을 모름
- ② 적용대상(소재지/업종/매출액 등)에서 제외
- ③ 투입되는 행정노력 대비 실익이 없음
- ④ 기타(적어주세요:

문3. 귀 사의 <u>기업 경영에 충분한 조세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u>하십니까? <mark>[척도]</mark>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6

문4. 관광산업(관광숙박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타 산업과 비교해 적절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mark>[척도</mark>]

74=1 OU ICI	OH ICE	LIEGISI	325	Mio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모동이나	그렇다	배우 그렇다
1	2	3	4	(5)

Ⅱ. 관광숙박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이용 현황

문5. 귀 사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적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수]

- ① 있다 → 문5-1로 이동
- ② 없다 → 문5-2로 이동

문5-1. (문5=① 응답자만 응답) 받은적이 있다면, <u>귀 사 경영에 부가가치세 특례제도가 도움</u>이 되었습니까? <mark>[척도]</mark>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6

182

문5-2. (문5=② 응답자만 응답) 받은 적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u>주된 이유 한 개만 골라</u> 주십시오. [단수] ①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 잘 모름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 ⑤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용하지 않음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6. <u>부가가치세 특례적용은 어떻게 개편</u>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u>모두 골라</u> 주십시오. <mark>[복수]</mark> ① 지원 대상의 확대(적용대상 업종 확대) ② 지원 조건의 개선(객실 숙박요금 적용 기준 완화) ③ 지원 방식의 개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 ④ 지원 금액 확대 ⑤ 기타(적어주세요: 문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① 그렇다 → 문7-1로 이동 ② 아니다 → 문8로 이동 문7-1. (문7=① 응답자만 응답)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개만 골라 주십시오. [단수] ①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 ② 현행 세율이 과도하여 인하가 필요 ③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 ④ 기타(적어주세요: 문8. 귀 사는 <u>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은 적</u>이 있습니까? <mark>[단수]</mark> ① 있다 → 문8-1로 이동 ② 없다 → 문9로 이동 문8-1. (문8=① 응답자만 응답)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았습니까? [오픈])년 문8-2. (문8=① 응답자만 응답) 받은 적이 있다면, <u>귀 사의 경영여건 향상에 재산세 감면제도가 도움</u>이 되었습니까? <mark>[척도</mark>]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2) (4)

Ⅲ.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이용 현황

문9. 귀 사는 <u>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적용을 받은 적</u>이 있습니까? [단수]

① 있다 → 문9·1로 이동

② 없다 → 문9·4로 이동

문9-1. (문9=① 응답자만 응답) 받은 적이 있다면, 귀 사의 경영여건 향상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척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9-2. (문9=① 응답자만 응답) 가장 도움이 되었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분야는 어디입니까? <u>우선순위대로 2개만 골라</u> 주십시오. [rank:2]

- ① 경영안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등)
- ② 창업·벤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 ③ 설비투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환경 에너지 등 투자세액공제)
-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 ⑤ 연구·인력개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 ® 고용·인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 ⑦ 기타(적어주세요:

문9-3. (문9=① 응답자만 응답) <u>현재 또는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무엇</u>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

- ①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도매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5~30% 감면
- ② (세액감면)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후 5년 간 법인(소득)세 50~100% 감면 및 취득-재산세 일부 감면
- ③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일반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금액의 일부를 법인(소득)세 공제
- ④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⑤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고용과 연계하여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8% 법인(소득)세 공제
-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법인(소득)세 공제
-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9-4. (문9=2) 응답자만 응답) 받은 적이 없다면, 귀 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u>주된 이유 한 개만 골라</u> 주십시오. [단수]

- ①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 ② 지역(수도권 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 ③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 ④ 타 감면 공제제도의 세액 절감효과가 더 크므로
- ⑤ 기타(적어주세요:

Ⅳ. 관광숙박업 세제 지원 체감 효과

문10. 귀 사는 다음 조세지원제도 혜택에 대해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십니까? [척도]

기업이 느끼는 조세 혜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세지원 정책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였다	1	2	3	4	6
2. 다양한 조세혜택(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았다	1	2	3	4	6
3. 조세 지원 정책으로 이익이 증가하였다	1	2	3	4	6

문11. 귀 사는 <u>다음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기업의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u>하십니까? <mark>[척도]</mark>

조세 지원을 통한 재투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조세 혜택으로 유형자산(건물, 시설, 비품 등)에 투자할 것이다.	1	2	3	4	6
2. 조세 혜택으로 영업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투자할 것이다.	1	2	3	4	6
3. 조세 혜택으로 신규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1	2	3	4	6
4. 조세 혜택으로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것이다.	1	2	3	4	6

184

문12. 귀 사는 <u>정부의 조세지원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u>하십니까? <mark>[척도]</mark>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6

V. 코로나19 경영 피해현황 및 정책 대응 관련 의견

문13. <u>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귀사의 경영상 피해 현황</u>은 어떻습니까? <mark>[척도]</mark>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숙박업의 경영상 피해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관광객 감소로 매출액 감소	1	2	3	4	6
2. 운영자금 부족, 자금 압박	1	2	3	4	6
3. 임대료 부담	1	2	3	4	6
4. 의심직원 휴무로 영업활동 차질	1	2	3	4	6
5. 인력 유출(업무 기피)	1	2	3	4	6
6. 기타(적어주세요 :)	1	2	3	4	6

문14.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u>관광숙박업 경영에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u>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코로나19 확산 관련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지원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1	2	3	4	6
2.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 확대	1	2	3	4	(5)
3.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한 대출유도	1	2	3	4	(5)
4.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	2	3	4	(5)
5. 기업회생, 구조조정 등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1	2	3	4	6

[로직 : 온라인 조사에서는 알고 있는 문항에 대해서만 활용 여부 나타나게끔 로직]

문15. 귀 사는 다음 '코로나19 확산 관련 관광기업 지원사업'을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경 험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

코로나19 관련 관광기업 지원사업	인지 여부		활용 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활용	미활용
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	2	1	2
2.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	1	2	1	2
3.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황의무 유예	1	2	1	2
4.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	1	2	1	2
5.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	1	2	1	2
6.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융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1	2	1	2
7.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1	2	1	2
8.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1	2	1	2
9.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	1	2	1	2
10. 내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1	2	1	2
11.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1	2	1	2
12.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	1	2	1	2
13.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	1	2	1	2
14. 호텔등급평가 심사유예	1	2	1	2
15.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지원	1	2	1	2
16.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1	2	1	2
17. 카드사 혜택 확대(무이자할부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1	2	1	2

문16. 코로나 19 확산 관련 관광기업 지원사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rank:2] 1순위 ①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⑩ 내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②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 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③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황의무 유예 ②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 ④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 ⑬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 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 ⑭ 호텔등급평가 심사유예 ⑮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콩사자 교육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용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⑦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⑩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⑧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① 카드사 혜택 확대(무이자할부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⑨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 VI. 관광산업 세제지원 과제에 대한 의견 문17. 향후 관광산업 조세지원 확대에 가장 필요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u>우선순위대로 2개만 골라</u> 주십시오. [rank:2] 2순위 ① 창업·벤처 ② 경영안정 ③ 투자촉진 ④ 연구 및 연구인력 개발 ⑤ 고용지원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18. 관광사업체의 세부담 완화 또는 조세지원 제도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오픈] WI. 매출액 및 조세납부액 문19. 귀 사의 <u>매출액 및 조세납부액은 얼마</u>입니까?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매 출 액)백만원 당 기 순 이 익)백만원 세금(법인세 외))백만원 *부담금 제외 (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86

집필내역

연구책임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2장, 제3장 2절, 제4~6장, 연구총괄

공동연구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장 1절, 제5장 1절 일부, 5절 일부

연구 참여

김진옥 세한대학교 교수: 제3장 2절 주여운 하나투어 선임: 제4장

연구 자문

김근수 회계사, 글로벌컨설팅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수정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교수

박호운 한화자산운용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광산업 세제 지원방안 연구

발행인 김대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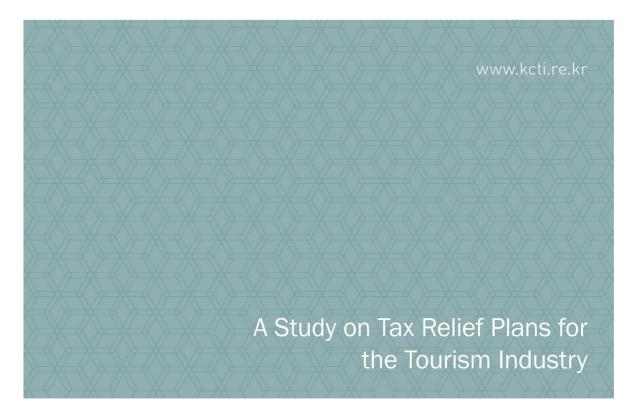
인쇄일 2020년 10월 19일

발행일 2020년 10월 19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30-0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20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20

Heeja An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